

研究報告  
1989. 12 203

# 零細農의 生活과 福祉實態

鄭 明 采(副研究委員)  
閔 尚 基(責任研究員)  
崔 景 煥(責任研究員)  
李 永 大(研究員)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연구보고 203

## 영세농의 생활과 복지실태

### 요 약

1960년대 이후 상공업 중심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상대적 낙후는 농업의 산업적 균형을 잊게 만들었고 그 정도가 심하여 농업의 사양산업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더구나 '80년대 이후에 가속화된 국제무역질서에의 순응요구와 그의 수용은 수출성장산업인 상공업분야와 수입확대로 인해 위축산업이 된 농림수산업간의 국제분업적 경제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농·축·수산물생산 강대국들의 무역압력과 국내 무역기업들의 대내적 수입압력은 이러한 경제구조적 상황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생산농민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산업부문간의 편중된 자본투자와 자원이동 그리고 농산물가격하락과 생산포기로 인해 농가경제의 전반적인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중에도 특히 저소득 영세농어민들은 농어촌 경제의 악화로 그들의 생활근거를 유지해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의 발생이 농어촌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립의욕이나 성장가능성 및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개선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중요시 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산위주의 농업소득 증대정책에서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행정당국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세 소농들이 좁은 토지에 묶매여 있고 농외취업의 확실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결과도 획기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농업 정책의 수용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영세 소농에게 준비나 대응의 자세를

갖출 사이도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면 또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영세농생활실태의 정확한 조사와 현상의 파악은 무리없는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의 기술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영세하고 빈곤한 이들 저소득 농민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소득능력신장의 정책이나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대책들이 선별적 개인적 응과 종합적 구조개선 및 지역개발정책으로 시행되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이들 계층을 상세하게 분석해 보면 농업성장이 가능한 농정수용능력자와 기술습득을 통해 전업이 가능한 취업정책수용능력자, 생계대책이 필요한 복지정책수용대상자 그리고 자손세대의 성장을 통한 발전능력소득자 등 다양한 계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그 능력에 맞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지원과 교육 및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되는 농촌사회정책의 방향 정립과 농촌 저소득 영세농들의 생활 및 의식, 문화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자 현지조사에 노력을 집중한 것이었다.

영세농(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7.9세이었고 연령별 분포비율도 60세 이상이 48.6 %로 나타났다. 영세농(민) 가구주의 결혼관계는 기혼유배우자의 비율이 82.0 %이었는데 비하여 사별, 이혼, 별거 및 배우자 가출로 인한 무배우자의 비율도 15.5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농(민)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국졸 이하가 86.6 %인데 비하여 중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비율은 13.4 %에 불과하였다. 영세농(민) 가구주의 건강정도는 건강이 56.0 %, 보통이 13.0 %, 불건강이 31.0 %로 나타났고, 불건강한 가구주 가운데 지병 및 고질병 환자가 75.0 %나 되었다.

영세농(민) 가구의 호당 평균 농지소유면적은 391.0 평(논 306.4 평, 밭 84.6 평)이었으나 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소유면적보다 2.6 배가 많은 1,002.5 평(논 739.5 평, 밭 263.0 평)이었고, 현지가격을 적용한 토지자산액은 572.1 만원(논 417.9 만원, 밭 89.5 만원, 대지 64.8 만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당 평균 저축액은 26.9만원인데 비하여 부채액은 207.6만원으로 부채가 호당 평균 180.7만원이 많았다.

영세농(민)의 자가보유율은 86.7%이었고 평균 보유방수는 2.50개, 사용방수는 2.1개이었으며, 26.0%가 취사용연료로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주요 문화용품의 보급률도 칼라TV가 46.8%, 냉장고가 67.3%, 세탁기가 12.0%, 전화가 6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보급률은 자녀와 친·인척이 구입해 준 비율이 약 절반이나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농(민) 가구의 가족수는 동거가구원이 호당 평균 3.65인이었고, 출타가구원은 호당 평균 2.21인이었고, 결혼비동거 자녀수는 호당 평균 1.48인으로 나타났다. 출타가구원중 77.4%가 취업이나 돈벌이 등 경제적 이유로 출타하였고 출타가구원중 86.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출타가구원과 본가와의 현금 및 현물에 의한 경제적 지원은 본가에서 139.0만원의 유출로 나타났다.

영세농(민) 중 품팔이 참여자는 호당 평균 0.58명으로 연평균 1인당 79.9일을 종사하여 70.1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농외취업자는 호당 평균 0.26명으로 287.5일을 취업하여 227.1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농의 빈곤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유산이 없어서(3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질병(15.7%), 가구주 사망(10.1%), 고령(4.9%), 사업실패(3.9%), 복이 없어서(3.5%) 등으로 나타났다. 즉 상당수의 영세농들이 빈곤을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빈곤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부분(72.4%)이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농가(6.3%)는 매우 적었다.

그렇지만 영세농들은 빈곤파문에 교육수준이 낮고 이때문에 불안정하거나 낮은 보수의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등 빈곤의 굴레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경제적 빈곤은 사회적 빈곤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심리적 빈곤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세대내

에서는 물론 세대간에서도 빈곤이 이전(세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농들이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력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조사대상 영세농들을 유형구분해 볼 때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 농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국가사회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다.

198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인구는 전인구의 5.3%, 의료부조자까지 합치면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촌의 생활보호인구는 전 농촌인구의 13.2%, 의료부조인구까지 포함하면 20.1%나 되어 우리나라 전 국지의 2배가 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라 농촌인구가 1988년 11월 상주인구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9%에 불과하나 전체 거택보호인구의 62.1%, 전체 자활보호인구의 61.5%,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60.6%를 농촌이 차지하여 농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보다 생활보호인구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농촌내에서도 농가와 비농가를 구분하여 보면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인구 및 가구중 농가비율이 농촌의 농가비율보다 낮았으나 반대로 자활보호나 의료부조가구중 농가비율은 농촌의 농가비율보다 높았다. 이것은 농촌의 자활보호나 의료부조가구중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군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농촌일수록 자활보호가구주와 가구원의 연령이 많으며, 가구원수가 많으며, 가구주와 가구원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경제활동에서는 농촌의 거택가구주의 14.5%와 가구원의 17.3%만이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자활보호가구주와 가구원의 취업상황을 보면 농촌은 영세농수산업이 각각 39.1%와 35.3%이며 일일고용과 임시고용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 20% 가량 되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지정연도를 보면 농촌일수록 과거부터 계속하여 지정된 자의 비율이 높고 5년이상 계속하여 지원을 받는 가구가 거택보호의 47.2%, 자활보호의 41.0%로 가장 높아 농촌에서 한번 생활보호대

상자로 지정이 되면 그것을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989년 신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된 가구의 특성을 보면 세대내 정상적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높았다. 농촌전체 거액보호가구의 97.6%는 가구내 정상적 근로능력자가 없어서 생활보호가구가 되었고, 농촌전체 자활보호가구의 빈곤원인은 학력, 경력, 기술이 없어서가 65.9%로 가장 높았다.

농촌의 거액보호가구의 65.1%와 자활보호가구의 14.8%는 자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촌의 거액보호가구의 자활방향은 ① 자녀가 성장취업이 22.0%, ② 질병자가 완치하여 취업이 11.3%, ③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음이 0.8%, ④ 생업자금용자 등 지원받음이 0.4%, ⑤ 영세민지방이주, 기타 지원받음이 0.3%로 각각 나타났다. 농촌의 자활보호가구주의 자활방향은 ① 자녀가 성장·취업이 7.6%, ② 질병자가 완치하여 취업이 1.5%, ③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음이 32.6%, ④ 생업자금용자 등 지원받음이 23.8%, ⑤ 영세민지방이주, 기타 지원받음이 19.8%로 나타났다.

생활보호선정과정에서 농촌의 담당공무원들은 ① 소득의 정확한 산출곤란, ② 현실과 맞지않는 재산과표, ③ 음성재산과 소득조사의 곤란, ④ 조사과정에서의 문제, ⑤ 적은 예산으로 인한 탈락, ⑥ 공부상 자료와 현실의 차이, ⑦ 각 개인별 각종 사정의 고려 어려움의 문제를 들고 있다.

생활보호지원에 대하여 농촌공무원들과 농촌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보호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고 부식비 지원수준, 생업자금 용자, 이주지원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다.

영세농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농어가 부채경각(1987), 농지구입자금지원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에서의 영세농을 위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영세농들은 정부가 각종 시책에서 영세농을 위주로한 정책을 좀 더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빈

면

## 머리말

1960년대 이후 급속성장해 온 우리 나라 산업은 상공업중심의 발전을 통하여 農業部門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농어민의 소득조건이나 생활조건도 상대적으로 곤란하게 되었으며, 農業生產을 통한 農家所得의 신장도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의 농업정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農產物 輸入壓力과 더불어 더욱 더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農業經濟상황의 악화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零細小農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며, 소득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질수록 農業政策의 수행이 어려워지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 이 시점에서 농업정책은 그 수용능력조차도 가지지 못한 영세소농들에게 아무리 성실하게 수행된다 해도 무리한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이들의 지위향상이나 구조개선을 통한 소득신장과 생활안정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零細小農들의 빈곤탈피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개선적 정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들 零細農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보았다. 빈곤의 상황과 영세농의 발생원인 및 배경을 이해하고, 또 이들 零細農層의 意識構造나 社會的 構造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수립에 좋은 기초자료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 연구는 農村社會室長 鄭明采 博士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영세농의 실태분석을 맡았던 閔尙基 責任研究員, 영세농의 발생원인 분석을 맡았던 崔景煥 責任研究員, 그리고 복지정책의 지원시책 분석을 담당한 李永大 研究員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자료

수집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保健社會部 生活保護課, 각 시·군 사회과, 각 읍·면 사회담당 및 조사에 응해 주신 농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研究擔當者들의 의견이며, 當 研究院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89.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 目 次

## 第1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1
2. 先行研究의 檢討와 研究方法	3

## 第2章 零細農의 概念과 農村社會政策의 重要性

1. 零細農의 概念	8
2. 貧困의 定義	11
3. 零細農의 社會經濟的 性格	14
4. 零細農의 範圍와 標本農家 選定	19

## 第3章 零細農의 生活相과 社會心理

1. 調查家口의 一般現況	30
2. 零細農의 家族構成과 家族分散	47
3. 生產 및 經濟活動	72
4. 健康과 醫療	85
5. 子女教育과 就業	96
6. 所得과 家計	102
7. 老齡化와 老後生活對策	106
8. 社會參與와 社會心理	112

## 第4章 零細農의 創出과 脱避可能性

1. 零細農의 發生原因	128
2. 貧困의 惡循環	135

3 . 零細農의 世襲化 및 脫避可能性 .....	148
----------------------------	-----

## 第5章 零細農을 위한 福祉行政支援과 問題點

1 . 地域別 生活保護者 및 醫療保護者の 人口分析 .....	156
2 . 地域別 生活保護對象者の 諸特性 分析 .....	162
3 . 農漁村 住民 및 公務員들의 生活保護 및 醫療保護事業에 대한 評價 .....	173
4 . 零細農을 위한 農業政策 .....	184

## 表 目 次

### 第 2 章

表 2 - 1	엥겔係數에 의한 生活水準評價尺度	14
表 2 - 2	1988 年 生計費 計測結果 對比表	21
表 2 - 3	國內의 最低生計費 關聯研究	22
表 2 - 4	保社部 生保者 法定要件 및 策定基準 ( 1988 年 現在 )	23
表 2 - 5	機關別 最低生計費 策定水準과 農家所得의 比較	24
表 2 - 6	作目別 零細農의 基準과 範圍	25
表 2 - 7	水稻作所得 ( 1,500 坪 ) 對比 作目別 所要面積 算出	27
表 2 - 8	調查對象地域 選定 및 規模	28

### 第 3 章

表 3 - 1	家口主의 性別分布	30
表 3 - 2	家口主의 年齡分布	31
表 3 - 3	家口主의 結婚關係	31
表 3 - 4	家口主의 教育水準	32
表 3 - 5	家口主의 職業分布	33
表 3 - 6	家口主의 宗教	34
表 3 - 7	家口主의 健康狀態	34
表 3 - 8	土地所有 및 耕作面積	35
表 3 - 9	主要 家畜飼育 現況	36
表 3 - 10	主要 農機械 保有 家口比率	36

表3－11	戶當 土地資產 保有額	36
表3－12	戶當 平均 貯蓄 및 負債額	38
表3－13	住宅保有形態	39
表3－14	지붕材料	39
表3－15	벽材料	40
表3－16	保有房數	41
表3－17	使用房數	41
表3－18	방바닥材料	43
表3－19	벽지材料	43
表3－20	취사용燃料	44
表3－21	給水源	44
表3－22	化粧室 形態	45
表3－23	主要 文化用品 保有率	46
表3－24	主要 文化生活用品 購入・贈與率	46
表3－25	同居家口員의 性別構成	48
表3－26	同居家口員의 結婚關係	48
表3－27	同居家口員의 年齡別 構成	50
表3－28	同居家口員의 學歷別 構成	50
表3－29	同居家口員의 職業構成	51
表3－30	同居家口員의 宗教別 構成	53
表3－31	同居家口員의 健康狀態	53
表3－32	同居家口員數別 家口分布	55
表3－33	家口主와 關係別 家口員 構成	55
表3－34	出他家口員數別 性別構成	57
表3－35	家口主와 關係別 出他家口員	57
表3－36	出他家口員의 年齡分布	58
表3－37	出他理由	58
表3－38	最初 出他地域	60
表3－39	現在의 出他地域	60

表 3 - 40	出他家口員의 最初職業	61
表 3 - 41	出他家口員의 現在職業	62
表 3 - 42	出他家口員의 月所得別 分布	64
表 3 - 43	出他에의 도움與否	64
表 3 - 44	本家와 出他家口員과 經濟的 關係者數	65
表 3 - 45	本家와 出他家口員과의 經濟的 支援額	65
表 3 - 46	結婚 非同居 子女數	66
表 3 - 47	結婚 非同居子女의 年齡分布	67
表 3 - 48	結婚 非同居子女의 教育水準	68
表 3 - 49	結婚年度別 結婚非同居 子女數	69
表 3 - 50	結婚 非同居子女의 結婚費用	70
表 3 - 51	結婚 非同居子女의 財產相續與否	71
表 3 - 52	結婚 非同居子女와 經濟的 關係	72
表 3 - 53	품팔이 參與者	74
表 3 - 54	품팔이 場所	74
表 3 - 55	품팔이 일의 種類	75
表 3 - 56	戶當 平均 품팔이 日數와 품팔이 收入	75
表 3 - 57	農外就業 參與者	76
表 3 - 58	農外就業 部門	76
表 3 - 59	農外就業 場所	77
表 3 - 60	1人當 平均 農外就業 日數와 所得額	77
表 3 - 61	自營業 從事現況	78
表 3 - 62	農地賃貸家口數	79
表 3 - 63	農地賃借 狀況	79
表 3 - 64	賃借面積別 賃借件數	80
表 3 - 65	地主와 賃借人의 關係	81
表 3 - 66	地主의 職業 哭 居居住地	81
表 3 - 67	農地賃借理由	82
表 3 - 68	賃借料 決定方式	83

表 3 - 69	賃借料支拂形態	83
表 3 - 70	賃借料納付規模別 賃借件數	84
表 3 - 71	賃借期間別 賃借件數	84
表 3 - 72	主要 經營費의 負擔內譯	85
表 3 - 73	家口員의 健康狀態	86
表 3 - 74	持病 및 瘡疾病 患者	87
表 3 - 75	家口主의 關係別 持病 및 瘡疾病 患者	88
表 3 - 76	持病 및 瘡疾病 患者의 年齡分布	89
表 3 - 77	有病期間別 持病 및 瘡疾病患者分布	89
表 3 - 78	年間活動制限日數別 持病 및 瘡疾病 患者數	90
表 3 - 79	病勢程度別 持病 및 瘡疾病 患者數	91
表 3 - 80	治療方法別 持病 및 瘡疾病 患者數	91
表 3 - 81	月治療費別 持病 및 瘡疾病 患者數	92
表 3 - 82	14 日間 罷患率 및 罷患者數	93
表 3 - 83	罷患者의 主要 病名 · 症狀	94
表 3 - 84	14 日間 罷患者의 臥病日數 및 活動制限日數	94
表 3 - 85	14 日間 罷患者의 治療方法	95
表 3 - 86	14 日間 罷患者의 治療費別 分布	95
表 3 - 87	子女教育 履修現況	97
表 3 - 88	子女就業實態	99
表 3 - 89	職業訓練 履修實態	100
表 3 - 90	教育保護 受惠實態	101
表 3 - 91	農家所得 調查對象 農家分布	102
表 3 - 92	耕地保有狀況	103
表 3 - 93	農家所得構成	103
表 3 - 94	耕地規模別 農家所得構成	104
表 3 - 95	農家所得階層別 農家分布	104
表 3 - 96	家計費構成	104
表 3 - 97	老後生活 依支者 有無	107

表 3 - 98	老後生活依支者와 관계	107
表 3 - 99	老後依支者の職業	108
表 3 - 100	老後依支者の現在居住地	109
表 3 - 101	老後依支者が 없는境遇 老後生活處	109
表 3 - 102	老後에 養老院 · 老人收容施設에 收容希望	110
表 3 - 103	農村에 養老院과 老人收容施設의 必要性	110
表 3 - 104	老後의 生計維持方法	111
表 3 - 105	組織 및 團體加入 有無	112
表 3 - 106	各種 契 加入與否	113
表 3 - 107	친한 親舊 有無	113
表 3 - 108	職業熱望水準	114
表 3 - 109	農村工場就業意思	118
表 3 - 110	農村工場就業時 就業可能部門	119
表 3 - 111	農村工場就業時 農事與否	120
表 3 - 112	農外就業에 必要한 職業訓練 履修與否	120
表 3 - 113	지금 당장 農村工場就業時 當面問題	121
表 3 - 114	零細農의 無規範性	122
表 3 - 115	零細農의 疏外意識	124
表 3 - 116	地域社會 滿足度	125
表 3 - 117	地域社會 統合程度	125
表 3 - 118	離農者 및 都 · 農間 살기좋은 곳에 대한 評價	126
表 3 - 119	離農意思有無 및 離農地域	126

#### 第 4 章

表 4 - 1	零細農의 貧困原因	133
表 4 - 2	貧困의 責任所在	134
表 4 - 3	出生序列別 農地相續 規模別 農家分布	139
表 4 - 4	祖父 · 父의 生活水準	141
表 4 - 5	零細農의 類型區分	142

表 4 - 6 職業의 變動 .....	149
表 4 - 7 居住地 移轉回數 .....	149
表 4 - 8 居住地 移動理由 .....	150
表 4 - 9 移住形態 .....	150
表 4 - 10 居住地의 變動 .....	150
表 4 - 11 老後依支者의 職業 .....	154
表 4 - 12 農家發展類型別 零細農家區分 .....	154

## 第5章

表 5 - 1 生活保護 및 醫療保護 策定要件(對象) .....	157
表 5 - 2 生活保護와 醫療扶助의 策定基準의 變化 .....	158
表 5 - 3 生活保護 및 醫療扶助對象者數의 變化(全國) .....	159
表 5 - 4 調查地域의 全體人口, 家口중 生活保護, 醫療保護의 比率(1989) .....	160
表 5 - 5 地域別 人口 및 居宅保護, 自活保護者의 比率 .....	161
表 5 - 6 農家와 非農家間 生活保護對象 比較(調查地域) .....	162
表 5 - 7 年齡階層別, 地域別 生活保護對象 分布(1989) .....	163
表 5 - 8 家口員數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	164
表 5 - 9 教育水準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	165
表 5 - 10 健康狀態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	166
表 5 - 11 就業狀態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	168
表 5 - 12 住宅所有形態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	169
表 5 - 13 '89 生活保護對象者 家口의 保護指定年度 .....	170
表 5 - 14 新規保護對象者 發生의 原因 .....	170
表 5 - 15 貧困의 原因 및 自活方向 .....	171
表 5 - 16 自活自立 등 保護對象脫避者의 脫避事由 .....	173
表 5 - 17 自活保護對象者 基準이 適當하다는 應答者 比率 .....	174
表 5 - 18 年度別 生計費 支援價額(1人當月平均 支援額)	
	175

表 5 - 19 農村公務員들의 現行 生活保護 지원水準에 대한 意見	176
表 5 - 20 年度別 生計保護 內容	177
表 5 - 21 分期別 授業料와 育成會費 (1989)	179
表 5 - 22 醫療保護診療費 負擔方法	183
表 5 - 23 醫療保護에 대한 調查對象者の 滿足程度	184

## 圖 目 次

### 第 3 章

- 圖 3-1 업계 係數 階層別 農家分布 ..... 105

### 第 4 章

- 圖 4-1 貧困의 原因 ..... 132  
 圖 4-2 貧困의 循環的 因果關係 ..... 136  
 圖 4-3 貧困의 循環 ..... 138  
 圖 4-4 家系圖 I ( ㄱ씨 : 全北 0 郡, 73 歲 ) ( 第 I 型 ) ..... 143  
 圖 4-5 家系圖 II ( ㄱ씨 : 全南 1 郡, 72 歲 ) ( 第 II 型 ) ..... 145  
 圖 4-6 家系圖 III ( ㄱ씨 : 京畿道 1 郡, 64 歲 ) ( 第 III 型 ) ..... 147

## 第 1 章

###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1960 年代 이후 급속하게 成長해온 우리 나라의 產業은 商工業 中心의 海外市場 의존적 발전을 통하여 國內市場 中心의 農業部門에 상대적 落後를 가져오게 되었다. 輸出을 中心으로 하는 製造業分野의 급속한 성장은 國內 產業間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輸出產業 分野에 대한 편중된 資源投資로 農業部門의 상대적 衰退化를 促進시키는 結果가 되었다. 더구나 1980 年代에 들어서면서 國제간 貿易自由化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으로 하여금 輸出產業分野인 商工業과 輸入產業이 되는 農林業分野間에 資本의 이전과 富의 편중을 초래하는 經濟構造를 구축하게 되었다. 自由貿易으로 인하여 輸出과 輸入產業分野가 확연히 區分되어진 國際的 分業構造下에서 成長產業部門에의 資本投資가 偏重됨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問題點에 더하여 輸入되는 農產物의 輸入權(貿易權)을 장악하고 있는 商工業 企業들은 輸入農產物의 國內市場價格 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윤마저도 독차지하게 됨으로써 農業을 弱化시키고 더욱 衰

退化 시켜가고 있어 國家經濟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어민의 소득조건이나 생활조건도 상대적으로 곤란하게 되었으며, 농업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의 신장도 갈수록 한계를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 농업정책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制約要因으로作用하고 있으며, 農產物 輸出國들로부터의 農產物 輸入開放壓力과 더불어 時代的인 課題로 부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過程속에서 우리의 農業經濟는 全般的으로 惡化되었으며, 저소득층이나 영세농이 도시에 比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國民 階層間 所得隔差의 深化에 대한 問題는 產業間의 균형이 商工業 부문으로 치우쳐 간 狀況下에서는 계속적으로 增加될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의 農業政策 遂行이 큰 苦衷을 겪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의 農業政策은 増產을 위주로 하는 農業所得增大政策에서 農外所得을 劃期的으로 增大시키는 方向으로 轉換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영세한 小農들이 좁은 土地에 얹매여 있고 農外就業의 확실한 機會가 주어지지 않는 狀態에서는 그 結果가 劃期的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一般的인 農業政策의 수용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한 零細小農에게 准備나 대응의 자세를 갖출 사이도 없이 무리한 要求를 하게 된다면 또한 많은 問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들 零細農의 正確한 生活實態와 現狀의 把握은 무리없는 정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의 技術的 措置를 講究할 수 있는 方向을 提示해 줄 수 있을 것이다. 零細하고 貧困한 이들 저소득 農民들에게는 根本적으로 그들의 地位를 向上시켜 스스로 成長할 수 있는 所得能力伸長의 정책이나 生計維持와 生活安定을 위한 社會保障의 對策들이 선별적 個人適應과 綜合的 構造改善 및 地域開發政策으로 施行되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 農政에 있어서 零細小農 問題의 重要性을 一蹴하여 生產政策의 次元에서의 問題로 일견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단은 우리농업이 시대적 상황에 신속하게 適應하지 못하게 되는 原因을 提供하게 되고 현실성의 결여라는 지적을 면할수 없게 된다. 零細小農들의 生存權保障을

위한 사회정책적 對策樹立이나 地位向上을 위한 所得伸長支援 및 轉業的發展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연계되어遂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農地資源도 협소하고 勞動能力도 不足하며 生產意慾도 없는 零細小農에게 一方의으로 증산을 권유하는 식의 農業政策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다양한 方向의 零細小農政策이 소기의 目的을 이루기 위해서는 政策 그 自體가 戰略的이거나 일시적 措置의 성격을 띠는 것이여서는 안되며 農業政策의 失敗를 代替하기 위한 手段으로 고안되어서도 안된다. 零細한 農民들을 農村에서 떠나게만 하면 農政의 責任을 면한다는 생각이나 社會保障에 떠맡겨 버리면 된다는 식의 政治戰略的方法은 오히려 問題를 根本的으로 深化시키고 타산업으로 擴散시키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 階層을 상세하게 分析해 보면 農業所得成長이 可能한 農政受容 能力者와 技術習得을 통해 轉業이 가능한 就業政策受容能力者, 生計對策이 필요한 福祉政策 受容對象者 그리고 子孫世代의 成長을 통한 發展能力 所持者 등 多樣한 계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그 능력에 맞는 방향으로의 政策的 支援과 教育指導를 必要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決定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 研究는 시대적 要求에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本 研究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되는 農村社會政策의 方向定立을 위하여 農村 저소득 영세농들의 생활 및 意識, 文化實態 등을正確하게 把握해 보고자 現地調查에 努力を 집중한 것이였다. 本 調查研究에 뒤이어 합리적인 農村社會政策과 零細農對策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基礎資料로서 本 研究의 目的을 充實히遂行코져 努力하였다.

## 2. 先行研究의 檢討와 研究方法

### 가. 先行研究에 대한 檢討

零細小農에 대한 研究는 多樣하며 광범위한 分野임에도 특히, 農業部門

의 영세한 저소득층을 다루게 되므로 관심이 적어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 빈곤과 零細民 등에 관한 研究는 多樣하고 많아서 農業과 관련된 資料만을 檢討하는 것으로 하였다.

1974 年에 發表된 서울大學校 小農綜合發展연찬회 報告書는 國立農業經濟研究所가 주관한 연찬회의 결과로서 “韓國의 小農問題”(金東熙), “小農發展의 規制要因에 관한 經濟的分析”(金成勳), “零細貧農에 관한 社會學的 考察”(金一鐵), “農業近代化의 綜合的 接近”(金成勳), 金谷, 倉洞, 上洞部落과 龍仁郡 UNDP 事業地區 實態調查 등이 分野別로 發表된 것이다. 당시에도 이미 農業政策이 가지는 增產위주의 農家所得政策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小農問題의 解決을 위해 產業間 연계關係에서 機能을 強化해야 하며, 農業政策과 農業構造改善의 시도는 現實的 接近方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적된 것은 이와 같은 연찬회가 있기 이전에 農村의 零細民에 대한 社會構造實態分析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몇 개 질문항목에 따른 事例調查로서 零細農의 本質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1977 年 서울대학교 社會科學研究會 研究報告로서 發表된 金一鐵과 鄭英一의 “韓國零細農에 관한 社會·經濟的研究”에서는 경기도내 5개 부落의 사례조사를 中心으로 零細農의 社會的 性格糾明과 함께 調查資料를 基礎로 하는 綜合的 分析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경작규모 5단보 미만의 農家를 統計上 零細農이라고 부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1정보 미만 農家까지를 包含시켜 小農이라고 분류하였다. 그래서 農家調查 표본을 耕作規模 5단보 미만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家族狀況, 職業과 居住移動關係, 社會的 參與와 社會心理的 特성을 살펴 보았다.

農地所有와 經營形態, 農地의 임대차관행 및 農業生產, 流通, 雇傭, 就業과 農家負債의 特질을 論하였다. 여기에서 零細農의 主要 特性이 貧困에 있다고 보아 貧困의 經濟, 社會, 心理的 狀況과 發展을 說明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政策的 解決方案을 提示하고는 있지만 零細小農이 發生하게 되는 원인을 根本的으로 막기 위한 貧困의 原因分析이 매우 未洽했다. 零細小農으로 戰略하는 과정과 貧困이 發生되는 原因의 正確한

分析은 貧困에 처해진 國民을 救護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리고 더 效果的일 수 있는 貧困豫防策의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忠北大學校 農業科學研究報告에 發表된 安仁燦의 “韓國農村低所得家口 實態分析”이 사례지역 調查를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忠北의 山間地域인 표본지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分析基準에 따른 低所得家口數가 全國平均值보다도 많고 所得水準 역시 낮다는 分析이었다. 이 때의 低所得家口를 農耕地 1,500 坪(5 단보) 미만을 所有하거나 調查當時(1985年)의 조수입 250 萬원을 초과하지 않는 農家를 대상으로 하였다. 分析結果에서 이 地域의 農家에 가장 큰 負擔은 子女教育費調達이며, 이것이 零細農의 계층상승을 막는 것이라고 提示하였다.

一般的인 零細民調查 研究로는 서울대 行政調查研究所가 1982年에 實施한 “零細民實態調查와 政策方向에 관한 研究”(俞君外 6人)가 방대한 調查를 한 것으로 보인다. 研究에서는 주로 保健社會部의 규정에 따라 零細民으로 分類되어 있는 階層을 對象으로 그들의 ① 家族構造와 生活實態, ② 地域間 移動과 정착요인, ③ 階層間 移動, ④ 零細民을 위한 行政支援對策의 評價, ⑤ 集團地域 숙원사업 및 福祉施設 支援, ⑥ 零細民形成抑制對策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調查分析하였다. 그러나 이 調查研究는 保社部 救護對象 零細民만을 對象으로 調査하였기 때문에 農村의 零細農과는 다른 개념이며, 實態自體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할 수 없을 것이다.

1988年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農村經濟”에 報告된 “低所得農家の問題와 對應方向”(李貞煥, 金段淳)에서는 農家經濟調查에 따른 所得順位別 최하위 2/10 農家를 分析 對象으로 하였다. 分析結果에서 耕作農地의 規模와 所得關係는 상관도가 낮았으며, 大農具施設資本과의 상관도가 오히려 높았다. 이것은 農地의 耕作規模가 零細農을 區分하는 尺度로서 적당치 못하다는 結論이 된다. 結論的으로 低所得의 原因은 資源保有水準이 낮은 것과 生產性이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所得의 격차가 發生하는 原因은 農業勞動力의 質的, 量的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한편 農家가 低所得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農業政策보다는 農村社會政策의 次元에서의 對策講究가 效果的일 것이라는 判斷이었다.

지금까지의 零細農에 관한 研究資料를 檢討한 결과 低所得 農家에 대한 무리한 農業政策 즉, 増產이나 所得倍加運動등의 政策은 오히려 問題를 漸增시킬 수 있으므로 生計保障과 職業轉換등의 社會政策과 構造改善政策이 綜合的으로 講究되어야 한다는 本研究의 基本方向에 合致되는 案例들을 整理해 볼 수가 있었다.

그외에도 一般的 貧困問題에 대한 研究와 資料는 많았으며, 都市貧困에 關한 研究도 있었다. 특히,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가 活潑한 研究를 할 수 있었던 때에는 社會貧困과 低所得問題에 관한 研究가 많았다. 1975年에 發表된 “低所得層의 恒久的 生活安定對策에 관한 研究”나 1976년의 “社會病理現象으로 본 貧困問題”등이 社會保障審議委員會의 研究報告였다. 1979년의 “都市貧民女性의 諸問題와 解決方案의 考察”(申惠玲), 1981年 “絕對貧困層에 대한 對策에 관한 研究”(尹錫範), 1983年 “韓國貧困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관한 考察”(元喆喜), 1985年 “韓國의 都市貧民政策에 關한 研究”(金世坤), 1981年 韓國開發研究院 徐柏穆等 6人이 발표한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등 많은 資料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

#### 나. 研究方法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事例의 結果를 參照하여 本 研究에서는 零細農의 概念設定과 그에 상응하는 調查標本農家の 選定에 신중을 기했다. 零細農을 農地規模나 耕作面積規模에만 基準하게 될 경우 特殊한 農業이나 畜産業 등의 基準設定이 困難해진다. 따라서 規模 뿐만이 아니라 그 規模의 一般農業經營 所得에 준하는 水準의 다른 農業分野의 基準도 設定도록 함으로써 결국 耕作規模와 所得水準에 따른 基準이 병용된 개념을 使用한 것이다.

農地의 所有規模는 耕作을 하는 경우 1,500坪 水準으로 하고 賃貸耕作의 경우는 賃貸料의 通常形態가 병작방법이므로 50%를勘案하여 純賃貸 3,000坪을 1,500坪(5단보) 자작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5단보의 一般農業일 경우 所得은 年平均 1,303,455 원으로 報告되어 있으므로 이와 同

一한 所得水準의 畜產農家나 원예농가의 規模를 역으로 추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規模를 算定하였다.

이렇게 算定된 規模水準 以下의 農家中에서 표본을 選定하되 全國의 군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로 區分하여 그 區分된 地域의 特性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部落으로 임의 選定한 후 그 部落內에서 農家를 規模에 맞게 選定하였다. 각 調查部落內에서의 農家選定은 定해진 農業種別 規模內에서 하되 保健社會部가 指定해서 보호대상자로 惠澤을 주고 있는 農家 또는 非農家를 반드시 한 部落에서 2戶以上 包含시키도록 하여 調查標本中 1/2 程度는 保社部 社會扶助對象인 居宅保護對象家口 일부와 自活保護對象 家口 일부 그리고 醫療保護(扶助)對象家口 일부가 포함되었다. 이와같이 生活保護對象者를 包含시키기로 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社會福祉政策의 惠澤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의식구조나 生活實態가 어느 方向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목적이였다. 이렇게 해서 選定된 農家數는 모두 284 戶로서 이 중에 生活保護對象이 되는 農家數는 159 戶, 居宅保護家口가 29 戶, 自活保護家口가 76 戶 그리고 醫療扶助家口는 54 戶로 나타났다. 나머지의 農家中 40 여개 農家에 대해서는 所得과 支出에 관한 정밀조사를 實施하였으며, 이를 精密調查 農家の 分布는 각 調查部落別 1 ~ 2 戶로 하였다. 精密調查의 경우는 時間이 많이 必要하고 상세한 內容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당한 水準의 應答과 기재능력을 전제로 選定하였다. 그 結果 經濟調查對象으로 選定된 農家數는 총 44 戶로서 이 調查結果가 所得과 支出부분에 대한 分析資料로 使用되었다.

調査方法은 數回에 걸친 現地出張 직접면담調查로서 實施되었으며 調査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外部의 도움없이 숙련된 고급노동력인 本研究院의 研究팀이 직접 수행하였다. 現地出張調查는 1989年 4月초부터 동년 9月초까지 5개월동안에 걸쳐서 集中的으로 實施되었으며, 結果의 整理와 分析은 컴퓨터를 利用하였다.

## 第 2 章

# 零細農의 概念과 農村社會政策의 重要性

### 1. 零細農의 概念

零細農이란 用語는 社會的 現狀을 보는 그대로 표현한 實態的 概念이며 學問的으로 定義된 用語는 아니다. 零細하다는 基準自體가 比較的 概念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比較對象이 變하면 零細農의 基準도 变하며, 實際과 결부된 判斷基準을 要求하게 된다. 그러나 社會的 特性을 들어 이를 規定한 경우에는 零細農이란 農業經營規模가 매우 작아 家族勞動을 充分히 活用하기에도 不足한 資本裝備를 가짐으로써 그 所得이나 生活水準이 매우 낮은 農村의 貧困層<sup>1)</sup>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農業經營規模가 적다는 것은 農業의 경우 그 規模自體가 所得과 절대적인 關係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規模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고등원이나 특수작물의 경우 面積規模는 작아도 水稻作이나 一般農業보다 수배나 높은 所得을 올리고 있으므로 規模에 대한 절

---

1) 金一鐵, 「韓國零細農에 관한 社會經濟的 研究」, 서울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77.

대적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自己勞動力を 充分히 活用 할 수 없는 정도의 資本裝備를 가진 경우는 農外勞賃所得에 主力하여 所得水準이 中小規模의 자작농보다 높은 農家도 있는 것이다. 특히, 農村工業化政策 이후 農村의 一般 労動力不足은 深化되었고 계속되는 移農으로 農業專門勞動力까지도 모자라는 狀態이므로 労動力이 豐富한 農家の 경우는 오히려 勞賃所得이 農業所得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農業經營 規模나 労動力 活用裝備 資本의 구비여부에 重點的 인 판단기준을 두는 것 보다는 빈곤의 與否에 관점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본다.

물론 規模가 적고 資本裝備가 不足한 農家가 비교적 零細하고 貧困한 것만은 일반적 現狀이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重要한 판단의 基準은 貧困한 水準인가의 客觀的 評價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貧困의 정의가 明確히 되지 않은 狀態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며 貧困을 分類하여 相對的인 것과 絶對的인 것으로 區分하거나 經濟的 貧困, 社會的 貧困, 精神的 貧困 등으로 區分하게 될 경우 끊이지 않는 격론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本節에서는 貧困을 論하기 이전에 기존의 學者들이 分類하거나 定義해 놓은 零細農에 대한 견해를 취합하여 本研究의 調查標本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零細農에 대한 解釋은 農業이 가지는 特性中 耕地面積의 重要性을 대부분 강조하게 된다. 經濟學大辭典<sup>2)</sup>에서 “零細農이란 주로 手工業的인 農具를 使用하여 農業을 영위하고 自己家族勞動도 充分히 利用하지 못할 만큼 협소한 土地밖에 가지지 못하는 農民”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零細農은 手工業的 農具를 使用하지 않는 境遇가 많고 土地面積의 협소만으로 기준을 하기에는 問題가 있음을 이미 言及한 바 있다. 그 다음 김재홍<sup>3)</sup>은 零細民을 “農村에 居住하나 耕地面積이 없거나 거의 없고 農業勞動 또는 非農業 労

2) 權五翼外 10人, 「經濟學大辭典」, 博英社, 1968.

3) 金在洪, “農村貧困層의 生活實態와 福祉對策”, 「21세기 農政發展方向構想 을 위한 基礎研究Ⅱ」,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動에 從事하는 勞動者 계층”과 “農村에 거주하는 高齡家口, 疾病家口, 無職家口 등 영세민이라고 불리워지는 農民層으로서 農業에 從事하나 耕地面積이 협소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뜻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崔洋夫等은<sup>4)</sup> 관행적 구분에 의한 農家계층을 社會階層으로서 區分하기 위해서는 土地耕作規模보다는 土地所有規模, 資產規模, 所得規模 등이 合算된 개념의 指標를 使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구체적인 合算方式이나 合算에 必要한 統計資料의 算出 또한 쉽지 않은 問題이다. 그외에도 零細農을 低所得農家로 보고 農家所得이 家計費를 충족하지 못하는 최하위所得階層으로 보는 方法이 있다. 이것은 결국 全體階層의 所得이 높으면 최하위의 所得水準도 높아질 수 있다는 問題가 있다.

가장 손쉽게 區分할 수 있는 方法이 있다면 그것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調查發表되고 있는 政府關係當局이나 관련연구기관의 生計費調查에 따른 區分이다. 이 생계비 水準에 基準한 所得別 分類는 그 생계비 調查結果가 信賴性이 있다면 가장 合理的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음의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調查機關別 격차가 심하고 調查對象이나 調査方法, 計算方式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것을 擇하여야 하는가가 또한 곤란한 問題로 된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綜合해 볼 때 零細農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는 理論의 여지가 많으며, 더구나 規模에 있어서 經營類型에 따른 隔差가 크므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생계비와 所得水準의 比較를 통한 零細農의 範圍設定조차도 提供된 統計資料의 出處에 따른 격차심화로 역시 같은 어려움을 내포하게 된다. 결국 零細民이나 零細農이라는 말은 實態的 개념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定立된 學術用語로는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을 考慮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零細農의 가장 基本的인 性格을 貧困에서 구하는 데에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

4) 崔洋夫外 2人,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貧困水準의 測定이나 貧困의 狀況을 判斷하기 위한 勞力은 곧 영세농의 定義에 合致되는 길이라고 믿어진다.

## 2. 貧困의 定義

貧困의 意味는 가난함이며, 가난함을 定義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보다 正確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學問的으로 定義하기 위해 수치나 基準 등을 定한다면 그 또한 時代的 狀況이나 政治經濟, 社會의 條件變化와 密接한 關聯下에 판단되고 있으므로 해서 더욱 論亂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정도의 社會的 배경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 그 貧困의 基準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貧困은 一般的으로 生活上의 어려움을 뜻하지만 이는 經濟的, 社會的 또는 心理的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닐 수 있으며 時代의이며, 地域的인 價值觀과 각자의 주관적 判斷에 中心을 두고 있어 正確하게 定義를 내리기가 어렵다.

貧困의 定義에서 가장 큰 시각의 차이는 “人間의 生活에서 최소한 必要로 하는 것들의 缺乏狀態”라는 절대적 意味인가 아니면 “그 社會의 水準에 비추어 生活이 가난한 狀態”의 相對的 意味인가가 重要的 차이를 가져온다. 그 다음은 貧困의 特徵에 따라 經濟的 要因에 중심을 두고 볼 것인가 또는 經濟外的 要因(社會的, 心理的)에 中心을 두고 볼 것인가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 오게 된다.

이와 같이 貧困의 概念이 각각의 特性에 따라 시각을 달리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끊임없는 論亂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貧困을 經濟的 次元에서 物質的 不足과 缺乏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으며, 社會學者들은 貧困을 단순한 物質缺乏만으로 把握하기 보다는 心理的, 社會的 및 文化的 박탈감을 모두 包括하는 社會價值의 相對的 缺乏狀態로 이해하고 있다. 經濟學者들이 主張하는 絶對的 價值의 貧困概念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活用되었고 가장 널리 使用되고

있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社會學者들은 貧困現狀이 經濟的 現狀이기 보다는 分明히 社會學的 現狀이며, 더욱이 貧困의 原因과 社會的 結果, 貧困에 대한 社會的 반응과 對應策 등에 있어서는 經濟學의 시야를 훨씬 벗어나는 社會學的 問題라고 主張한다. 하여튼 貧困에 대한 主要關心은 經濟的 貧困에 있고 이것이 다른 貧困을 부수적으로 수발하고 있기도 하지만 人間은 다른 여러 가지 社會的, 精神的 貧困에 의해서도 同一하게 貧困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相對貧困과 絶對貧困을 定義하고 있는 Town-send의 개념을 보면 “人間의 生物學的 생존을 유지하거나 또는 人間의 社會的 존엄성 維持에 必要한 物質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최소한의 物質資源의 缺乏狀態”를 絶對貧困으로 볼 수 있고 “社會的 價置의 分配에 있어서 불평등, 心理的 박탈 뿐만 아니라 단순한 期待上昇에 따른 現實과의 격차, 계층간의 격차 등 상대적 박탈상태”를 相對的 貧困의 개념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두 가지 개념을 綜合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Miller는 “貧困은 物質的, 經濟的 缺乏狀態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일, 心理 등의 次元에도 適用되는 개념으로 多次元的이고 複合的인 概念으로 社會的 不平等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社會人の 회소자원이 不平等하게 分配된 社會構造 形態의 일면을 貧困狀態”라고 整理하였다..

이와 같은 定義들을 基準에 두고 貧困을 區分할 때 우선 絶對的 貧困은 衣食住의 基本生活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經濟的 貧困狀態로서 所得(또는 支出)이 最低生活을 維持하는데 필요한 生計費에 미달하는 水準으로 區分할 수 있다.(Oster, KDI, 조형 등) 여기에서 最低生活의 定義를 어떻게 하느냐가 절대빈곤 概念規定의 基本的인 요체가 된다.

國民의 貧困狀態와 최저생활을 計測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각각의 長短點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理論과 주장을 하고 있어 모두 나열하여 論議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의 중요한 方法들을 살펴보면 이 部分에 代表的인 의견을 提示하여 지금까지도 널리 쓰여지고 있는 Engel 계수 方式과 Rowntree의 마塍바스켓 방식, 알렌 폴의 實態生

計費 計測方式을 들 수 있다.

Engel ( 1821 ~ 1896 ) 은 家族의 生計比中 飲食物比가 차지하는 比重에 따라 生活의 정도를 區分하였다( 表 2-1 ). 이것을 보통 半物量 方式이라고 하며, 生計費 中에서도 특히 음식물비만에比重을 두고 있어 計數의 物價變動 影響이나 식사문화의 發達로 인한 影響 및 음식물비로서決定이 困難한 부분의 發生 등에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Rowntree의 全物量 方式에서는 마케팅방식을 利用하여 한 家族이 必要로 하는 基本的 生計費, 즉 “飲食物費, 住居費, 被服費, 保健衛生費, 光熱費, 雜費 등을 個個人이 必要로 하는 量과 質을 營養學의 健康管理學의 입장에서 理論的으로 算出하여 平均家族數로勘案한 것”을 測定하여 人間의 生活水準을 區分하되 大部分 ① 級구할수준( 救濟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水準 ), ② 最低生存水準( 單純히 生存만 可能하고 그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水準 ), ③ 最低生計水準( 健康과 文化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最小한 水準 ), ④ 標準生計水準( 健康과 체면에 약간의 選擇의 여유가 있는 水準 ), ⑤ 유락생계수준( 그 以上의 여유있는 水準 )으로 區分하여 Engel의 區別方法을 適用하고 있다. 이 方法에서의 問題點은 生活水準의 發達과 未發達에 의한 차이를勘案하기 困難하며, 全物量 調查項目中의 物品의 質의 基準 設定이 매우 困難해진다.

알렌과 폴방식인 生計費의 實態調查 方式은 現在水準에서의 家計實態를 調查하여 그 결과 平均消費水準의 基準에서 分類해 보는 방법이다. 이것은 역시 그 時代의 經濟與件이나 地域的 격차를反映할 수 없다는 問題點을 가지게 된다.

相對的 貧困을 測定하는 것은 한 社會의 既存 生活水準과 직접 比較하여 定義하는 것으로 純粹相對貧困과 類似相對貧困 또는 主觀的 貧困과 客觀的 貧困 등으로 區分한다. 純粹相對貧困은 所得水準의 下位 一定比率을 貧困層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보통 하위 20 % 또는 下位 40 %가 가장 보편적으로 使用되는 純粹相對貧困 計數이다. 類似相對貧困은 全體 -平均所得 또는 消費의 一定比率로서 定義하는 方法이며, 開發途上國들은 平均所得의 1/3 을, 先進國들은 대개 50 % 水準을 基準으로 하여 區分하고

表 2 - 1 엔겔係數에 의한 生活水準評價尺度

생계비중 음식물비 비율	그에 상응하는 생활수준
20 % 이하	상류 가정
25 % 이하	여유있는 생활
30 % 이하	약간 여유있는 생활
40 % 이하	약간 위안할 수 있는 생활
45 % 이하	겨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50 % 이하	겨우 생활유지가 가능한 정도
60 ~ 65 %	최저생활(절대부족)

있다.

한편 客觀的 貧困을 앞에서 설명한 Rowntree 方式에 基礎하고 있는最低生計費의 客觀的基準에 基本의 必要의 不充分程度를 比較하여 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主觀的 貧困은 主觀的評價에 입각하여 當事者가 느끼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反映시키는 方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貧困分類方式이 研究되어 왔지만 이 方法들이 역시 한편의 問題點과 長點을 가지고 있어 어느 方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研究의 目的이나 調査의 目標에 따라 적의 選定해야 한다. 절대적인 貧困은 經濟發展이 진전될수록 의미없는 것이 되지만 經濟的으로 發展된 國家에서도 貧困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할 경우에는 상대적 貧困의 意味를 부각시킬 수 밖에 없고, 또한 이 상대적 不平等의 原因 그 自體가 社會政策의 매우 큰 意味를 가지기도 한다.

### 3. 零細農의 社會經濟的 性格

우선 零細農의 問題를 論하기에 앞서 零細農의 개념중에 예외없이 包含되는 基準인 規模의 零細化問題를 밝혀두어야만 할 것 같다. 零細農問題를 學問的理論의 發生으로 돌이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發生理論으로

區分해 볼 수가 있다.

첫번째는 Maltus 學派流의 自由主義的 理論으로서 零細性의 根據를 農村過剩人口에 두며, 人口增加에 따른 規模의 영세화가 불가피하다는 立場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와 日本의 많은 農業經濟學者들이 農業勞動力의 過剩과 그로 인한 과도한 土地所有葛藤이야말로 零細農 發生의 根本이며, 저위생 산성의 가장 큰 要因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理論들이 結論하는 바는 農村過剩人口의 吸收를 위해 工業化가 先進되어야 하며, 離農과 脫農이 促進되어 農業의 規模化와 機械化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農業의 規模化와 機械化는 生產性을 높이고 結局 所得을 增大시켜 零細農問題를 해결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은 주로 官邊學者나 農業政策當局 및 經濟當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農政의 주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農業構造改善의 主張과 農業綜合開發對策의 必要性 등을 뒷받침하는 理論인 셈이다.

둘째로는 K. Kautsky 學派流의 전통적인 小農理論에 기인하는 것으로 獨點資本과 大資本의 農業資本 침투과정에서 農業勞動者와 小資本農인 零細農이 생기고 官僚獨店資本의 農業支配를 위한 小農溫存政策이 零細農의 永久化를 構造화시킨다는 理論이다. 고전적인 이 理論에 의하면 小農은 金融 및 國家獨點資本의 피지배성으로 인하여 農業生產에서 나오는 剩餘價值를 市場構造나 經濟唯卡니즘에 의해 차취당함으로써 土地를 所有한 經營主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노임밖에 支拂받지 못하는 農業勞動者로 戰略할 수 밖에 없고 小農狀態나 零細農狀態를 벗어날 수 없는 小農溫存戰略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을 脫皮하기 위해서는 階級鬪爭路線을 택하든가 農業協動化(協業農)路線을 택하여야 한다는 論理이다. 이 중에는 이러한 狀況克服을 위해 協同組合主義를 이데올로기로서 취해야만 전진한 經濟秩序를 만들 수 있다는 見解도 있다.

최근에는 傳統的 理論에 바탕을 둔 農民層分解論이 擴散되고 있으며 이 理論을 通하여 살펴보면 零細小農의 發生이 社會構成의 發生根據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資本主義의 發達은 農民 역시 資本主義의 生產力競爭을 하게 만듬으로써 同質的인 農民內部에 分化와 分解를 일으키게 되

며, 이를 階層으로 區分할 때 富農層, 中農層, 貧農層 그리고 農業勞動者層으로 分化된다는 것이다. 社會의 性格에 따라서는 農業資本家와 農業勞動者階級으로 區分할 수도 있으며, 그 區分은 社會의 構造에 따라 多樣하게 되지만 階級的 構造를 가지게 된다는 階層論의 이론이다. 同質의 農民들이 基本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生產力의 격차나 資本裝備의 격차를 通하여 資本蓄積의 차이를 보이게 되며, 結局은 時代適應이 빠르고 生產력이 높은 農民層은 대농으로 그위에 企業農으로 成長하며 小農은 점차 土地마저도 잃게 되어 農業勞動者 계층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양극분해론이一般的 農民層分解의 한 形態라고 한다. 한편 이를 부정하면서 農民層 내에서의 資本과 임노동관계의 형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農業은 家族農이 支配的이며 資本主義化가 저지되고 있는 傳統的 要素에 影響을 크게 받게 된다는 理論이 있다. 이러한 内部的 問題 때문에 資本主義社會에서 大企業農으로의 成長을 저해당함으로써 大農經營은 오히려 衰退하고 零細農은 資本蓄積의 不利性 때문에 새로운 취업의 機會를 찾아 脫農하게 되므로 그 剩餘地를 殘存 零細農들이 차지하게 되어 中農으로 上昇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서 農民은 中農化되고 가장 效率的 勞動利用과 土地資本利用의 선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中農標準化論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理論에 대한 比判은 거세게 일어났으며 中農의 肥大化 要因이 獨點資本이나 外部資本의 수탈을 통해 農業의 大經營이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資本家的 發展이 衰退되지는 않는 것이며, 耕地規模의 指標로서만 農民層을 把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理論을 우리 나라와는一致할 수 없는 理論이라고 하면서 農民全體가 產業間의 수탈관계 즉, 國家獨占資本이나 官僚獨占資本의 支配關係 속에서 零細農化되어 가고 있다는 全層下向分解論이 우세한 편으로 보인다. 全層下向分解理論에 따르면 商工業中心의 經濟政策이 市場競爭體制를 갖추지도 못한 農業部門을 支配體制하여 종속시킬 수 있는 強力한 與件을 提供했으며, 農業이 企業農化할 수 있는 길을 모두 차지하여 (예를들면 農產物 加工業의 독점 및 系列企業化, 農產物市場의 獨占

化 등) 農業生產過程에서 부터 生產된 農產物의 消費까지의 全過程을 통하여 支配的 狀況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理解한다면 農村 零細農發生은 全農民層을 하나의 原因카테고리속에 合축시키는 結果가 될 것이다.

그러나 實제로 나타나고 있는 農村社會의 經濟構造의 分化現狀은 中農層의 肥大化를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規模에만 착안한 判斷임) 全體의 으로는 農業의 衰退化現況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對立된 세 理論들이 각각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現狀을 說明하는 說明力도 인정된다. 農村의 經營規模 零細化는 過剩된 農村人口의 土地에 대한 소유욕에 기인되기도 했으며, 資本主義의 問題點인 獨占資本의 農業支配와 그리고 農民層內部의 變化過程에서 資本制秩序에 順應하는 過程에서 階層間 對立的 관계의 發生에도 原因이 있다. 뿐만 아니라 微細하게는 우리 나라의 상속제도가 가지는 農地 分散效果와 地形 地勢에 따른 筆地의 細分割, 農地法의 未治 등 여러 가지 다른 原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問題들은 零細農의 發生을 根本적으로 쳐방하려 한다면 매우 중요한 착안점이 되는 것이므로 論義의 충분한 價値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論意의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零細農問題는 基本的 으로는 韓國經濟가 지닌 諸般與件의 長期的 變化와 獨寡占 經濟構造가 굳혀져 가는 過程속에서 점차적으로 變化되어 가는 만성적이며 構造的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農業이 앞으로 產業間의 均衡과 형평, 그리고 階層間의 형평에 대한 政策的 考慮가 어느 정도로 의미 있게 받아 들여 질것인가에 따라서 問題의 심각성이 더욱 첨예화되거나 緩化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資本獨占의 地位에 의한 전형적인 支配類型인 정경유착과 官僚獨占經濟構造속에서는 農業部門이 均衡이나 형평을 獲得할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現實的으로 獨占의 地位를 獲得한 그래서 富有를 누리는 階層들이 선취한 有利한 支配의 狀況을 스스로 손쉽게 양보해 줄 수 있다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와 같은 證據는 오늘날 우리 國民의 大部分이 원하고 政府가 창안하여

主張했던 土地公開念의 立法조차도 變質과 緩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는 通過될 수 없게 되는 現實 속에서도 그리고 農漁村 醫療保險이 가난한 農民들만을 小單位로 묶어서 수의자 負擔의 原則를 強調하게 되면 그 財政赤字를 막아낼 재간이 없으므로 統合的 管理方式을 導入해야 된다는 많은 社會保險 學者들의 主張에 따라 立法이 확실시되었던 醫療保險 改正法 조차도 거부되는 狀況속에서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었다.

특히, 農業政策 樹立過程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注入되어 오는 資本家 階層으로 부터의 주문과 壓力은 앞으로 더욱 빠른 速度의 貧農化, 脫農化 및 사양產業化를 促進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展望下에서 農村貧困의 經濟的, 社會的 및 心理的側面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性格的 發展을豫測할 수 있게 된다. 첫째, 經濟的 貧困은 일정 水準의 生計費를 감당할 수 없는 低所得을 말하므로 가장 基礎的 要求임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貧困層의 존재는 일부나마 계속 發生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農業所得의 手段이 없거나 不足하고 勞動能力이 完全치 못한 경우의 農家가 未治한 社會保險制度와 社會保障 惠澤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셋째, 相對的 貧困은 農村內部에서 보다도 外部로부터 즉, 他產業 從事者와의 比較에 의해 全體的으로 나타나는 現狀이며, 그에 따른 心理的 貧困과 社會文化的 性格은 憻動적 變化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經濟的 貧困과 社會的 및 心理的 貧困의 關係는相互補完의 인 것이며相互原因提供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原因중 어느 한 要因이 惡化될 경우 다른 두 要因 또는 그외에 많은 教育的, 技術的 要因 등도 함께 惡化되는 惡循環의 論理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研究의 對象으로 삼고 있는 零細農이란 性格 그 自體가 앞에서 論議된 貧困의 性格을 內包하면서 規模的 零細性을 脫皮하지 못한 農家들이므로 이들이 처해진 社會的, 經濟的 狀況은 貧困的 缺乏이며, 發生한 根據는 社會的, 政治的, 經濟史的 산물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零細農의 發生의 背景說明은 產業間 均衡發展이나 國際分業의 經濟構造를 통한 農業全體 部門從事者들의一般的 경향을 說明한 것이다. 農家를 個別的으로 分析하거나 農民個人의 貧困原因을 살펴

보면 앞에서와 같은 說明은 도출되기 힘들며, 대부분이 본인의 責任이나 몇 가지의 生活과 관련되는 原因을 提示하게 된다.

社會保障制度가 先進的으로 發達된 서유럽의 경우도 貧困의 原因이나 責任이 個人에게 있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책임지워 온 것이 國家와 社會의 責任으로 認定되어 넘어오게 된 歷史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資本主義的 經濟秩序가 獨寡占 企業들이 출현하면서 經濟政策에 따른 分配의 公正性과 재분배의 必要性을 強調하기 시작했고 社會的 所得不均衡과 貧富의 隔差問題는 社會政策의 重要한 課題가 된 것이다.

本 研究에서 주안점을 두게 되는 零細農들의 生活實態調查는 結局 위와 같은 脈絡에서 볼 때는 매우 미시적 研究에 意味가 있는 것이다. 거시적 分析이 결여된 점은 아쉽지만 이는 또 하나의 큰 研究課題이며 앞으로 계속되는 研究事業을 통해 社會的 構成과 經濟史的 흐름을 토대로 하는 產業構造的 分析이 貧困層의 생성과정이나 貧困發生의 構造的 要因을 밝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 4. 零細農의 範圍와 標本農家 選定

零細農의 概念과 貧困의 定義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貧困水準에 처해진 零細農을 규정짓는 問題는 매우 論亂이 發生할 수 있는 問題였다.先行研究에서도 零細農의 範圍를 農地規模에 基準을 두거나 所得規模에 基準을 두는 方式으로 大部分 決定해 왔으며, 相對的 貧困概念에 의거한 心理的이거나 社會的인 要因을 基準으로 區分하는 方法을 使用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도 零細農의 範圍設定을 위하여 經營規模과 所得水準을 綜合的으로 活用토록 하는 方法을 講究했다. 우선 貧困線追定을 위한 각각의 資料를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貧困線과 農家所得水準別 經營規模 水準을 把握하고자 政府機關이나 관연단체에서 추계된 國民最低生計費를 檢討하였다.

保健社會研究院이 實質生計費를 計測하기 위하여 1988년 3月부터 1989년 12月까지 調査 計測한 結果는 全物量方式을 利用했으며, 農村의 4人 家族 일 경우 월 268,000 원 水準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론 都市勤勞者를 中心으로 調査된 經濟企劃院의 調査值나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調査值보다 훨씬 낮은 水準이다. 그렇지만 勞動部의 標準生計費와는 상당히 근접되어 있어 比較的 利用에는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料된다.

國民生計費調查에 관한 問題는 전부터도 調査하는 機關이나 研究者가 취하는 調査方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왔고 그에 따른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 왔다. 保社部의 社會保障審議委員會가 國民生活實態調查資料를 기초로 最低生計費計測을 繼續해 왔으며 최근에 이 위원회의 해체로 인해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本調查事業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과거의 社會保障審議委員會 計測을 보면 1973年の 5人家族 最低生計費는 21,739 원이었는데 1978년에는 128,525 원(5人家族 全國平均)으로 5년 동안에 6倍나 增加하는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70年代에 우리 經濟水準이 急成長함으로써 나타나는 消費水準의 成長傾向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윤석범씨의 1982年度 調査에서 이미 5人家族 生計費는 145,105 원으로 發表되고 있어 1年後의 生計費인 社會保障審議委員會 資料와는 6.7倍의 격차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政府關聯機關의 實質推計值와 學界的 理論的 推計值의 격차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學界內에서의 동일년도中 調査值를 보면 1986年에 이 종희의 최저생계비는 5人家族 基準으로 214,000 원인데, 장현준의 경우는 175,459 원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장현준의 경우 經濟企劃院이 提供한 都市勤勞者 家計支出調查資料를 利用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結局 國家機關이나 관변연구기관의 生計費計測은 學問的 理論을 토대로 하는 生計費에 크게 未達하고 있으며, 重要한 것은 이들 낮은 數值가 實際의in 政策決定에 항상 使用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點들을勘査한다면 1988년의 最低生計費調查結果는 政府와 政府關聯機關이 發表한 4개의 資料 및 勞動組合이 發表한 또 하나의 資料를 비롯해 다섯가지나 되므로 豐富한 資料속에 選擇의 고민이 있었을 것

表 2 - 2 1988年 生計費 計測結果 對比表

		1人	2人	3人	4人	5人	6人	7人以上	備考
保 社 研	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	116,361 109,581 98,851	191,416 180,326 162,823	256,189 241,380 218,032	315,076 296,885 268,223	369,939 348,597 314,984	421,795 397,476 359,183	471,278 444,117 401,359	全物量方式에 의한 最低 生計費計測結果
企 劃 院	全家口 勤勞者家口 俸給者家口		350,230 347,571 436,341	431,081 422,683 545,200	525,291 514,484 688,989	595,196 587,474 794,263	682,315 641,328 849,885		實態調查結果임
韓國勞總		277,557	396,699	484,199	671,828	862,415			標準生計費
最低賃金審議委		128,990	242,823	343,674	427,239	493,132			標準生計費
勞動部		110,151	202,875	238,664	316,252	364,158			標準生計費

表 2 - 3 國內의 最低生計費 關聯研究

주 관	년 도	내 용	액 수	비 고
사회보장 심의위원 회	1973 1978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반물량방식으로 최 저생계비 계측	1973년 5인 전국 21,739 원 1978년 5인 대도시 168,240 원 중소도시 126,290 원 농촌 91,045 원	
서상목	1978	식 품배스켓에 의한 비와 Engel계수를 이용한 반물량방식	1973년 5인 도시 23,165 원 농촌 19,395 원	1. 1973년 국민생 활 실태조사를 자 료로 이용 2. 외국의 균등화 지수사용
윤석범	1982	도시, 농촌의 600 여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효용함수적 접근방법 (Kapteyn과 Praag 방식원용)	4인 134,976 원 5인 145,105 원 6인 157,806 원	1. 표본수의 부족 -대표성의 문제 2. 효용함수적방법 론이 아직 학계에 서 정립되지 못함
이종희	1986	가구주들의 주관적 인 최저생계비파악 을 통한 상대빈곤 가구의 평균 적인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	5인 214,000 원	1. 표본이 서울일부 지역에 한정 2. 지역별 가구규모 별 가구균등화지수 를 고려하지 않음
장현준	1986	경제기획원 도시근 로자가계지출조사자 료를 이용하여 소득 수준별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 3 : 5인 175,459 원	1. 지출품목결정에 있어 모형화 부족 2. 농촌부문이 고려 되지 않음

表 2-4 保社部 生保者 法定要件 및 策定基準(1988 現在)

구 분	법적요건 (생활보호법)	책 정 기 준
거액보호 대상자	<p>생활보호 대상자</p> <p>① 65세 이상 노쇠자            ② 18세 미만 아동            ③ 임산부            ④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p> <p>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 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1인당 월소득 46,000 원 미만</li> <li>○ 세대당 재산액 340 만원 미만</li> </ul>
자활보호 대상자	<p>생활보호 대상자 세대로서 거액 및 시설보호 대상 세대가 아닌 세대의 세대원(근로 능력자를 가진 생활보호대상 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 1인당 월소득 46,000 원 미만</li> <li>○ 가구당 재산액 340 만원 미만</li> </ul>

으로 보인다. 그러나 保社部가 實質的으로 政策에 適用하고 있는 生活保護對象者 選定要件의 基準을 보면 1989年現在 거액보호를 비롯한 生活保護對象이 되려면 家口員 1人當 46,000 원 미만의 所得者이어야 하므로 4人家族 基準으로 볼 때 月 184,000 원밖에 안된다.

이것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추계한(勞動部 추계치와 거의同一함) 大都市 5人家口의 最低生計費 月 315,076 원에 대해 58% 水準에 그치는 것이며, 따라서 生活保護對策이 최적생계비의 절반 정도 以下를 겨우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結論이다(表 2-4).

이와 같은 問題點들을勘案하면서 農業經營의 規模別 所得水準과 맞추어 零細農의 範圍를 추계해 낸다면 零細農의 調查對象 標本으로는 좋은 표본대상을 選定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農地規模別 農業所得과 農家所得을 農林水產部 農家經濟調查結果에 따라 適用시키고 保社部의 法定零細民基準인 月平均 46,000 원 / 1人當과 保健社會研究院의 4人家族基準 最低生計費 268,223 원 / 월 및 勞動部와 勞總의 資料를 각각 인용하여 <表 2-5>와 같이 代入해 보았다. 結果的

으로 保社部 零細民基準으로 보면 0.5 ha 미만에도 크게 못미치는 零細農民이 零細民對象이 되는 것이다. 保健社會研究院의 資料로서는 農家所得으로 0.5 ha 정도까지 最低生計費 未達農家로 보는 셈이 되며, 勞動部 또한 同一하다. 그러나 韓國勞總의 資料로서는 2 ha까지도 生計費 未達로 보게 된다. 經濟企劃院資料에 따르면 2 ha까지는 生計費를 充當하는 所得水準이 되며, 最低賃金審議委員會 資料에 따르면 1.5 ha까지가 生計費를 充當하는 農業所得 階層으로 分類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 農家所得이나 農業所得의 計算에는 자작중심의 경종농업을 기준으로 그에 준하는 임차농가, 양축농가, 園藝農家 및 果樹農家를 換算하여 상응하는 規模를 算出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基準에 따라 農家所得이 0.5 ha의 경종농업소득 水準에 있는 農家를 零細農의 對象으로 정하고 자작지를 경작할 경우를 基準으로 하므로

表 2-5 機關別 最低生計費 策定水準과 農家所得의 比較

단위 : 천원

책정기관별 최저생계비 (연간/4인)	보사부	보건사회 연구원	노동부	최저임금 심의위	경제기획원	노총
	2,160	3,219	3,795	5,127	6,174	8,040
경 지 규 모 별 농 가 소 득	0.5 ha 미만  0.5 ~ 1.0 ha  1.0 ~ 1.5 ha  1.5 ~ 2.0 ha  2.0 ha 이상	4,409  5,651  6,650  7,833  9,600  (1,171)  (2,786)  (4,400)  (5,727)  (7,754)	4,409  5,651  6,650  7,833  9,600  (1,171)  (2,786)  (4,400)  (5,727)  (7,754)	4,409  5,651  6,650  7,833  9,600  (1,171)  (2,786)  (4,400)  (5,727)  (7,754)	4,409  5,651  6,650  7,833  9,600  (1,171)  (2,786)  (4,400)  (5,727)  (7,754)	4,409  5,651  6,650  7,833  9,600  (1,171)  (2,786)  (4,400)  (5,727)  (7,754)

( ) 는 농업소득  
— 는 농가소득 기준  
… 는 농업소득 기준

소작의 경우는 임대관행이 50% : 50% 병작방식을 통용하고 있으므로 50%로勘案하여 1ha까지를範圍內에包含시켰다. 養畜農家の畜産業種別規模를同一한所得水準에 둘 수 있는 규모로 정했으며, 果樹施設園藝農家 또는同一한方法으로適用하여〈表2-6〉을 얻었다. 또한水稻作 1,500坪所得을基準으로하는果樹와施設園藝作物의該當農地面積規模를算出하기 위하여 1983年에서 1987年까지의平均所得資料를利用한結果 수도작소득對比所得에 대한面積換算加重値를 얻었고 이를利用하여該當面積들을작목별로算出해냈다. 사과의 경우 540坪農事은수도작 1,500坪의所得과同一하며, 상치施設園藝는 549坪이 이와同等한水準이된다는結論이다.

한편農家를調查對象으로選定하기 위해서農家가複合經營을하고 있는경우를생각해야한다.複合經營의경우에경작작목이나經營形態別規模을앞의〈表2-7〉에서환산추정된所得에대한面積換算加重値

表2-6 作目別 零細農의 基準과範圍

농 가		비농가(빈곤가구)		
경종농가	임경 <sup>1)</sup>	양축농가 <sup>2)</sup>	과수 시설원예농가 <sup>3)</sup>	
1,500평 이하	3,000평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우: 8두 이하</li> <li>○ 젖소·사슴: 5두 이하</li> <li>○ 양돈·개: 38두 이하</li> <li>○ 양토: 1,250두 이하</li> <li>○ 양계: 2,500수 이하</li> <li>○ 양봉: 38군 이하</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농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수: 700평 이하</li> <li>○ 시설원예: 300평 이하</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농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택보호대상자 가구</li> <li>○ 자활보호대상자 가구</li> <li>○ 농업노동 또는 비농업노동가구</li> <li>○ 고령, 질병, 무직 가구</li> <li>.</li> </ul>

1) 임차료율 50% 기준

2) 농·수·축협, 농어가경제활성화대책 ('86-'87), 1988, p.127.

3) 수도작소득(1,500평) 대비 작목별 소요면적을 산출함.

表 2 - 7 水稻作所得(1,500坪)對比 作目別 所要面積 算出

단위 : 천원

수도작	과 수					시 설 원 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평균	상치	고추	오이	토마토	호박	딸기	참외	수박	평균	
1983 - 1987 평균소득	261	725	627	428	554	584	237	660	481	587	327	571	326	484	459
수도작소득 대비	1.0	2.78	2.40	1.64	2.12	2.24	0.91	2.53	1.84	2.27	1.25	2.18	1.25	1.85	1.76
수도작 1,500 평기준 소요면적	1,500	540	625	915	708	(690) 670	549	198	272	222	400	229	400	270	(318) 284

○ 단위 : 수도작 · 과수 ; 천원 / 300 평, 시설원예 ; 천원 / 100 평

○ 자료 : 수도작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년도 과수 및 시설원예 ; 농촌진흥청, 농축산물표준소득,  
각년도

에 의해 總面積이 0.5 ha 이하인 경우에만 그 對象으로 하도록 하여 調查農家를 선발했다.

- 零細農의 選定基準

$$1,500 \text{ 평} > \text{자작지면적} + \text{임차지면적} \times 0.5 + \text{시설원예면적} \times 5 \\ + \frac{1,500}{8} \times \text{소사육두수} + \frac{1,500}{38} \times \text{돼지·개} + \frac{1,500}{5}$$

$$\times \text{젖소·사슴} + \frac{1,500}{1,250} \times \text{양토} + \frac{1,500}{2,500} \times \text{양계} +$$

$$\frac{1,500}{38} \times \text{별통수}$$

이러한 方法에 의거 선발되고 調査된 農家の 地域別 分布는 〈表 2-8〉과 같으며, 總 339 戶이다. 地帶別 分布는 中間地帶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地型區分이 중간형에 많으며, 또한 이 地域의 居住農民에 대한 意見이나 調査值가一般的 경향이나 平均值을 크게 影響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都市近郊의 경우는 특수한 性格을 가질 것으로豫想되어 샘풀수를 보통조사 地帶別 샘풀의 반수로 조정토록 하였다.

表 2 - 8 調査對象地域選定 및 規模

도 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광주 하남시	광주 평창 강릉시	평택	제원 명주	논산 부여 금산	옥구 김제 남원(시)	나주 광양 광주시 (광산구)	성주 금릉	함양 밀양	
도시근교	16	5	4	6	17	-	-	-	48
평야	17	6	5	10	25	4	5	6	78
중간	-	10	8	20	8	11	12	11	80
산간	-	18	11	6	7	29	3	4	78
계	33	39	28	42	57	44	20	21	284

## 第 3 章

### 零細農의 生活相과 社會心理

農村低所得層으로 概念지울 수 있는 零細農(零細民)의 生活安定과 貧困脫避를 위한 對策樹立을 위해서는 이들 階層이 당면한 社會經濟的 與件과 社會心理狀態에 대한 經驗的 基礎資料가 要請된다. 이에 따라 本章에서는 284 戶에 대한 現地面接聽取調查資料를 중심으로 이들 階層의 顯示的인 生活相과 內在的인 가치의식에 대한 단순한 實態把握에 중점을 두었다. 資料分析은 調查對象家口를 居宅保護, 自活保護, 醫療扶助對象家口와 零細農의 4 가지 類型으로 區分한 후 單純製表分析方法에 의해 家口 類型間을 比較分析하였다.

第 1 節에서는 調查對象家口의 社會經濟文化的 背景에 대한 一般現況을 살펴보았다. 第 2 節에서는 동거가구원의 構成과 출타가구원 및 結婚子女의 規模와 본가와의 經濟的 關係에 基礎한 家族構成과 家族分散을 살펴보았다. 第 3 節에서는 貸貸借를 중심으로 한 農地利用과 農外就業活動 등 生產과 經濟活動을 살펴보았다. 第 4 節에서는 家口員의 건강상태와 醫療現況을, 第 5 節에서는 子女教育移修와 子女就業實態를 살펴보았다. 第 6 節에서는 所得과 家計를, 第 7 節에서는 老齡化와 老後生活對策에 대한 實態를, 그리고 第 8 節에서는 社會參與와 離農意思, 職業熱望意識, 아노미와 소외 등 社會心理的 側面을 살펴보았다.

## 1. 調査家口의 一般現況

### 가. 家口主의 社會的 背景

#### ① 性別分布

調查對象 家口主의 性別分布는 남자가 86.6%, 여자가 13.4%이다. 家口類型別 家口主의 性別分布는 居宅保護對象 家口의 경우만 男・女 家口主의 比率이 각각 51.7%와 48.3%로 엇비슷하였을 뿐 餘他類型에서는 男子 家口主의 比率이 90% 水準이다(表 3-1)。

#### ② 年齡別 分布

調查對象 家口主의 平均年齡은 57.9세이다. 年齡別 分布는 60세 以上이 48.6%이고, 이 중에서 70세 이상의 家口主 比率도 16.6%나 되었다. 이에 비해 40세 미만의 家口主 比率은 7.4%에 불과하였다. 家口類型別로 區分하여 보면 居宅保護對象 家口의 경우 60세 이상 家口主의 比率이 75.9%로 가장 높은 반면 自活保護對象 家口에서는 27.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零細農家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家口主의 比率이 51.2%로 家口主의 高齡化現狀이 극심함을 알 수 있다(表 3-2)。

表 3-1 家口主의 性別分布

單位：名，%

家口類型 區 分	男	女	計
居宅保護家口	15 (51.7)	14 (48.3)	29 (100.0)
自活保護家口	70 (92.1)	6 ( 7.9)	76 (100.0)
醫療扶助家口	48 (88.9)	6 (11.1)	54 (100.0)
零細農家口	113 (90.4)	12 ( 9.6)	125 (100.0)
計	246 (86.6)	38 (13.4)	284 (100.0)

表 3-2 家口主의 年齢分布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20 ~ 29세	30~39	40~49	50~59	60~69	70세 以上	計	平均 年齡
居宅保護	0 (0.0)	0 (0.0)	6 (20.7)	1 (3.4)	8 (27.6)	14 (48.3)	29 (100.0)	65.4
自活保護	1 (1.3)	5 (6.6)	14 (18.4)	35 (46.1)	13 (17.1)	8 (10.5)	76 (100.0)	54.6
醫療扶助	0 (0.0)	4 (7.4)	7 (13.0)	12 (22.2)	25 (46.3)	6 (11.1)	54 (100.0)	58.5
零細農	1 (0.8)	10 (8.0)	23 (18.4)	27 (21.6)	45 (36.0)	19 (15.2)	125 (100.0)	58.1
計	2 (0.7)	19 (6.7)	50 (17.6)	75 (26.4)	91 (32.0)	47 (16.6)	284 (100.0)	57.9

表 3-3 家口主의 結婚關係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기 혼	미 혼	사 별	이 혼	별 거	가 출	計
居宅保護	11 (37.9)	2 (6.9)	13 (44.8)	1 (3.4)	1 (3.4)	1 (3.4)	29 (100.0)
自活保護	66 (86.8)	1 (1.3)	6 (7.9)	0	0	3 (4.0)	76 (100.0)
醫療扶助	45 (83.3)	0	8 (14.8)	0	0	1 (1.9)	54 (100.0)
零細農	111 (88.8)	4 (3.2)	8 (6.4)	0	0	2 (1.6)	125 (100.0)
計	233 (82.0)	7 (2.5)	35 (12.3)	1 (0.4)	1 (0.4)	7 (2.4)	284 (100.0)

## ③ 結婚關係

調查對象 家口主 가운데 부부가 生存하고 있는 기혼자의 比率은 83.0 %인 반면 사별, 이혼, 별거 및 무단가출로 인해 무배우자가 된 기혼자의 比率도 15.5 %에 달하고 있다. 특히, 무배우자 家口主 가운데 부인

表 3-4 家口主의 教育水準

單位：名， %

區分 家口類型	無 學	國文解讀	國 卒 ( 退 )	中 卒 ( 退 )	高 卒 ( 退 )	大 卒 ( 退 )	計
居宅保護	22 (75.9)	0 (0.0)	5 (17.2)	1 (3.4)	1 (3.5)	0 (0.0)	29 (100.0)
自活保護	23 (30.3)	4 (5.3)	38 (50.0)	6 (7.9)	5 (6.6)	0 (0.0)	76 (100.0)
醫療扶助	25 (46.3)	6 (11.1)	17 (31.5)	3 (5.6)	2 (3.7)	1 (1.8)	54 (100.0)
零 細 農	39 (31.2)	6 (4.8)	61 (48.8)	11 (8.8)	8 (6.4)	0 (0.0)	125 (100.0)
計	109 (38.4)	16 (5.6)	121 (42.6)	21 (7.4)	16 (5.6)	1 (0.4)	284 (100.0)

의 가출로 인한 比率이 2.4 %나 되었는데, 이는 미혼에 의한 무배우자  
의 比率과 맞먹는 숫자로서 農村家族의 創出과 維持에 있어 注意를 要하  
는 社會的 問題가 되고 있다(表 3-3)。

#### ④ 教育水準

調查對象 家口主의 教育水準은 (表 3-4)에서와 같이 中學教育 以上  
履修者の 比率은 13.4 %에 지나지 않은 반면 無學이 38.4 %, 國文解讀  
이 5.6 %로서 定規教育을 이수하지 못한 比率이 44.0 %나 되었다.

#### ⑤ 職業分布

調查對象 家口主의 職業別 分布는 農業이 74.3 %로 가장 높았으나 無  
職의 比率도 14.4 %로 比較的 높았는데, 이는 居宅保護對象家口主중 無  
職者가 29名中 19名(65.5%)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會社員 등  
比較的 安定的 職業從事者の 比率은 1.7 %에 지나지 않았고 막노동 등  
不安定 職業從事者 比率도 5.6 %나 되고 있다(表 3-5)。

表 3-5 家口主의 職業分布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農業	商業	會社員 (公員)	自勞動	主 項	公務員	其 他	無 職	計
居宅保護	3 (10.3)		1 (3.4)	2 (6.9)	1 (3.4)		3 (10.3)	19 (65.5)	29 (100.0)
自活保護	54 (71.1)	2 (2.6)	1 (1.3)	8 (10.5)	1 (1.3)		1 (1.3)	9 (11.8)	76 (100.0)
醫療扶助	43 (79.6)	2 (3.7)		2 (3.7)				7 (13.0)	54 (100.0)
零細農	111 (88.8)		2 (1.6)	4 (3.2)		1 (0.8)	1 (0.8)	6 (4.8)	125 (100.0)
計	211 (74.3)	4 (1.4)	4 (1.4)	16 (5.6)	2 (0.7)	1 (0.3)	5 (1.8)	41 (14.4)	284 (100.0)

## ⑥ 宗 教

調查對象 家口主의 宗教別 分布는 <表 3-6>에서 처럼 전체 家口主의 75.4 %가 宗教生活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15.1 %가 불교를. 그리고 7.0 %와 1.8 %가 각각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對象 家口主의 경우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고 있는 比率이 餘他 家口類型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 □ 健康狀態

<表 3-7>에서와 같이 調查對象 家口主中 31.0 %가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現狀은 특히 居宅保護對象 家口에서 두드러졌다. 물론 居宅保護對象 家口의 選定基準을 考案할 때 이러한 현상은 當然한 것이지만 家口主中 58.6 %가 不健康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家口에 대한 계속적인 社會的 保護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表 3-6 家口主의 宗教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무	計
居宅保護	3 (10.3)	1 (3.4)	1 (3.4)			24 (82.8)	29 (100.0)
自活保護	3 (3.9)		16 (21.1)			57 (75.0)	76 (100.0)
醫療扶助	3 (5.6)		5 (9.3)		1 (1.9)	45 (83.3)	54 (100.0)
零細農	11 (8.8)	4 (3.2)	21 (16.8)	1 (0.8)		88 (70.4)	125 (100.0)
計	20 (7.0)	5 (1.8)	43 (15.1)	1 (0.3)	1 (0.3)	214 (75.4)	284 (100.0)

表 3-7 家口主의 健康狀態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健 康	普 通	不 健 康	計
居宅保護	7 (24.1)	5 (17.2)	17 (58.6)	29 (100.0)
自活保護	43 (56.6)	8 (10.5)	25 (32.9)	76 (100.0)
醫療扶助	26 (48.1)	9 (16.7)	19 (35.2)	54 (100.0)
零細農	83 (66.4)	15 (12.0)	27 (21.6)	125 (100.0)
計	159 (56.0)	37 (13.0)	88 (31.0)	284 (100.0)

## 나. 經濟的 背景

### ① 土地所有 및 耕作面積

調查對象家口 284 戶의 戶當土地所有 및 耕作面積은 <表 3-8>에서와 같다. 즉, 所有面積의 경우 畔과 田을 합친 平均面積은 391.0 坪이었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零細農이 617.7 坪으로 가장 많은 반면 居宅保護對象家口의 경우는 92.4 坪에 지나지 않았다. 耕作面積의 경우는 戶當平均面積이 1,002.5 坪으로 所有面積의 約 2.6 倍에 달하였다. 家口類型別로 본 耕作面積은 零細農이 1,230.7 坪(所有面積의 2.0 倍)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醫療扶助對象家口로써 1,009.6 坪이었다. 그러나 所有面積:耕作面積의 比率은 自活保護對象家口가 1:4.6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戶當平均 垈地面積은 94.0 坪이었다.

### ② 主要 家畜飼育

主要家畜飼育現況은 <表 3-9>에서와 같이 한우의 경우 飼育家口比率은 16.9% (48 戶)로 戶當 0.25 두를 사육하고 있고, 돼지는 17 戶에서 122 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한편 닭은 7 戶에서 85 首를 사육함으로써 돼지사육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사육家口比率은 27.8%, 戶當飼育頭首는 0.76 마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表 3-8 土地所有 및 耕作面積

單位 : 坪

區分 家口類型	戶當 平均所有面積			戶當平均 耕作面積			戶當平均 대지면적	B/A
	畠	田	計 (A)	畠	田	計 (B)		
居宅保護	48.3	44.1	92.4	48.3	44.1	92.4	83.8	1.0
自活保護	150.4	57.1	207.5	747.4	215.2	962.6	79.4	4.6
醫療扶助	206.1	64.6	270.7	779.7	229.9	1,009.6	90.2	3.7
零細農	499.3	118.4	617.7	875.8	354.9	1,230.7	102.5	2.0
計	306.4	84.6	391.0	739.5	263.0	1,002.5	94.0	2.6

表 3-9 主要 家畜飼育 現況

區分 家口類型	한 우			돼 지			닭			개		
	사육 가구 비율	호당 사육 두수	사육 가구 비율									
居宅保護	-	-	-	-	-	-	-	-	-	6.9	0.10	1.50
自活保護	17.1	0.38	1.71	3.9	0.32	8.00	2.6	0.16	6.00	22.4	0.39	1.76
醫療扶助	16.7	0.31	1.89	11.1	0.87	7.83	1.9	0.17	9.00	33.3	0.65	1.94
零細農	17.6	0.19	1.09	6.4	0.42	6.50	3.2	0.50	15.75	33.6	1.19	3.55
計	16.9	0.25	1.46	6.0	0.43	7.24	2.5	0.30	12.00	27.8	0.76	2.75

表 3-10 主要 農機械 保有 家口比率

區分 家口類型	單位 : %					
	탈곡기	분무기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居宅保護						
自活保護	1.3	1.3	7.9			
醫療扶助	1.9	1.9	11.1			
零細農	6.4	6.4	13.6	4.8	5.6	6.4
計	3.5	3.5	10.2	2.1	2.5	3.2

表 3-11 戶當 土地資產 保有額

單位 : 萬 원

區分 家口類型	畠	田	대 지	計
居宅保護	0	1.3	1.7	3.0
自活保護	169.6	48.6	42.0	260.1
醫療扶助	115.4	39.4	60.8	215.6
零細農	796.4	156.5	95.0	1,047.9
計	417.9	89.5	64.8	572.2

### ③ 主要 農機械 保有

調查對象 家口의 主要農機械 保有現況은 경운기의 保有家口比率이 10.2 %로 가장 높고, 털곡기 ( 3.5 % ), 동력분무기 ( 3.5 % ), 이앙기 ( 3.2 % ), 트랙터 ( 2.5 % ), 콤바인 ( 2.1 %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家口들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大型農機械를 보유하는 것은 農機械 貨作業收入을 위한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10>.

한편 이들의 農機械 所有形態를 보면 大部分의 大型高級機種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은 여러명이 共同所有하는 形態로 單獨所有의 경우는 극히 적은 수였다.

### ④ 土地資產의 保有

調查對象 家口의 戶當 平均 土地資產은 畦 417.9 만원, 田 89.5 만원, 垈地 64.8 만원으로 總 572.2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對象家口의 戶當 平均 土地資產額은 3.0 만원에 지나지 않은 반면 自活保護對象家口와 醫療扶助對象家口는 각각 260.1 만원과 215.6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零細農은 1,047.9 만원으로 나타나 (表 3-11) 比較的 農地 所有面積이 生活保護對象者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農地價格의 환산은 그 地域의 現地시세를 調查過程에서 나온 대로 適用했으며 그 결과 最近의 土地價格 上昇에 影響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畦資產價格이 높은 이유는 아직도 農村奥地에는 논 값이 빨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所有面積도 논의 경우가 빨보다는 많기 때문이다.

### ⑤ 貯蓄과 負債

<表 3-12>에서와 같이 調查對象家口의 戶當平均貯蓄額은 26.9 만원이고, 負債額은 207.6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家口類型別로 區分하여 보면 저축의 경우 의료부조대상가구가 가장 적은 5.1 만원이었고, 負債의

表 3-12 戶當 平均 貯蓄 및 負債額

單位 : 萬 원

家口類型	區 分	貯蓄額 (A)	負債額 (B)	A - B
居宅保護		21.7	53.3	△ 31.6
自活保護		31.5	264.5	△ 233.0
醫療扶助		5.1	244.0	△ 238.9
零細農		34.6	194.1	△ 159.5
計		26.9	207.6	△ 180.7

경우는 自活保護對象家口에서 가장 많은 264.5 만원이었다.

한편 貯蓄額과 負債額을 차감한 額數는 戶當平均 180.7 만원이나 되었다. 저축의 形態를 보면 대부분이 公債나 保險形態이고 적금이나 계형태로 저축되는 것이 많았다.

#### 다. 住居環境

##### ① 住宅所有

調查對象 家口의 住宅所有率은 86.7 %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對象者 家口의 住宅所有率은 68.0 %로 가장 낮았고 醫療扶助對象 家口는 92.6 %로 가장 높았다. 한편 零細農과 自活保護者 家口의 住宅所有率은 각각 90.3 %와 82.7 %로 나타났다. 또한 無住宅 所有家口 중에서 傳賈나 權利세로 살고 있는 家口의 比率이 4.0 %나 되고 있는데 비하여 無料借家의 比率은 9.3 %나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農村에서 無料借家의 比率이 比較的 높은 것은 離農으로 因한 空家를 利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表 3-13) .

##### ② 지붕材料

住宅의 지붕재료는 스헤트 ( 62.2 % ), 기와 ( 27.3 % ), 양철 ( 5.8 % ), 스라브 ( 3.6 % )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초가지붕의 比率도 1.1 %나 되고 있다 (表 3-14) .

表 3 - 13 住宅 保有形態

單位：戶， %

家口類型 區分	자 가	전 세	월 세	기 타 (무료차가)	計
居宅保護	17 (68.0)	0	3 (12.0)	5 (20.0)	25 (100.0)
自活保護	62 (82.7)	0	3 (4.0)	10 (13.3)	75 (100.0)
醫療扶助	50 (92.6)	0	0	4 (7.4)	54 (100.0)
零細農	112 (90.3)	3 (2.4)	2 (1.6)	7 (5.7)	124 (100.0)
計	241 (86.7)	3 (1.1)	8 (2.9)	26 (9.3)	278 <sup>1)</sup> (100.0)

1) 無應答者 6 戶 除外。

表 3 - 14 지붕材料

單位：戶， %

家口類型 區分	초 가	양 철	기 와	스레트	기 타 (스라브)	計
居宅保護	0 (8.0)	2 (12.0)	3 (80.0)	20	0	25 (100.0)
自活保護	2 (2.7)	4 (5.5)	16 (21.9)	49 (67.1)	2 (2.7)	73 (100.0)
醫療扶助	0 (5.6)	3 (29.6)	16 (55.6)	30 (58.5)	5 (9.3)	54 (100.0)
零細農	1 (0.8)	7 (5.7)	40 (32.5)	72 (58.5)	3 (2.4)	123 (100.0)
計	3 (1.1)	16 (5.8)	75 (27.3)	171 (62.2)	0 (3.6)	275 <sup>1)</sup> (100.0)

1) 無應答者 9 戶 除外。

### ③ 벽 材 料

調査對象 家口 住宅 벽재료는 흙벽 ( 74.9 % ), 시멘트 블럭 ( 23.3 % ), 목재 ( 1.5 % )의 순으로 나타났다. 保護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對象者 家口의 92.0 % 가 흙벽으로 되어있어 가장 열악한 住宅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表 3-15 ).

### ④ 保有房 및 使用房數

調査對象 家口의 보유 방수별 分布는 방 2 個가 48.0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 個 ( 39.4 % )로 나타났으며, 1 個의 방을 保有한 比率도 5.7 %에 달하고 있는 반면 4 個以上의 방을 保有한 家口의 比率도 6.8 %나 되고 있다 ( 表 3-16 ).

한편 사용방 수를 보면 2 個 방을 使用하고 있는 家口의 比率은 47.7 %로 가장 많았고, 3 個와 1 個의 방을 使用하고 있는 家口의 比率도 각

表 3-15 벽 材 料

單位 : 戶, %

家口類型 區 分	흙	시멘트블럭	목 재	기 타	計
居 宅 保 護	23 (92.0)	2 ( 8.0 )	0	0	25 (100.0)
自 活 保 護	52 (71.2)	20 (27.4)	1 (1.4)	0	73 (100.0)
醫 療 扶 助	42 (77.8)	12 (22.2)	0	0	54 (100.0)
零 細 農	89 (72.4)	30 (24.4)	3 (2.4)	1 (0.8)	123 (100.0)
計	206 (74.9)	64 (23.3)	4 (1.5)	1 (0.4)	275 <sup>1)</sup> (100.0)

1) 無應答者 9 戶 除外.

表 3-16 保有房數

單位：戶，%

區分 家口類型	1 個	2 個	3 個	4 個	5 個以上	計
居宅保護	6 (24.0)	12 (48.0)	7 (28.0)	0	0	25 (100.0)
自活保護	6 (8.0)	36 (48.0)	30 (40.0)	2 (2.7)	1 (1.3)	75 (100.0)
醫療扶助	0 (0.0)	32 (59.3)	18 (33.3)	4 (7.4)	0	54 (100.0)
零細農	4 (3.2)	54 (43.2)	55 (44.0)	9 (7.2)	3 (1.6)	125 (100.0)
計	16 (5.7)	134 (48.0)	110 (39.4)	15 (5.4)	4 (1.4)	279 <sup>1)</sup> (100.0)

1) 無應答者 5 戶 除外。

表 3-17 使用房數

單位：戶，%

區分 家口類型	1 個	2 個	3 個	4 個以上	計
居宅保護	13 (65.0)	4 (20.0)	3 (15.0)	0	20 (100.0)
自活保護	17 (25.0)	29 (42.7)	20 (29.4)	2 (2.9)	68 (100.0)
醫療扶助	11 (23.4)	28 (59.6)	6 (12.8)	2 (4.3)	47 (100.0)
零細農	18 (17.3)	53 (51.0)	31 (29.8)	2 (1.9)	104 (100.0)
計	59 (24.7)	114 (47.7)	60 (25.1)	6 (2.5)	239 <sup>1)</sup> (100.0)

1) 無應答者 45 戶 除外。

각 25.1 %와 24.7 %이었고 4 個以上의 방을 使用하고 있는 家口比率도 2.5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17). 이 결과는 특히 調査時點이 여름철이였으므로 연료비와 관계없이 可能한限 방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방수는 많은 것으로 보인다.

#### ⑤ 방바닥 및 방벽材料

調查對象 家口의 89.2 %가 방바닥에 비닐장판을 깔고 있으며, 장판지를 깔고 있는 家口의 比率은 10.1 %에 불과했다. 또한 0.7 %의 家口에서는 其他의 材料를 利用하고 있었다(表 3-18).

또한 방벽의 材料를 보면 調査對象 家口의 96.7 %가 벽지로 도배를 하고 있었으나 신문지로 도배를 했거나 도배하지 않은 채 흙벽 속에서 살고 있는 家口의 比率도 각각 1.5 %나 되었다. 특히, 흙벽 속에서 살고 있는 家口는 生活이 困難한 居宅保護對象者 및 自活保護 및 醫療扶助 對象 家口에서만 있었다(表 3-19).

#### ⑥ 烹事用 燃料

調查對象 家口의 취사용 사용연료는 잡목, 벗짚을 利用하는 家口가 36.5 %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탄으로 36.1 %이었다. 한편 LPG 가스와 석유를 使用하고 있는 家口의 比率도 26.0 %와 1.4 %로 각각 나타났다(表 3-20).

#### ⑦ 給水 源

調查對象 家口의 70.0 %가 간이상수도를 給水源으로 하고 있었으나 옹달샘이나 개울물을 給水源으로 利用하고 있는 比率도 각각 4.1 %와 1.5 %나 되고 있었다(表 3-21). 農村地域에서 簡易上水道의 普級率이 높아진 것은 특히 1970 年代 새마을사업의 결과로서 農村保健衛生의 向上과 農村主婦의 家事勞動의 節約에 큰 뜻을 한 것으로 評價되어진다.

表 3-18 방바닥材料

單位：戶，%

家口類型 \ 區分	비 니 류	장 판	기 타	計
居 宅 保 護	19 (76.0)	6 (24.0)	0	25 (100.0)
自 活 保 護	71 (94.7)	4 ( 5.3)	0	75 (100.0)
醫 療 扶 助	45 (84.9)	8 (15.1)	0	53 (100.0)
零 細 農	112 (90.3)	10 ( 8.1)	2 (1.6)	124 (100.0)
計	247 (89.2)	28 (10.1)	2 (0.7)	277 <sup>1)</sup> (100.0)

1) 無應答者 7戶 除外。

表 3-19 벽지材料

單位：戶，%

家口類型 \ 區分	벽 지	신 문 지	홀 벽	기 타	計
居 宅 保 護	23 (92.0)	1 (4.0)	1 (4.0)	0	25 (100.0)
自 活 保 護	71 (94.7)	2 (2.7)	1 (1.3)	1 (1.3)	75 (100.0)
醫 療 扶 助	51 (96.2)	0	2 (3.8)	0	53 (100.0)
零 細 農	122 (99.2)	1 (0.8)	0	0	123 (100.0)
計	267 (96.7)	4 (1.5)	4 (1.5)	1 (0.3)	276 <sup>1)</sup> (100.0)

1) 無應答者 8戶 除外。

表 3-20 취사용燃料

單位：戶， %

區分 家口類型	잡 목	연 탄	석 유	가 스	計
居宅保護	7 (30.4)	11 (47.8)	0	5 (21.7)	23 (100.0)
自活保護	32 (42.7)	18 (24.0)	0	25 (33.3)	75 (100.0)
醫療扶助	16 (29.6)	18 (33.3)	1 (1.9)	19 (35.2)	54 (100.0)
零細農	46 (36.8)	53 (42.4)	3 (2.4)	23 (18.4)	125 (100.0)
計	101 (36.5)	100 (36.1)	4 (1.4)	72 (28.0)	277 <sup>1)</sup> (100.0)

1) 無應答者 7戶 除外。

表 3-21 給水 源

單位：戶， %

區分 家口類型	평 푸	옹달샘	개울물	간이상수도	計
居宅保護	3 (13.6)	1 (4.6)	1 (4.6)	17 (77.3)	22 (100.0)
自活保護	20 (27.4)	2 (2.7)	2 (2.7)	49 (67.1)	73 (100.0)
醫療扶助	15 (28.9)	2 (3.9)	0	35 (67.3)	52 (100.0)
零細農	28 (22.8)	6 (4.9)	1 (0.8)	88 (71.5)	123 (100.0)
計	66 (24.4)	11 (4.1)	4 (1.5)	189 (70.0)	270 <sup>1)</sup> (100.0)

1) 無應答者 14戶 除外。

表 3-22 化粧室 形態

單位：戶， %

家口類型 \ 區分	재 래 식	개 량 식	수 세 식	計
居宅保護	22 (95.7)	1 (4.4)	0	23 (100.0)
自活保護	64 (85.3)	11 (14.7)	0	75 (100.0)
醫療扶助	47 (87.0)	6 (11.1)	1 (1.9)	54 (100.0)
零細農	70 (56.5)	53 (42.7)	1 (0.8)	124 (100.0)
計	203 (73.6)	71 (25.7)	2 (0.7)	276 <sup>1)</sup> (100.0)

1) 無應答者 8 名 除外

### ⑧ 变 소

調查對象 家口의 73.6 %가 재래식 화장실을 保有하고 있는 반면 개량식 및 수세식 便所를 使用하고 있는 家口의 比率은 각각 25.7 %와 0.7 %에 지나지 않았다 (表 3-22) .

### ⑨ 主要 文化生活用品 保有

調查對象 家口 중 黑白TV와 칼라TV의 普及率은 각각 48.6 %와 46.8 %로 비슷한 水準을 보이고 있다. 冷藏庫의 普及率은 67.3 %로 3家口當 2家口가 所有하고 있었고, 세탁기의 普及率은 12.0 %이다. 電話의 普及率도 63.0 %나 되고 있어 比較的 높은 普及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電話 普及率은 政府施策의 影響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電話通話에 의한 마을내 또는 外部社會와의 情報交換의 편리성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新聞購讀率도 10.9 %나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一般的으로 農村住民의 教育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農村住民들의 外部世界에 대한 情報의 需要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3-23) .

表 3-23 主要文化用品 保有率

單位：%

區分 家口類型	후 빼 TV	찰 라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통)	전화	전축	자전거	오토바이	신문구독율
居宅保護	65.2	20.7	27.6	3.4	31.0	13.8	3.4	10.3	3.4	6.9
自活保護	59.2	36.8	70.3	11.8	71.1	63.2	5.3	51.3	6.6	13.2
醫療扶助	59.3	37.0	55.6	7.4	72.2	57.4	5.6	48.1	7.4	9.3
客細農	36.8	63.2	80.1	16.0	81.6	76.8	5.6	54.4	7.2	11.2
計	48.6	46.8	67.3	12.0	71.8	63.0	5.3	47.9	6.7	10.9

表 3-24 主要文化生活用品 購入・贈與率

單位：%

區分 家口類型	후 빼 TV		찰 라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통		전화		전축		자전거		오토바이	
	구입	증여	구입	증여	구입	증여	구입	증여	구입	증여	구입	증여	구입	증여	구입	증여	구입	증여
居宅保護	37.5	62.5	42.9	57.1	33.3	66.7	33.3	66.7	60.0	40.0	25.0	75.0	-	100.0	50.0	50.0	-	100.0
自活保護	60.5	39.5	36.7	63.3	66.0	34.0	50.0	50.0	75.9	24.1	85.1	14.9	25.0	75.0	84.6	15.4	40.0	60.0
醫療扶助	58.6	41.4	47.4	52.6	53.3	46.7	25.0	75.0	84.4	25.6	71.4	28.6	20.0	80.0	89.5	10.5	28.6	71.4
客細農	57.9	42.1	43.4	56.6	52.0	48.0	38.2	61.8	82.4	17.6	69.6	30.4	23.5	76.5	91.2	8.8	36.8	63.2
計	57.6	42.4	42.5	57.5	55.2	44.8	39.0	61.0	79.7	20.3	73.1	26.9	21.9	78.1	87.4	12.6	34.2	65.8

低所得層에 속하는 調査對象 家口가 比較的 高價品인 칼라 TV, 냉장고, 세탁기, 電話의 普及率이 높은 것은 <表3-24>에서와 같이 외지에 나가 있는 子女들에 의한 증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칼라 TV와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 증여에 의한 保有比率이 각각 57.5%, 44.8%, 61.0%였고 電話의 경우도 26.9%가 子女나 本人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다. 특히, 零細農들은 그들의 子女가 대부분 外地에나가 일하고 있어 電話의 必要性이 보다크게 要求되므로 子女들의 증여나 本人의 投資로 가설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零細農의 家族構成과 家族分散

本節에서는 家口主를 包含한 同居家口員과 出他家口員 및 結婚한 非同居子女의 社會人口學의 特性과 出他家口員의 移住動機, 移住地에서의 經濟活動 및 本家와의 經濟的 關係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가. 同居家口員의 社會的 特性

#### ① 性別構成

同居家口員의 性別構成은 <表3-25>와 같이 男子가 514名, 女子가 524名으로 女子家口員數가 男子보다 10名 많았다.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居宅保護對象 家口의 경우 性比가 74.4로 女子 家口員이 월등하게 많았는데, 이는 居宅保護對象 家口에는 女性 家口主만으로 構成된 단독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 ② 結婚關係

同居家口員의 結婚關係別 家口構成은 既婚關係에 있는 家口員의 比率이 47.9%인 반면 未婚關係에 있는 家口員의 比率은 43.6%이었다. 한편 結婚했던 家口員 가운데 夫婦중 한 쪽이 死亡하여 無配偶者가 된 家

表 3-25 同居家口員의 性別構成

單位：名， %

家口類型 區 分	男 (A)	女 (B)	計	性 比 (A/B×100)
居 宅 保 護	29 (42.7)	39 (57.3)	68 (100.0)	74.4
自 活 保 護	158 (49.5)	161 (50.5)	319 (100.0)	98.1
醫 療 扶 助	104 (52.5)	94 (47.5)	198 (100.0)	110.6
零 細 農	223 (49.2)	230 (50.8)	453 (100.0)	97.0
計	514 (49.5)	524 (50.5)	1,038 (100.0)	98.1

表 3-26 同居家口員의 結婚關係

單位：名， %

	기 혼	미 혼	사 별	이 혼	별 거	가 출	計
居宅保護	15 (22.1)	33 (48.5)	16 (23.5)	2 (2.9)	1 (1.5)	1 (1.5)	68 (100.0)
自活保護	135 (42.9)	150 (47.6)	21 (6.7)	6 (1.9)	0 (-)	3 (1.0)	315 (100.0)
醫療扶助	96 (48.7)	86 (43.7)	13 (6.6)	0 (-)	1 (0.5)	1 (0.5)	197 (100.0)
零 細 農	248 (54.9)	181 (40.0)	20 (4.4)	1 (0.2)	0 (-)	2 (0.4)	452 (100.0)
計	494 (47.9)	450 (43.6)	70 (6.8)	9 (0.9)	2 (0.2)	7 (0.7)	1,032 <sup>1)</sup> (100.0)

1) 미상자 6名 除外。

口員의 比率은 6.8 %이고, 離婚, 別居, 嫁出로 인하여 無配偶者가 된 家口員의 比率도 1.8 %나 되고 있다(表 3-26).

### ③ 年齡別 構成

同居家口員의 年齡別 構成은 10 ~ 19 歲層이 26.1 %로 가장 높은 반면 30 ~ 39 歲層은 7.0 %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特性은 家口類型에 關係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同居家口員의 年齡別 構成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70 세 이상의 家口員 構成比率( 8.3 %)이 0 ~ 9 세의 比率( 8.7 %)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出產力이 있는 젊은 부부의 산아제한으로 자식을 적게 낳는데다가 農村 노총각의 結婚難으로 出產能力이 低下되었으며 젊은 層의 離農으로 高齡層의 상대적 比率이 增加한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여하튼 農村低所得層에서도 60 세이상의 老齡化 家口比率이 22.9 %나 된다는 것은 앞으로 老人問題가 큰 社會的 問題로 부각될 것임을 暗示해 준다고 볼 수 있다(表 3-27).

### ④ 學歷水準

同居家口員의 教育程度別 構成은 國海를 包含한 定規教育을 받지 못한 家口員의 比率이 26.3 %로 가장 많고 國卒 程度의 教育履修者의 比率은 25.9 %로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中卒以上의 學歷所持者의 比率은 13.9 %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國民학교와 中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家口員의 比率은 각각 12.9 %, 9.3 %, 7.0 % 이었으나 대학교에 재학중인 家口員의 比率은 0.2 %에 불과하였다.

家口類型別 同居家口員의 教育水準을 보면 零細農에 비해 居宅保護, 自活保護, 醫療扶助 對象家口에서 중 · 고등학교 재학생의 比率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保護對象 家口에는 子女學資金 支援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表 3-28).

表 3-27 同居家口員의 年齡別 構成

單位：名，%

家口類型 \ 區分	~9세	10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9	70 세 ~	計
居宅保護	5 (7.4)	20 (29.4)	6 (8.8)	1 (1.5)	6 (8.8)	5 (7.4)	9 (13.2)	16 (23.5)	68 (100.0)
自活保護	23 (7.2)	102 (32.0)	34 (10.7)	19 (6.0)	45 (14.1)	52 (16.3)	25 (7.8)	19 (6.0)	319 (100.0)
醫療扶助	14 (7.1)	46 (23.2)	32 (16.2)	16 (8.1)	17 (8.6)	25 (12.6)	35 (17.7)	13 (6.6)	198 (100.0)
零細農	48 (10.6)	103 (22.7)	30 (6.6)	37 (8.2)	52 (11.5)	63 (13.9)	82 (18.1)	38 (8.4)	453 (100.0)
計	90 (8.7)	271 (26.1)	102 (9.8)	73 (7.0)	120 (11.6)	145 (14.0)	151 (14.6)	86 (8.3)	1038 (100.0)

表 3-28 同居家口員의 學歷別 構成

單位：名，%

家口類型 \ 區分	무학	국해	국졸(國)	국재	중졸(中)	중재	고졸(高)	고재	대재	대졸이상	미취학	計
居宅保護	30 (44.1)	0	11 (16.2)	11 (16.2)	3 (4.4)	5 (7.4)	3 (4.4)	5 (7.4)	0	0	0	68 (100.0)
自活保護	55 (17.4)	9 (2.8)	90 (28.5)	40 (12.6)	16 (5.1)	42 (13.3)	20 (6.3)	31 (9.8)	1 (0.3)	1 (0.3)	11 (3.5)	316 (100.0)
醫療扶助	50 (25.4)	11 (5.6)	46 (23.4)	21 (10.7)	14 (7.1)	16 (8.1)	15 (7.6)	11 (5.6)	1 (0.5)	2 (1.0)	10 (5.1)	197 (100.0)
零細農	103 (22.7)	14 (3.1)	121 (26.7)	61 (13.5)	32 (7.1)	33 (7.3)	34 (7.5)	25 (5.5)	0 (0.7)	3 (0.7)	27 (6.0)	453 (100.0)
計	238 (23.0)	34 (3.3)	268 (25.9)	133 (12.9)	65 (6.3)	96 (9.3)	72 (7.0)	72 (7.0)	2 (0.2)	6 (0.6)	48 (4.6)	1034 <sup>1)</sup> (100.0)

1) 미상자 4名 除外

表 3-29 同居 家口員의 職業構成

單位：名， %

區分 家口類型	農 業	學 生	販 賣 從事者	單 純 勞務者	管理職 事 務 從事者	技能工 及生產工 程 종사자	專門職 技 術 職	運輸的 職 業	軍 人	其 他	無 職	計	
居宅保護	4 (5.9)	23 (33.8)	1 (1.5)	2 (2.9)	1 (1.5)	1 (1.5)	0	0	0	0	36 (52.9)	68 (100.0)	
自活保護	109 (35.7)	109 (35.7)	6 (2.0)	12 (3.9)	6 (2.0)	7 (2.3)	0	1 (0.3)	2 (0.7)	1 (0.3)	1 (0.3)	51 (16.7)	305 (100.0)
醫療扶助	90 (48.1)	52 (27.8)	4 (2.1)	3 (1.6)	2 (1.1)	5 (3.7)	1 (0.5)	0	0	3 (1.0)	1 (0.5)	26 (13.9)	187 (100.0)
零細農	224 (52.6)	118 (27.7)	2 (0.5)	8 (1.9)	11 (2.6)	11 (2.6)	1	1 (0.2)	3 (0.7)	4 (0.9)	0 (10.1)	43 (100.0)	
計	427 (43.3)	302 (30.6)	13 (1.3)	25 (2.5)	20 (2.0)	24 (2.4)	2 (0.2)	2 (0.2)	5 (0.5)	8 (0.8)	2 (0.2)	156 (15.8)	986 <sup>1)</sup> (100.0)

1) 미취학자 48명 및 미상자 4명 제외.

## ⑤ 職業構成

同居家口員중 國民學校 재학자 이상 家口員의 職業構成은 <表 3-29>에서와 같이 農業과 學生이 전체의 73.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管理職・事務從事者와 專門職・技術職과 같은 比較的 安定的 職業從事者の 比率은 4.4%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高齡, 老弱으로 인한 無職者의 比率도 15.8%나 되었는데 특히,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는 52.9%로 높게 나타났다.

## ⑥ 宗 教

同居家口員의 宗教別 分布를 보면 信仰生活을 하지 않는 無宗教 家口員의 比率이 전체의 77.0%를 점유하고 있었고 信仰生活을 하고 있는 家口員들 중 불교를 믿고 있는 比率은 13.3%,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고 있는 比率을 각각 8.8%나 0.7%로 나타났다(表 3-30).

## ⑦ 健康狀態

同居家口員의 健康狀態는 <表 3-31>에서와 같이 전체居家口員의 16.5%가 不健康한 것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居宅保護對象 家口員 가운데 38.2%가 健康狀態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零細農家에서는 12.2%만이 不健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不健康的 家口員중에는 지병이나 고질병 환자가 17.8%나 되었다.

### 나. 家口員 規模

#### ① 家口員數

調查對象 家口의 戶當 平均 同居家口員數는 3.65人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對象 家口는 2.34人으로 가장 적었고 自活保護對象 家口는 4.25人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同居家口員數別 家口構成에 있어서는 284戶中 1人으로 構成된 家口比率이 8.5%나 되었으며 6名 以上의 同居家口員을 가진 家口比率

表 3-30 同居家口員의 宗教別 構成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무종교	計
居宅保護	7 (10.3)	1 (1.5)	1 (1.5)	0 (0.0)	59 (86.7)	68 (100.0)
自活保護	23 (7.4)	0 (0.0)	46 (14.8)	0 (0.0)	241 (77.7)	310 (100.0)
醫療扶助	12 (6.3)	0 (0.0)	14 (7.3)	1 (0.5)	165 (85.9)	192 (100.0)
零細農	48 (10.6)	6 (1.3)	75 (16.6)	1 (0.2)	323 (71.3)	453 (100.0)
計	90 (8.8)	7 (0.7)	136 (13.3)	2 (0.2)	788 (77.0)	1023 <sup>1)</sup> (100.0)

1) 無應答者 15 名 除外

表 3-31 同居家口員의 健康狀態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健 康 程 度				不 健 康				
	健 康	보 통	불건강	計	지 고 병	병 질자	신 체 장애자	정 신 박 아	小 計
居宅保護	34 (50.0)	8 (11.8)	26 (38.2)	68 (100.0)	3 (11.5)	3 (11.5)	4 (15.4)	10 (38.5)	26 (100.0)
自活保護	236 (76.1)	18 (5.8)	56 (18.1)	310 (100.0)	9 (16.1)	11 (19.6)	0 (0.0)	20 (35.7)	56 (100.0)
醫療扶助	143 (72.6)	22 (11.2)	32 (16.2)	197 (100.0)	9 (28.1)	4 (12.5)	1 (3.1)	14 (48.8)	32 (100.0)
零細農	362 (80.3)	34 (7.5)	55 (12.2)	451 (100.0)	9 (16.4)	4 (7.3)	0 (0.0)	13 (23.6)	55 (100.0)
計	775 (75.5)	82 (8.0)	169 (16.5)	1026 <sup>1)</sup> (100.0)	30 (17.8)	22 (13.0)	5 (3.0)	57 (33.7)	169 (100.0)

1) 無應答者 12 名 除外

도 18.0 %나 되었다.

또한 家口類型別로 1人 同居家口員으로 構成된 家口數를 보면 居宅保護對象家口는 41.4 %가 이에 속했으며, 餘他 類型도 4.0 ~ 5.6 %에 달하고 있다. 특히, 居宅保護對象家口중 많은 家口가 無依託家口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老後對策을 비롯한 死後의 장제보장에 대한 社會保障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人 同居家口員으로 構成된 家口比率이 零細農層에서 30.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家口는 대부분이 子女들의 離農에 의해 老夫婦만이 家口를 형성하는 경우로서 農村人口의 離農이 農村家族의 縮少와 단절에 얼마만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表 3-32).

## ② 家口主와 關係

家口主와 關係別 同居家口員의 構成은 <表 3-33>에서와 같이 家口主(本人) 27.4 %, 妻 21.4 %, 아들, 딸 등 子女 41.0 %, 부모 3.6 %, 손자녀 4.6 % 등으로 되어 있다. 家口主와의 關係別 家口構成의 特性은 부모 및 손자녀의 構成比率이 比較的 낮다는 점인바, 이는 農村低所得層의 家族構成 역시 부부중심의 子女로 構成된 核家族의 形態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出他家口員과 經濟的 關係

### ① 出他家口員數와 그 構成

調查對象 家口 284 戶에서 外地에 居住하고 있는 家口員數는 總 628名으로 戶當 平均 2.21 人이다. 居宅保護對象 家口의 戶當 出他人員은 0.69 人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는 이들 家口가 1人家族으로 構成된 家口數가 많기 때문이다.

出他家口員의 性別構成은 男子가 370 名으로 女子보다 112 名이 많았다. 居宅保護 對象家口를 제외한 餘他 階層에서는 男子 出他家口員이 女子보다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군입영을 目的으로

表 3-32 同居家口員數別 家口分布

單位：戶， %

區分 家口類型	1名	2名	3名	4名	5名	6名	7名	8名	9名	計	戶當平均 家口員數 (名)
居宅保護	12 (41.4)	6 (20.7)	5 (17.2)	2 (6.9)	3 (10.3)	1 (3.5)				29 (100.0)	2.34
自活保護	4 (5.5)	11 (14.5)	12 (15.8)	14 (18.4)	15 (19.7)	11 (14.5)	4 (5.3)	4 (5.3)	1 (1.3)	76 (100.0)	4.25
醫療扶助	3 (5.6)	13 (24.1)	10 (18.5)	10 (18.5)	10 (18.5)	7 (13.0)	1 (1.9)			54 (100.0)	3.73
零細農	5 (4.0)	38 (30.4)	27 (21.6)	18 (14.4)	15 (12.0)	12 (9.6)	7 (5.6)	3 (2.4)		125 (100.0)	3.57
計	24 (8.5)	68 (23.9)	54 (19.0)	44 (15.5)	43 (15.1)	31 (10.9)	12 (4.2)	7 (2.5)	1 (0.4)	284 (100.0)	3.65

表 3-33 家口主와 關係別 家口員 構成

單位：名， %

區分 家口類型	본인	처	아들	딸	부모	손자녀	자부	기타	計
居宅保護	29 (42.6)	6 (8.8)	12 (17.6)	16 (23.5)	1 (1.5)	4 (5.9)	0	0	68 (100.0)
自活保護	75 (23.5)	63 (19.7)	83 (26.0)	72 (22.6)	14 (4.4)	8 (2.5)	3 (0.9)	1 (0.3)	319 (100.0)
醫療扶助	53 (26.8)	44 (22.2)	47 (23.7)	35 (17.7)	5 (2.5)	11 (5.6)	2 (1.0)	1 (0.5)	198 (100.0)
零細農	127 (28.0)	109 (24.1)	87 (19.2)	74 (16.3)	17 (3.8)	25 (5.5)	10 (2.2)	4 (0.8)	453 (100.0)
計	284 (27.4)	222 (21.4)	229 (22.1)	197 (18.9)	37 (3.6)	48 (4.6)	15 (1.4)	6 (0.6)	1038 (100.0)

外地에 나가 있는 男子 家口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表 3-34) .

#### ② 家口主와 關係別 出他家口員

家口主와 關係別 出他家口員은 <表 3-35>에서와 같이 아들과 딸이 각각 55.6%와 39.3%로서 전체의 94.9%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家口主의 배우자가 出他한 比率도 1.1% (7名)나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零細農들은 現地에 농사일거리도 충분하지 못하고 農外就業의 機會도 없으므로 子女들을 就業의 機會가 많은 都市로 보내게 되므로 子女의 都市地域 居住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 ③ 出他家口員의 年齡分布

出他家口員의 年齡分布는 <表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 ~ 29 歲層이 73.2%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年齡層에서의 出他家口員이 많은 것은 주로 就業과 돈벌이를 위해서 出他한 家口員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40 세 이상의 年齡層의 出他家口員의 比率도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에 惡化된 農業經濟狀況에 큰 影響을 받고 있는 것으로 農事를 열심히 해도 결국 쌓이는 빚이나 生活費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都市就業을 위해 떠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늘어나는 빚 때문에 도망하다시피 떠난 경우도 있었으며, 겨울한철 農閑期에 만 都市에 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떠난 것이 돌아오지 못할 사정으로 떨어중인 경우도 있었다.

#### ④ 出他理由

出他家口員의 出他理由를 보면 <表 3-37>에서와 같이 77.4%가 就業을 위해서 또는 돈벌이를 위해서와 같은 經濟的인 理由 때문이었고, 就學을 위해 出他한 家口員의 比率은 10.5%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就學을 위한 出他家口員은 居宅保護對象 家口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生活基盤이 다소라도 있는 自活保護 및 醫療扶助對象家口와 零細農家에만 있었다.

表 3-34 出他家口員數와 性別構成

單位：名，%

家口類型	區分 (A)	性別			B/A
		男	女	計(B)	
居宅保護	29	4 (20.0)	16 (80.0)	20 (100.0)	0.69
自活保護	76	102 (54.3)	86 (45.7)	188 (100.0)	2.47
醫療扶助	54	88 (64.7)	48 (35.3)	136 (100.0)	2.52
零細農	125	176 (62.0)	108 (38.0)	284 (100.0)	2.27
計	284	370 (58.9)	258 (41.1)	628 (100.0)	2.21

表 3-35 家口主와 關係別 出他家口員

單位：名，%

家口類型	區分 (남편)	아들	딸	손자녀	형제	計
		1 (5.0)	1 (5.0)	14 (70.0)	4 (20.0)	0 (100.0)
自活保護	3 (1.6)	100 (53.2)	84 (44.7)	0	1 (0.5)	188 (100.0)
醫療扶助	1 (0.7)	85 (62.5)	46 (33.8)	2 (1.5)	2 (1.5)	136 (100.0)
零細農	2 (0.7)	163 (57.4)	103 (36.3)	0	16 (5.6)	284 (100.0)
計	7 (1.1)	349 (55.6)	247 (39.3)	6 (1.0)	19 (3.0)	628 (100.0)

表 3-36 出他家口員의 年齡分布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	~19세	20 ~ 29	30 ~ 39	40 ~ 49	50세이상	計
居宅保護	6 (30.0)	12 (60.0)	0	0	2 (10.0)	20 (100.0)
自活保護	40 (21.3)	130 (69.1)	14 (7.4)	4 (2.1)	0	188 (100.0)
醫療扶助	16 (11.8)	94 (69.1)	20 (14.7)	6 (4.4)		136 (100.0)
零細農	22 (7.7)	224 (78.9)	34 (12.0)	2 (0.7)	2 (0.7)	284 (100.0)
計	84 (13.4)	460 (73.2)	68 (10.8)	12 (1.9)	4 (0.6)	628 (100.0)

表 3-37 出他理由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	취업	취학	군입영	자녀와 동거	무단가출	돈벌이	무용답	計
居宅保護	18 (90.0)	0	0	0	0	2 (10.0)	0	20 (100.0)
自活保護	134 (71.3)	22 (11.7)	10 (5.3)	0	2 (1.1)	10 (5.3)	10 (5.3)	188 (100.0)
醫療扶助	104 (76.5)	12 (8.8)	8 (5.9)	0	4 (2.9)	4 (2.9)	4 (2.9)	136 (100.0)
零細農	212 (74.6)	32 (11.3)	24 (8.5)	2 (0.7)	0	2 (0.7)	12 (4.2)	284 (100.0)
計	468 (74.5)	66 (10.5)	42 (6.7)	2 (0.3)	6 (1.0)	18 (2.9)	26 (4.1)	628 (100.0)

### ⑤ 出他地域

出他家口員의 最初出他地域은 서울이 44.9 %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 仁川, 光州, 大田등 大都市가 19.7 %로 나타났다. 또한 5 個 大都市를 除外한 餘他 都市로 出他한 比率은 23.9 %로 나타나 出他家口員의 88.5 %가 都市地域으로 出他한 반면 農村地域으로 出他한 比率은 단지 3.5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農村地域으로 出他한 家口員중에는 군입영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勘案하면 都市로 出他한 比率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表 3-38).

現在의 出他地域도 서울의 46.8 %를 비롯하여 都市地域이 86.0 %가 되고 있는 반면 農村地域은 5.1 %에 지나지 않고 있다(表 3-39).

### ⑥ 出他家口員 職業

出他家口員의 出他當時 및 現在의 職業은 <表 3-40>과 <表 3-41>에서와 같다. 즉 出他當時의 職業은 工場에서 일하는 技能工 및 生產工程從事者가 38.2 %로 가장 많았으며 會社員・公務員 등 管理職・事務從事者の 比率도 24.0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家口主가 인지하고 있는 會社員이란 概念속에는 生產工程從事者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실제의 會社員 比率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出他家口員의 現在 職業에서 技能工 및 生產工程從事者の 比率이 36.3 %로 최초의 比率보다 1.9 %로 減少하는 대신 管理職・事務從事者の 比率은 最初職業에 비해 3.5 %增加한 23.9 %로 나타나는 등 미미한 職業上昇移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⑦ 月所得額

出他家口員 628 名 가운데 月所得額에 대한 情報가 確認된 자는 111 名이다. 이들에 대한 月所得規模別 分布는 <表 3-42>에서와 같이 1人當平均月所得額은 27.0 만원이었다. 또한 所得規模別 分布比率은 16 ~ 20 만원이 33.3 %로 가장 많았고 15.3 %는 15 만원 以下인 반면 月所得規

表 3-38 最初 出他地域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서 울	직활시	도내도시	타도도시	도 내 농 촌	타 도 농 촌	무응답	計
居宅保護	4 (20.0)	6 (30.0)	6 (30.0)	4 (20.0)	0	0	0	20 (100.0)
自活保護	92 (48.9)	38 (20.2)	18 (9.6)	20 (10.6)	0	2 (1.1)	18 (9.6)	188 (100.0)
醫療扶助	70 (51.5)	32 (23.5)	8 (5.9)	10 (7.4)	2 (1.5)	2 (1.5)	12 (8.8)	136 (100.0)
零 細 農	116 (40.8)	48 (16.9)	42 (14.8)	42 (14.8)	10 (3.5)	6 (2.1)	18 (6.3)	284 (100.0)
計	282 (44.9)	124 (19.7)	74 (11.8)	76 (12.1)	12 (1.9)	10 (1.6)	48 (7.6)	628 (100.0)

表 3-39 現在의 出他地域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도 시				농 촌			무응답	合 計
	서 울	직활시	도내 도시	타도 도시	小 計	도내	타 도	小 計	
居宅保護	2 (10.0)	6 (30.0)	6 (30.0)	4 (20.0)	18 (90.0)	0	0	0	2 (10.0) (100.0)
自活保護	102 (54.3)	32 (17.0)	16 (8.5)	18 (9.6)	168 (89.4)	2 (1.1)	4 (2.1)	6 (3.2)	8 (4.3) (100.0)
醫療扶助	72 (52.9)	30 (22.1)	8 (5.9)	10 (7.4)	120 (88.2)	2 (1.5)	2 (1.5)	4 (3.0)	12 (8.8) (100.0)
零 細 農	118 (41.5)	46 (16.2)	36 (12.7)	34 (12.0)	234 (82.4)	8 (2.8)	14 (4.9)	22 (7.7)	28 (9.9) (100.0)
計	294 (46.8)	114 (18.2)	66 (10.5)	66 (10.5)	540 (86.0)	12 (1.9)	20 (3.2)	32 (5.1)	628 (8.9) (100.0)

表 3-40 出他家口員의 最初職業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무 종사직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판 매 종사자	운수적 직 업	단 순 노무자	농업	써비스 직	학 생	군 인	기 타	무 직	잘모름	計
居宅保護		16 (50.0)	6 (30.0)								4 (20.0)			20 (100.0)
自活保護		26 (13.8)	94 (50.0)		2 (1.1)	14 (7.4)			22 (11.7)	10 (5.3)	4 (2.1)	2 (1.1)	14 (7.4)	188 (100.0)
醫療扶助	2 (1.5)	16 (11.8)	50 (36.8)	2 (1.5)	4 (2.9)	10 (7.4)		4 (2.9)	12 (8.8)	6 (4.4)	4 (2.9)	10 (7.4)	16 (11.8)	136 (100.0)
零細農	2 (0.7)	76 (26.8)	90 (31.7)	14 (4.9)	8 (2.8)	12 (4.2)	4 (1.4)	4 (1.4)	40 (14.1)	18 (6.3)		10 (3.5)	6 (2.1)	284 (100.0)
計	4 (0.6)	128 (20.4)	240 (38.2)	16 (2.5)	14 (2.2)	36 (5.7)	4 (0.6)	8 (1.3)	74 (11.8)	34 (5.4)	12 (1.9)	22 (3.5)	36 (5.7)	628 (100.0)

表 3-41 出他家口員의 現在職業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專門職 技術職	管理職 事務從事者	技能工 生產工程 從事者	販賣 從事者	運輸的 職業	單純 勞務者	서비스 職	學 生	軍 人	其 他	無 職	잘모름	計	
居宅保護		10 (50.0)	4 (20.0)							4 (20.0)		2 (10.0)	20 (100.0)	
自活保護		36 (19.1)	86 (45.7)		2 (1.1)	16 (8.5)		16 (8.5)	8 (4.3)	4 (2.1)	8 (4.3)	12 (6.4)	188 (100.0)	
醫療扶助	2 (1.5)	18 (13.2)	50 (36.8)	4 (2.9)	4 (2.9)	10 (7.3)	4 (2.9)	8 (5.9)	8 (5.9)	4 (2.9)	8 (5.9)	16 (11.8)	136 (100.0)	
零細農	2 (0.7)	86 (30.3)	88 (31.0)	14 (4.9)	12 (4.2)	10 (3.5)	8 (2.8)	20 (7.0)	22 (7.8)		14 (4.9)	8 (2.8)	284 (100.0)	
計		4 (0.6)	150 (23.9)	228 (36.3)	18 (2.9)	18 (2.9)	36 (5.7)	12 (1.9)	44 (7.0)	38 (6.1)	12 (1.9)	30 (4.8)	38 (6.1)	628 (100.0)

模가 41 만원 以上인 比率도 1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出他家族員의 月所得을 모르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所得이 일정치 않은 막별이이기 때문이거나 所得을 알릴만큼 確實한 職業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出他家族中 女子의 경우 職業조차도 알수 없거나 알릴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 경우의 所得額은 물론 추정조차도 不可能 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 ▣ 出他에의 도움

出他家口員의 出他時 도움을 받은 기관이나 사람을 보면 도움을 받은 者의 比率은 23.2 %인 반면 76.8 %가 도움을 받지 못한채 스스로 出他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움을 받은 者들 중에서 國家 및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은 者의 比率은 13.7 %에 지나지 않았고, 72.4 %는 형체·친인척·친구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表3-43).

#### ▣ 本家와의 經濟的 關係

지난 1년동안에 있었던 出他家口員과 본가와의 현물과 현금을 주고 받은 經濟的 支援關係는 <表3-44>와 같았다. 먼저 現物을 중심으로 한 經濟的 支援關係를 보면 본가에서 支援해준 比率은 3.3 %( 21 名)인데 비하여 본가가 支援받은 比率은 1.3 %( 8 名)로서 본가에서 支援해 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現金에 대한 經濟的 支援關係에 있어서는 본가에서 出他家口員에게 送金支援한 比率은 2.5 %( 16 名)이었으나 出他家口員이 본가에 送金支援한 比率은 8.0 %( 50 名)으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出他家口員중 77.4 %( 486 名)가 就業이나 또는 돈벌이를 위한 經濟的 理由로 出他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가에 대한 經濟的 支援關係가 아주 미약함을 미루어 볼 때 農村低所得層의 離村子女에 의한 生活向上의 期待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表3-45>는 본가와 出他家口員과의 經濟的 關係가 있는 者를 중심으로 그 關係를 金額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본가가 出他家口員에게 支援한 現物+現金의 1人當 平

表 3-42 出他家口員의 月所得別 分布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月所得額 인지여부			月 所 得 規 模							月平均 所得額 (萬원) 計
	알고 있음	모름	계	15만원 이하	15-20	20-25	25-30	30-35	35-40	40이상	
居宅保護	4 (20.0)	16 (80.0)	20 (100.0)		3 (75.0)	1 (25.0)					4 (100.0)
自活保護	44 (23.4)	144 (76.6)	188 (100.0)	12 (27.3)	19 (43.2)	4 (9.1)	4 (9.1)	1 (2.3)		4 (9.1)	44 (100.0)
醫療扶助	21 (15.4)	115 (84.6)	136 (100.0)	3 (14.3)	5 (23.8)	4 (19.0)	4 (19.0)			5 (23.8)	21 (100.0)
零細農	42 (14.8)	242 (85.2)	284 (100.0)	2 (4.8)	10 (23.8)	7 (16.7)	11 (26.2)	2 (4.8)	1 (2.4)	9 (21.4)	42 (100.0)
計	111 (17.7)	517 (82.3)	628 (100.0)	17 (15.3)	37 (33.3)	16 (14.4)	19 (17.1)	3 (2.7)	1 (0.9)	18 (16.2)	111 (100.0)

表 3-43 出他에의 도움與否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出他에의 도움자			出他에의 도움자						計
	있다	없다	계	國家· 公共機關	學校· 은사	형제	친인척	친구		
居宅保護	10 (50.0)	10 (50.0)	20 (100.0)	0	2 (20.0)	4 (40.0)	2 (20.0)	2 (20.0)		10 (100.0)
自活保護	52 (27.7)	136 (72.3)	188 (100.0)	6 (11.5)	8 (15.4)	16 (30.8)	12 (23.1)	10 (19.2)		52 (100.0)
醫療扶助	28 (20.6)	108 (79.4)	136 (100.0)	4 (14.3)	10 (35.7)	2 (7.1)	8 (28.6)	4 (14.3)		28 (100.0)
零細農	56 (19.7)	228 (80.3)	284 (100.0)	10 (17.9)	0	14 (25.0)	28 (50.0)	4 (7.1)		56 (100.0)
計	146 (23.2)	482 (76.8)	628 (100.0)	20 (13.7)	20 (13.7)	36 (24.7)	50 (34.2)	20 (13.7)		146 (100.0)

均額은 257.0 만원이었고, 반대로 出他家口員이 본가에 支援한 平均額은 118.0 만원으로 결국 139.0 만원이 본가에서 出他家口員에게 資金이 유출되었다. 이러한 關係를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만 出他家口員으로부터 본가가 經濟的 도움을 받았을 뿐 自活保護와 醫療扶助 및 零細農에서는 오히려 본가가 出他家口員에게 經濟的 도움을 주었으며, 零細農에서는 그 額數가 241.2 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44 本家와 出他家口員과 經濟的 關係者數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現 物				現 金				計	
	本家가 支援		出他者가 支援		本家가 支援		出他者가 支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居宅保護	0	20	0	20	0	20	2	18	20	
( - )	(100.0)	( - )	(100.0)	( - )	(100.0)	(10.0)	(90.0)	(100.0)		
自活保護	5	183	0	188	6	182	16	172	188	
(3.7)	(97.3)	( - )	(100.0)	(3.2)	(96.8)	(8.5)	(91.5)	(100.0)		
醫療扶助	5	131	3	133	4	132	9	127	136	
(3.7)	(96.3)	(2.2)	(97.8)	(2.9)	(97.1)	(6.6)	(93.4)	(100.0)		
零細農	11	173	5	279	6	278	23	261	284	
(3.9)	(96.1)	(1.8)	(98.2)	(2.1)	(97.9)	(8.1)	(91.9)	(100.0)		
計	21	607	8	620	16	612	50	578	628	
	(3.3)	(96.7)	(1.3)	(98.7)	(2.5)	(97.5)	(8.0)	(92.0)	(100.0)	

表 3-45 本家와 出他家口員과의 經濟的 支援額

單位 : 萬 원

區分 家口類型	本家가 支援한 金額			出他者가 支援한 金額			B-A
	現 物	現 金	小計(A)	現 物	現 金	小計(B)	
居宅保護	0	0	0	0	13.5	13.5	13.5
自活保護	10.6	181.7	192.3	0	29.9	29.9	△ 162.4
醫療扶助	10.0	64.8	74.8	34.3	33.9	68.2	△ 6.6
零細農	112.0	289.8	401.8	91.4	69.2	160.6	△ 241.2
計	64.0	193.0	257.0	70.0	48.0	118.0	△ 139.0

이와같이 본가에서 出他家口員에의 經濟的 支援이 높게 나타난 것은 經濟的 支援者 16 名중 大學 재학생을 비롯한 學生數가 7名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出他家口員이 就業이나 돈벌이를 目的으로 했을 경우라도 대부분의 경우 고향집으로부터의 現物支援이 많았으며 반대로 就業家庭員의 送金額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본가에서 出他家口員에게 送金하는 頻數가 出他家口員이 본가에 送金하는것 보다 많은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 라. 結婚 非同居 子女와 經濟的 關係

##### ① 結婚非同居 子女數

調查對象 284 家口의 結婚 非同居 子女數는 <表 3-46>에서와 같이 아들이 165 名, 딸이 256 名으로 모두 421 名으로서 戶當 平均 1.48 名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는 戶當 平均 子女數가 0.65 名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零細農家는 1.84 名으로 約 3 倍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年齡別 分布

結婚 非同居 子女 421 名의 年齡別 分布는 <表 3-47>과 같이 30 ~

表 3-46 結婚 非同居 子女數

單位 : 名

區分 家口類型	男	女	計	戶當人員		
				男	女	計
居宅保護	1	18	19	0.03	0.62	0.65
自活保護	39	46	85	0.51	0.61	1.12
醫療扶助	35	52	87	0.65	0.96	1.61
零細農	90	140	230	0.72	1.12	1.84
計	165 (39.2)	256 (60.8)	421 (100.0)	0.58	0.90	1.48

表 3-47 結婚 非同居子女의 年齡分布

單位 : 名, %

家口類型 區 分	29세	30~39	40~49	50세이상	計
居宅保護	1 ( 5.3)	8 (42.1)	8 (42.1)	2 (10.5)	19 (100.0)
自活保護	21 (24.7)	51 (60.0)	12 (14.1)	1 (1.2)	85 (100.0)
醫療扶助	16 (18.4)	50 (57.5)	20 (23.0)	1 (1.1)	87 (100.0)
零細農	48 (20.9)	128 (55.7)	42 (18.3)	12 (5.2)	230 (100.0)
計	86 (20.4)	237 (56.3)	82 (19.5)	16 (3.8)	421 (100.0)

39 歲層의 子女가 56.3 %인 237 名으로 가장 많았고 29 세이하의 子女 比率은 20.4 %로서 40 ~ 49 歲層의 子女와 비슷하였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對象과 零細農家에서의 50 세이상된 結婚 非同居 子女의 比率이 각각 10.5 %와 5.2 %로서 自活 및 醫療扶助 對象家口보다 약간 높았다.

### ③ 教育水準

結婚 非同居 子女 421 名에 대한 教育水準은 <表 3-48>과 같이 國卒 (退)이 49.2 %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中卒 (退)와 高卒 (退)는 각각 21.6 %와 18.8 %이다. 이에 비하여 定規教育을 履修하지 못한 無學과 國文解독자의 比率은 7.1 %나 되었으며 大卒 (退)의 比率도 3.1 %나 되었다. 또한 結婚 非同居 子女중 高卒 (退)以上의 學歷所持者的 比率도 21.9 %나 되었고, 家口類型別로는 零細農에서 27.8 %로 가장 높았다.

高等學校以上의 子女教育에는 많은 教育費가 投資된다는 점을勘案할 때 農村低所得層으로 區分할 수 있는 調查對象家口에서 投資된 教育費는

表 3-48 結婚 非同居子女의 教育水準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無 學	國文解讀	國卒(退)	中卒(退)	高卒(退)	大卒(退)	計
居宅保護	0 (89.5)	17 (5.3)	1 (5.2)	1 (5.2)	0	0	19 (100.0)
自活保護	1 (1.2)	0 (49.4)	42 (28.2)	24 (17.6)	15 (3.5)	3 (100.0)	85
醫療扶助	13 (14.9)	2 (2.3)	48 (55.2)	15 (17.2)	8 (9.2)	1 (1.1)	87 (100.0)
零細農	14 (6.0)	0 (43.5)	100 (22.6)	52 (23.9)	55 (3.9)	9 (100.0)	230
計	28 (6.6)	2 (0.5)	207 (49.2)	92 (21.6)	79 (18.8)	13 (3.1)	421 (100.0)

이들 家口의 階層變化에 주요한 要因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대한 深層的 分析이 要請된다.

#### ④ 結婚年度

結婚 非同居 子女의 結婚年度別 分布는 <表 3-49>와 같이 1980 年以後가 전체의 48.9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970 ~ 1979 年으로 31.6 %이었다. 이를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居宅保護 對象家口에서 1969 年 以前에 結婚 分가한 子女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았는데 (21.1 %) 이는 居宅保護對象 家口主의 年齡과 比較할 때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 ⑤ 結婚費用負擔

<表 3-50>은 結婚 非同居 子女에 대한 부모의 結婚費用 負擔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421 名의 結婚 非同居 子女 가운데 부모가 結婚費用의 일부 또는 全額을 負擔한 比率은 39.4 %이었고 結婚한 子女當事者가 벌어서 充當한 比率은 60.6 %이었다.

表 3-49 結婚年度別 結婚非同居 子女數

單位：名， %

區分 家口類型	~1949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미 상	計
居宅保護	0	1 (5.3)	3 (15.8)	8 (42.1)	3 (15.8)	4 (21.1)	19 (100.0)
自活保護	0	2 (2.4)	6 (7.1)	23 (27.1)	54 (63.5)	0	85 (100.0)
醫療扶助	2 (2.3)	0 (8.0)	7 (34.5)	30 (47.1)	41 (8.0)	7 (100.0)	87
零細農	1 (0.4)	5 (2.2)	26 (11.3)	72 (31.3)	108 (47.0)	18 (7.8)	230 (100.0)
計	3 (0.7)	8 (1.9)	42 (10.0)	133 (31.6)	206 (48.9)	29 (6.9)	421 (100.0)

부모가 166 명의 子女結婚에 支出한 平均結婚費用은 159.8 만원으로 나타났다. 結婚費用負擔規模別 子女數는 100 만원이하가 전체의 50.0 %이고 300 만원이상도 15.0 %나 되었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는 부모負擔比率이 19 名중 1 名 (5.3 %) 밖에 되지 않은 반면 1 名의 負擔規模도 50 만원 이하이었다. 그러나 自活保護對象 및 零細農에서는 子女結婚費用에 300 萬원 以上 支出한 比率도 각각 14.7 %와 18.6 %나 되었다. 이러한 子女結婚費用支出은 子女教育費 支出과 마찬가지로 이를 農村低所得層의 階層變化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推測되며 이에 대한 深層의 分析은 零細農家の 전략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 ⑥ 財產相續

<表 3-51>은 結婚 非同居 子女에 대한 現金 및 土地의 相續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로부터 現金의 財產相續을 받은 子女는 總 421 名 가

表 3-50 結婚非同居 子女의 結婚費用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早豆結婚費用負擔有無		結 婚 費 用 規 模 別									1人當 平 均 結婚費用 (萬원)		
	있다	없다	50만원 以 下	51-100	101-150	151-200	201-250	251-300	301-350	351-400	400만 원以上			
居宅保護	1 (5.3)	18 (94.7)	19 (100.0)	1 (100.0)								1 (100.0)	10.0	
自活保護	41 (48.2)	44 (51.8)	85 (100.0)	9 (22.0)	14 (34.1)	4 (9.8)	5 (12.2)	2 (4.9)	1 (2.4)	0 (4.9)	2 (4.9)	4 (9.8)	41 (100.0)	136.7
醫療扶助	22 (25.2)	65 (74.7)	87 (100.0)	12 (54.5)	3 (13.6)	2 (9.1)	2 (9.1)	0 (13.6)	3 (13.6)	0 (13.6)	0 (13.6)	0 (13.6)	22 (100.0)	79.1
客 細 農	102 (44.3)	128 (55.7)	230 (100.0)	21 (20.6)	23 (22.5)	8 (7.8)	14 (13.7)	1 (1.0)	16 (15.7)	3 (2.9)	5 (4.9)	11 (10.8)	102 (100.0)	189.4
計	166 (39.4)	255 (60.6)	421 (100.0)	43 (25.9)	40 (24.1)	14 (8.4)	21 (12.7)	3 (1.8)	20 (12.1)	3 (1.8)	7 (4.2)	15 (9.0)	166 (100.0)	159.8

表 3-51 結婚非同居子女의 財產相續 與否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現 金 相 繼			土 地 相 繼			平均相續額	
	有 음	缺 음	計	有 음	缺 음	計	現 金 (만원)	土 地 (坪)
居宅保護	0 (100.0)	19 (100.0)	19 (100.0)	0 (100.0)	19 (100.0)	19 (100.0)	0	0
自活保護	0 (100.0)	85 (100.0)	85 (100.0)	2 (2.4)	83 (97.4)	85 (100.0)	0	350
醫療扶助	2 (2.3)	85 (97.7)	87 (100.0)	5 (5.7)	82 (94.3)	87 (100.0)	89.0	50
零 細 農	2 (0.9)	228 (99.1)	230 (100.0)	6 (2.6)	224 (97.4)	230 (100.0)	474.8	278
計	4 (1.0)	417 (99.0)	421 (100.0)	13 (3.1)	408 (96.9)	421 (100.0)	309.4	217

운데 4名(1.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土地를 相續 받은 子女도 13名(3.1%)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이 子女에 대한 財產相續이 저조한 것은 부모의 貢力이 미약한데서 연유된다고 보여진다.

#### ⑦ 結婚 非同居 子女와의 經濟的 關係

結婚 非同居子女와 父母와의 經濟的 關係는 <表3-52>와 같이 現物支援 관계보다는 現金支援 關係가 약간 더 많았다. 現物支援에서는 結婚한 子女가 父母에게 支援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父母가 子女에게 支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父母가 子女에게 農事한 農作物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現金支援關係에서는 子女가 父母에게 支援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子女들이 父母를 訪問할 때 용돈으로 약간씩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表 3-52 結婚非同居子女와 經濟的 關係

單位 : 名, %, 萬 원

區分 家口類型	經濟的 關係 頻度 (名)				1人當 平均支援額 (萬 원)						A-B	
	現 物		現 金		計	結婚非同居 子女支援額			夫母가 支援			
	結婚子女가 支 援	부모가 支 援	結婚子女가 支 援	부모가 支 援		現 物	現 金	小 計 (A)	現 物	現 金	小 計 (B)	
居宅保護	0	0	4	0	19	0	14.3	14.3	0	0		14.3
			(21.1)		(100.0)							
自活保護	3	0	6	0	85	23.7	97.5	121.2	0	0		121.2
	(3.5)		(7.1)		(100.0)							
醫療扶助	1	1	9	0	87	3.0	17.6	20.6	24.0	0	24.0	△ 3.4
	(1.1)	(1.1)			(100.0)							
零細農	8	14	25	1	230	6.3	31.2	37.5	12.3	5.0	17.3	20.2
	(3.5)	(6.1)	(10.9)	(0.4)	(100.0)							
計	12	15	44	1	421	10.3	35.9	46.2	13.1	5.0	18.1	28.1
	(2.9)	(3.6)	(10.5)	(0.2)	(100.0)							

### 3. 生產 및 經濟活動

本節에서는 農村低所得層의 生產 및 經濟活動을 農外所得活動과 農地의 賃貸借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 가. 農外所得活動

##### ① 품 팔 이

<表 3-53>은 調查對象家口 284 戶에서 품팔이에 參與한 家口員數를 보여주고 있다. 즉 품팔이에 參與한 戶當平均人員은 0.58 名이었고, 家口主의 關係別 품팔이 從事者는 家口主本人이 60.8% (101名)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家口主의 처로서 33.1% (55名)이었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戶當參與人員數에 있어서는 自活保護 및 醫療扶助對象家口가 각각

0.72 名과 0.69 名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는 0.28 名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居宅保護對象家口가 품팔이를 적게 한理由로는 우선 이들 對象이 대부분 이미 품팔이를 할 수 없는 老齡이거나 심 신장애자가 많고 政府로부터의 救護糧穀과 生活費가 부족하나마 提供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居宅保護對象者들은 독신이거나 부부세대로서 子女가 없는(非同居包含)家口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들의 生活根據는 더욱더 國家로부터의 救護糧穀과 生計補助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實情인 것으로 보인다.

품팔이 장소를 보면 <表 3-54>과 같이 마을내가 69.3 %로 2/3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都市가 15.1 %이었다.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居宅保護對象家口員은 마을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었는데 비하여 自活保護 및 醫療扶助 對象家口員과 零細農家口員 중에는 都市에서 품팔이를 하고 있는 比率도 12 ~ 18 %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팔이의 일의 種類는 <表 3-55>에서와 같이 농사일이 62.0 %로 거의 2/3를 점유하고 있었고 공사판막노동이 22.9 %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家口類型別로 품팔이 종사일을 比較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었다.

품팔이 從事者の 1人當 平均從事日數와 1人當 平均收入은 <表3-56>에서와 같이 각각 79.9일과 70.1 만원으로 1日當 平均收入은 0.877 만원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1人當 품팔이 從事일 수에 있어서는 醫療扶助 對象家口員이 63.0 日로 가장 적은 반면 零細農에서는 86.9 日로 가장 많았다. 한편 1人當 平均收入에 있어서는 醫療扶助對象家口員과 零細農家口員이 각각 78.9 萬원과 77.8 萬원으로 거의 비슷하였으나 居宅保護對象家口員은 27.5 萬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就業 1日當 平均收入에 있어서는 醫療扶助 對象家口員이 1.252 만원으로 居宅保護 對象家口員의 0.375 만원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現狀은 居宅保護對象家口員中 都市에서의 公사판 막노동등에의 參與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表 3-53 품팔이 參與者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本 人	처	아 들	딸	자 부	計	戶當員
居宅保護	7 (87.5)	1 (12.5)	0 ( - )	0 ( - )	0 ( - )	8 (100.0)	0.28
	31 (56.4)	21 (18.2)	3 (5.4)	0 ( - )	0 ( - )	55 (100.0)	0.72
自活保護	22 (59.5)	12 (32.4)	2 (5.4)	1 (2.7)	0 ( - )	37 (100.0)	0.69
	41 (62.1)	21 (31.8)	3 (4.6)	0 ( - )	1 (1.5)	66 (100.0)	0.53
計	101 (60.8)	55 (33.1)	8 (4.8)	1 (0.6)	1 (0.6)	166 (100.0)	0.58

表 3-54 품팔이 場所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마을내	隣近部落	都 市	大都市	其 他	計
居宅保護	6 (75.0)	2 (25.0)	0 ( - )	0 ( - )	0 ( - )	8 (100.0)
	37 (67.3)	8 (14.5)	10 (18.2)	0 ( - )	0 ( - )	55 (100.0)
自活保護	24 (64.9)	1 (2.7)	5 (13.5)	2 (5.4)	5 (13.5)	37 (100.0)
	48 (72.7)	8 (12.1)	6 ( 9.1)	2 (3.0)	2 (3.0)	66 (100.0)
計	115 (69.3)	19 (11.4)	21 (12.7)	4 (2.4)	7 (4.2)	166 (100.0)

表 3-55 품팔이 일의 種類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농사일	공사판 낙노동	공장	미장일	기타	計
居宅保護	5 (62.5)	1 (12.5)	0 ( - )	0 ( - )	2 (25.0)	8 (100.0)
自活保護	38 (69.1)	12 (21.8)	1 (1.8)	1 (1.8)	3 (5.5)	55 (100.0)
醫療扶助	27 (73.0)	6 (16.2)	1 (2.7)	0 ( - )	3 (8.1)	37 (100.0)
零細農	33 (50.0)	20 (30.3)	2 (3.0)	2 (3.0)	9 (13.7)	66 (100.0)
計	103 (63.0)	38 (22.9)	5 (3.0)	3 (1.8)	17 (10.2)	166 (100.0)

表 3-56 戶當 平均 품팔이 日數와 품팔이 收入

區分 家口類型	1人當품팔이일수 (A)	1人當收入 (萬 원) (B)	B/A
居宅保護	73.3	27.5	0.375
自活保護	84.0	61.5	0.732
醫療扶助	63.0	78.9	1.252
零細農	86.9	77.8	0.895
計	79.9	70.1	0.877

## ② 農外就業

〈表 3-57〉은 調查對象家口員중에서 農外就業活動을 하는 家口員數를 보여주고 있다. 즉 農外就業活動을 하고 있는 戶當平均人員은 0.26名이었으며, 家口主와의 關係別 農外就業者는 家口主本人이 40.0% (30名) 으로 가장 많았고 끌 21.3% (16名), 아들 20.0% (15名), 치 13.3% (10名) 순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零細農과 自活保護 對象家口에서 農外就業者가 戶當 0.33名과 0.32名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表 3-57 農外就業 參與者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본인	처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부	計	戶當人員
居宅保護	1 (50.0)	0 ( - )	1 (50.0)	0 ( - )	0 ( - )	0 ( - )	0 ( - )	2 (100.0)	0.07
自活保護	12 (50.0)	2 (8.3)	1 (4.2)	8 (33.3)	0 ( - )	1 (4.2)	0 ( - )	24 (100.0)	0.32
醫療扶助	2 (25.0)	1 (12.5)	4 (50.0)	1 (12.5)	0 ( - )	0 ( - )	0 ( - )	8 (100.0)	0.15
零細農	15 (36.6)	7 (17.1)	9 (22.0)	7 (17.1)	1 (2.4)	0 ( - )	2 (4.9)	41 (100.0)	0.33
計	30 (40.0)	10 (13.3)	15 (20.0)	16 (21.3)	1 (1.3)	1 (1.3)	2 (2.7)	75 (100.0)	0.26

表 3-58 農外就業 部門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공사판 마노동	공장	가게 점원	석재 공장	미상공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운전수	식당	기타	計
居宅保護	0 ( - )	0 ( - )	0 ( - )	0 ( - )	1 (52.0)	0 ( - )	0 ( - )	0 ( - )	1 (52.0)	2 (100.0)
自活保護	4 (16.7)	8 (33.3)	1 (4.2)	4 (16.7)	1 (4.2)	4 (16.7)	0 ( - )	1 (4.2)	1 (4.2)	24 (100.0)
醫療扶助	2 (25.0)	0 ( - )	2 (25.0)	0 ( - )	1 (12.5)	2 (25.0)	0 ( - )	1 (12.5)	0 ( - )	8 (100.0)
零細農	11 (26.8)	14 (34.1)	2 (4.9)	0 ( - )	1 (2.4)	8 (19.5)	3 (7.3)	0 ( - )	2 (4.9)	41 (100.0)
計	17 (22.7)	22 (29.3)	5 (6.7)	4 (5.3)	4 (5.3)	14 (18.7)	3 (4.0)	2 (2.7)	4 (5.3)	75 (100.0)

居宅保護 및 醫療扶助 對象家口에서는 0.07 名과 0.15 名밖에 되지 않았다. 農外就業部門을 보면 <表 3-58>과 같이 工場이 29.3% (22名)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公사판막노동으로 22.7% (17名)이었다. 한편 農外就業者 중 18.7% (14名)은 公務員, 銀行員, 會社員과 같은 比較的 安定의 부문에 就業하고 있었다.

農外就業者의 就業場所는 <表 3-59>에서와 같이 도내도시가 37.3% (28名)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마을내로 28.0% (21名)이었다.

한편 農外就業者 1人當 平均 就業日數와 所得은 <表 3-60>에서와 같

表 3-59 農外就業 場所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마을내	隣近部落	道內都市	他道都市	서울等 大都市	計
居宅保護	1 (50.0)	1 (50.0)	0 ( - )	0 ( - )	0 ( - )	2 (100.0)
自活保護	5 (20.8)	6 (25.0)	10 (41.7)	1 (4.2)	2 (8.3)	24 (100.0)
醫療扶助	3 (37.5)	1 (12.5)	3 (37.5)	0 ( - )	1 (12.5)	8 (100.0)
零細農	12 (29.3)	9 (22.0)	15 (36.6)	1 (2.4)	4 (9.8)	41 (100.0)
計	21 (28.0)	17 (22.7)	28 (37.3)	2 (2.7)	7 (9.3)	75 (100.0)

表 3-60 1人當平均 農外就業日數와 所得額

區分 家口類型	就業者數	平均 農外 就業日數	平均 農外 就業所得額
居宅保護	2	225.5	112.5
自活保護	24	310.2	184.4
醫療扶助	8	259.4	196.5
零細農	41	290.0	265.1
計	75	287.5	227.1

이 각각 287.5 日과 227.1 萬원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自活保護對象家口에서 平均就業日數가 310.2 日로 가장 높았으나 所得에서는 零細農이 265.1 萬원으로 가장 많았다.

### ③ 自營業

〈表 3-61〉은 調查對象家口 284 戶의 農業以外의 自營業從事를 나타내 주고 있다. 즉 自營業從事家口는 11 戶로 3.9 %에 지나지 않고 있었으며, 自營業種으로는 商業이 5 戶, 行상가구가 1 戶, 방앗간經營 및 其他 가 각각 1 戶씩이다. 自營業의 平均戶當 從事日數는 365.0 日이었고, 이로부터 얻어지는 年間 平均戶當所得은 287.7 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3-61 自營業 從事現況

單位 : 名

區分 家口類型	自營業從事者		일 의 種 類			平均從事 日 數	年平均所得 (萬원)
	家口主	처	商業	행상	방앗간		
居宅保護	1	0		1	0	0	365.0
自活保護	2	1	2	1	0	0	365.0
醫療扶助	1	2	1	2	0	0	365.0
零細農	2	2	2	0	1	1	365.0
計	6	5	5	4	1	1	365.0
							287.7

### 나. 農地賃貸借

#### ① 農地賃貸

調查對象家口 284 戶에서 農地를 賃貸해 주고 있는 家口는 〈表 3-62〉와 같이 모두 11 戶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畦을 賃貸한 5 戶중에는 醫療對象家口가 1 戶이고 나머지 4 戶는 零細農이었다. 한편 田을 賃貸한 6 戶중에는 居宅保護對象家口가 2 戶, 醫療保護對象家口가 3 戶, 零細農이 1 戶이었다.

賃貸理由는 11 戶 중 7 戶 가勞動力의 不足으로 나머지 4 戶 는 家口主의 불건강으로 營農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임대관행은 賃借慣行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으로 자세한 分析은 省略하였다.

## ② 農地賃借

賃借件數를 중심으로 살펴본 農地賃借關係는 <表 3-63>에서와 같이  
畠의 賃借件數는 141 件이었고, 田의 賃借件數는 80 件으로 畠의 賃借件數가 많았다.

表 3-62 農地賃貸 家口數

單位 : 戶

區分 家口類型	調查家 口 數	賃貸家口數			賃貸理由		計
		畠	田	計	勞動力不足	몸이 아파	
居宅保護	29	0	2	2	1	1	2
自活保護	76	0	0	0	0	0	0
醫療扶助	54	1	3	4	2	2	4
零細農	125	4	1	5	4	1	5
計	284	5	6	11	7	4	11

表 3-63 農地賃借 狀況

單位 : 件

區分 家口類型	賃借件數			戶當賃借件數			計
	畠	田	計	畠	田	計	
居宅保護	0	1	1	0	0.03	0.03	
自活保護	47	25	72	0.62	0.33	0.95	
醫療扶助	34	15	49	0.63	0.28	0.90	
零細農	60	39	99	0.48	0.31	0.79	
計	141	80	221	0.50	0.28	0.78	

家口類型別로 보면 居宅保護 對象家口의 경우 畦을 賃借耕作하는 事例는 한 件도 없는 반면 田은 1 件이 있다. 自活保護 對象家口의 경우는 畦을 賃借耕作하는 件數가 47 件인데 비하여 田을 賃借耕作하는 件數는 25 件이었다. 醫療扶助 對象家口와 零細農의 경우는 畦을 賃借耕作하는 件數가 각각 34 件과 60 件이었고 田을 賃借耕作하는 件數는 15 件과 39 件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戶當 賃借耕作 件數는 自活保護對象 家口가 0.95 件으로 零細農의 0.7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傾向은 零細農이나 自活保護家口나 勞動力의 保有狀態는 비슷하지만 零細農의 農地所有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賃借耕作 可能性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賃借面積規模別 賃借件數는 <表 3-64>와 같이 畦의 경우 800坪以上이 51.8%인데 비하여 400坪 以下은 17.0%로 田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면을 보였다. 이와같이 賃借件當 面積이 比較的 많은 것은 地主가 所有耕地의 전부를 한 사람의 賃借人에게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地主와의 關係는 부모·형제등 인척관계에 있는 比率이 24.9%이었고,他人이 42.1%이었다. 한편 문중의 比率이 16.3%로 比較的 높게 나타났으며 洞畠인 경우와 國公有地도 각각 4.1%이었다. 특히 친척을 비롯한 門中의 農地가 賃借되고 있는 比率이 比較的 높은 것은 賃借人們이 低所得層이기 때문에 이들의 生計安定에 도움을 주기 위한 血緣的 유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洞畠을 賃借하는 경우도

表 3-64 賃借面積別 賃借件數

單位 : 件, %

地目 區分	~ 400坪	400~600	600~800	800 ~	計
畠	24 (17.0)	27 (19.1)	17 (12.1)	73 (51.8)	141 (100.0)
田	46 (57.5)	15 (18.8)	5 (6.3)	14 (17.5)	80 (100.0)
計	70 (31.7)	42 (19.0)	17 (7.7)	87 (39.4)	221 (100.0)

이들이 低所得層이라는 점을勘案한 마을共同體의 배려로 볼 수 있다.이는 전통적으로 마을이 生活共同體로서 그 성원의 生計를 보장하는 社會保障的 機能이 아직도 殘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을의 機能은 특히 低所得層의 地域社會에의 統合을 提高시킴으로써 이들의 離農을 抑制하는데 큰 요인으로 作用하고 있다(表 3-65).

地主의 職業은 <表 3-66>에서와 같이 農業이 39.9%로 가장 많았고 商業도 23.6%나 되었으며 公務員과 會社員의 比率도 20.3%나 되었다.

한편 地主의 居住地에 있어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大都市가 31.1%였고 其他 中小都市의 比率도 20.9%가 됨으로써 都市居

表 3-65 地主와 賃借人의 關係

單位 : 件, %

區分 地目	부모형제	친척	문중	동답	타인	국공유지	無應答	計
番	9 (6.4)	30 (21.3)	21 (14.9)	7 (5.0)	59 (41.8)	5 (3.5)	10 (7.1)	141 (100.0)
田	4 (5.0)	12 (15.0)	15 (18.8)	2 (2.5)	34 (42.5)	4 (5.0)	11 (13.8)	80 (100.0)
計	13 (5.9)	42 (19.0)	36 (16.3)	9 (4.1)	93 (42.1)	9 (4.1)	21 (9.5)	221 (100.0)

表 3-66 地主의 職業 및 居住地

單位 : 件, %

區分 地目	地主의 職業							地主의 居住地				
	農業	商業	公務員	會社員	民勞動	其他	無職	計	大都市	中小都市	農村	計
番	36 (36.7)	25 (25.5)	16 (16.3)	5 (5.1)	6 (6.1)	4 (4.1)	6 (5.1)	98 (100.0)	34 (34.7)	22 (22.4)	42 (42.9)	98 (100.0)
田	23 (46.0)	10 (20.0)	5 (10.0)	4 (8.0)	2 (4.0)	1 (2.0)	5 (10.0)	50 (100.0)	12 (24.0)	9 (18.0)	29 (58.0)	50 (100.0)
計	59 (39.9)	35 (23.6)	21 (14.2)	9 (6.1)	8 (5.4)	5 (3.4)	11 (7.4)	148 (100.0)	46 (31.1)	31 (20.9)	61 (41.2)	148 (100.0)

住 不在地主의 比率이 52.0 %나 되었다. 이와 같이 都市居住 不在地主가 많은 것은 이들이 農村에서 移住한 不在地主인지 아니면 投機를 目的으로 農村地域에 農地를 購入한 原都市居住 地主인지에 대한 규명이 선 행되어야 하겠지만 農業發展에 있어 저해요인임에는 틀림없다.

賃借理由로는 生計維持 때문이 전체의 51.1 %를 차지하였고, 遊休勞動力を 活用하기 위해서도 7.2 %나 되었다. 한편 지주의 권유와 地主의 農場管理의 덧가로 賃借하는 比率도 10.4 %인 것으로 나타나(表 3-67) 農地賃借의 성격이 複雜多樣함을 보여주고 있다.

賃借料의 決定方法은 收穫後에 收穫量(부산물 제외)을 地主와 耕作者가 반분하는 打租法(並作)이 전체의 36.7 %로 가장 높았으며, 收穫量에 關係없이 미리 정해진 賃借料를 納付하는 定租法이 31.2 %이었다. 定租法에도 賃借料를 收穫前에 納付하는 先納정조법과 收穫後에 納付하는 後納정조법으로 區分되어 實行되고 있었으며, 이 둘의 比率은 각각 10.4 %와 20.8 %로 後納정조법이 약간 많았다. 그러나 後納 정조법의 경우에는 先納정조법을 基準으로 한 賃借料에 年 2 할의 利子를 加산하여 納付하기 때문에 先納정조법과 賃借料支拂額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또한 賃借料 決定方法으로 祭需準備를 해주는 경우가 16.3 %나 되었는데, 이러한 賃借料決定方法은 주로 位土를 賃借하는 경우에 適用되고

表 3-67 農地賃借理由

單位 : 件, %

區分 地目	生計維持 契食糧自給 活用	勞動力 地主 권유	賃債 清算	마을에서 생각해줘	집 관리	其他	無應答	計	
畜	82 (58.2)	10 (7.1)	12 (8.5)	4 (2.8)	4 (2.8)	2 (1.4)	10 (7.1)	17 (12.1)	141 (100.0)
田	31 (38.8)	6 (7.5)	8 (10.0)	1 (1.3)	2 (2.5)	1 (1.3)	7 (8.8)	14 (17.5)	80 (100.0)
計	113 (51.1)	16 (7.2)	20 (9.0)	5 (2.3)	6 (2.7)	3 (1.4)	17 (7.7)	31 (14.0)	221 (100.0)

있는 것이다. 그 외에 無料로 賃借하는 경우는 地主의 農場管理 및 洞畠을 賃借할 때 이었다(表 3-68) .

賃借料納付는 39.8 %가 白米로, 13.6 %가 離하고 있고 現金으로 納付하는 경우도 16.3 %나 되고 있다. 現金納付의 경우도 대개는 白米의 시세가격을 基準으로 定하고 있으며, 國公有地의 경우 公納金으로 現金納付하고 있다(表 3-69) .

白米로 환산한 賃借料納付規模別 賃借件數는 田畠을 합쳐 2 叱 以下가 17.6 %이었고 11 叱 以上도 9.5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70) .

賃借期間을 보면 1 年未滿의 賃借地가 45.7 %인 반면 6年以上은 19.0 %이었다. 6 年 以上的 比率이 比較的 높게 나타난 것은 주로 位土 및

表 3-68 賃借料 決定方式

單位 : 件, %

區分 地目	正 조			耕 作 (타조)	祭 需 準備	勞 力 提 供	其 他	無 料	無 應 答	計
	先 納	後 納	小 計							
畠	16 (11.3)	28 (19.9)	44 (31.2)	60 (42.6)	15 (10.6)	0 ( - )	5 (3.5)	7 (5.0)	10 (7.1)	141 (100.0)
田	7 ( 8.8)	18 (22.5)	25 (31.3)	21 (26.3)	15 (18.8)	1 (1.3)	4 (5.0)	3 (3.8)	11 (13.8)	80 (100.0)
計	23 (10.4)	46 (20.8)	69 (31.2)	81 (36.7)	30 (13.5)	1 (0.5)	9 (4.1)	10 (4.5)	21 (9.5)	221 (100.0)

表 3-69 賃借料 支拂形態

單位 : 件, %

區分 地目	백 미	벼	田穀物	現 金	其 他	無 應 答	計
畠	70 (49.6)	25 (17.7)	0 ( - )	16 (11.3)	1 (0.7)	29 (20.6)	141 (100.0)
田	17 (21.3)	5 ( 6.3)	1 (1.3)	20 (25.0)	11 (13.8)	26 (32.5)	80 (100.0)
計	87 (39.4)	30 (13.6)	1 (0.5)	36 (16.3)	12 ( 5.4)	55 (24.9)	221 (100.0)

門中畠의 貸借때문이다 (表 3-71) .

賃借地의 主要經營費의 負擔內容에서는 農地稅는 대체로 地主가 負擔하는 傾向이 많았으나 貸借人이 負擔하는 比率도 23.5%나 되었다. 農地稅를 貸借人이 負擔하는 경우는 대개가 不在地主의 農地를 貸借하는 데서 연유된 결과이다. 한편 種子代와 肥料, 農藥 및 水稅의 경우는 貸借人の 負擔이 대부분이었다 (表 3-72) .

表 3 - 70 貸借料 納付規模別 貸借件數

單位 : 件, %

地目 \ 區分	1~2畠	3~4	5~6	7~8	9~10	11以上	無應答	計
畠	21 (14.9)	25 (17.7)	27 (19.1)	13 (9.2)	11 (7.8)	21 (14.9)	23 (16.3)	141 (100.0)
田	18 (22.5)	7 ( 8.7)	5 ( 6.3)	1 (1.3)	0 ( - )	0 ( - )	49 (61.3)	80 (100.0)
計	39 (17.6)	32 (14.5)	32 (14.5)	14 (6.3)	11 (5.0)	21 (9.5)	72 (32.6)	221 (100.0)

表 3 - 71 貸借期間別 貸借件數

單位 : 件, %

地目 \ 區分	1 年	2~3年	4~5年	6年以上	無應答	計
畠	69 (48.9)	29 (20.6)	6 (4.3)	26 (18.4)	11 ( 7.8)	141 (100.0)
田	32 (40.0)	11 (13.8)	1 (1.3)	16 (20.0)	20 (25.0)	80 (100.0)
計	101 (45.7)	40 (18.1)	7 (3.2)	42 (19.0)	31 (14.0)	221 (100.0)

表 3-72 主要 經營費의 負擔內譯

單位：件數

區 分	畜				田		
	農地稅	種子代	肥料·農藥	水 稅	農地稅	種子代	肥料·農藥
地主全額	74 ( 52.5)	3 ( 2.1)	3 ( 2.1)	15 (10.6)	31 (38.8)	0 (-)	0 (-)
반 반	2 ( 1.4)	1 ( 0.7)	1 ( 0.7)	6 ( 4.3)	1 ( 1.3)	0 (-)	0 (-)
作人全額	35 ( 24.8)	129 (91.5)	129 (91.5)	72 (51.1)	17 (21.3)	62 (77.5)	62 (77.5)
免 稅	12 ( 8.5)	0 ( - )	0 ( - )	10 ( 7.1)	2 ( 2.5)	0 (-)	0 (-)
無 應 答	8 ( 5.7)	8 ( 5.7)	8 ( 5.7)	8 ( 5.7)	0 ( - )	18 (22.5)	18 (22.5)
計	141 (100.0)	141 (100.0)	141 (100.0)	141 (100.0)	80 (100.0)	80 (100.0)	80 (100.0)

## 4. 健康과 醫療

### 가. 家口員의 健康程度

〈表 3-73〉은 同居家口員 1,038 名 가운데 無應答者 12 名을 除外한 1,026 名의 健康狀態를 나타내고 있다. 全體家口員 가운데 건강한 家口員의 比率은 75.5 % ( 775 名)이고 보통인 比率은 8.0 % ( 82 名)인데 비하여 不健康한 家口員의 比率은 16.5 % ( 169 名)이다. 이를 家口主와 家口員으로 區分하여 보면 家口主 가운데 健康狀態가 양호한 比率은 55.9 %이고, 同居家口員은 83.0 %가 건강이 양호함으로써 家口主 보다 同居家口員의 健康狀態가 양호하였다. 한편 不健康한 比率을 보면 家口主는 284 名 가운데 30.3 % ( 86 名)가, 同居家口員은 742 名 가운데 11.2 % ( 83 名)가 不健康한 것으로 나타나 相對的으로 家口主의 健康狀態가 家

表 3-73 家口員의 健康狀態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家口員數 (A)			健 康 程 度 別									合 計	
	家口主	家口員	計	健 康			普 通			不 健 康				
				家口主	家口員	小 計	家口主	家口員	小 計	家口主	家口員	小 計		
居宅保護	29	39	68	7 (10.3)	27 (39.7)	34 (50.0)	5 (7.4)	3 (4.4)	8 (11.8)	17 (25.0)	9 (13.2)	26 (38.2)	68 (100.0)	
自活保護	76	234	310	43 (13.9)	193 (62.3)	236 (76.1)	8 (2.6)	10 (3.2)	18 (5.8)	23 (7.4)	33 (10.6)	56 (18.0)	310 (100.0)	
醫療扶助	54	143	197	26 (13.2)	117 (59.4)	143 (72.6)	9 (4.6)	13 (6.6)	22 (11.2)	19 (9.6)	13 (6.6)	32 (16.2)	197 (100.0)	
零細農	125	326	451	83 (18.4)	279 (61.9)	362 (80.3)	15 (3.3)	19 (4.2)	34 (7.5)	27 (6.0)	28 (6.2)	55 (12.2)	451 (100.0)	
計	284	742	1,026 <sup>1)</sup>	159 (15.5)	616 (60.0)	775 (75.5)	37 (3.6)	45 (4.4)	82 (8.0)	86 (8.4)	83 (8.1)	169 (16.5)	1,026 <sup>1)</sup> (100.0)	

1) 無應答者 12 명 제외

口員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건강한 家口員 169 名 가운데 50.9% ( 86 名 ) 가 家口主로 나타나 家口主의 건강상태가 나빠는데 이러한 것은 家口主 가운데는 연로한 사람이 많은데서 發生하는 老患者가 많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나. 持病 및 瘡疾病患者와 治療方法

調查對象 家口員 1,026 名 가운데 지병 및 고질병환자는 <表 3-74>에서와 같이 전체의 13.6% ( 140 名 ) 로 戶當平均 0.49 人으로 나타났다. 140 名의 지병 및 고질병환자중 家口主는 47.1%인 66 名으로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家計를 擔當하는 主體라는 점에서 큰 問題點이 되고 있다.

또한 지병 및 고질병환자가 불건강한 者의 82.8%를 차하고 있어 불건강한 사람의 大多數가 크고 작은 지병의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分布를 보면 居宅保護對象 家口主의 경우 37.9%가 지병 및 고질병환자로써 自活保護 및 醫療扶助 對象家口主보다 건강상태가 열악한 狀態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家口員에 있어서도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 가장 不利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3 - 74 持病 및 瘡疾病 患者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家口員數 (A)			不健康者數 (B)			지병 및 고질병 환자수 (C)			지병 및 고질병 患者率						
	家口主	家口員	計	家口主	家口員	計	家口主	家口員	計	A/C	B/C	家口主	家口員	計	家口主	家口員
居宅保護	29	39	68	17	9	26	11	7	18	37.9	17.9	26.5	64.7	77.8	69.2	
自活保護	76	234	310	23	33	56	19	30	49	25.0	12.8	15.8	82.6	90.9	87.5	
醫療扶助	54	143	197	19	13	32	16	11	27	29.6	7.7	13.7	84.2	84.6	84.4	
零細農	125	326	451	27	28	55	20	26	46	16.0	8.0	10.2	74.1	92.9	83.6	
計	284	742	1,026	86	83	169	66	74	140	23.2	10.0	13.6	76.7	85.1	82.8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家口主와 關係別 分布는 <表 3-75>와 같이 本人과 妻가 각각 47.1%와 33.6%로 전체의 80.7%를 차지하고 있고 子女 및 父母가 지병 및 고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比率은 16.5%에 지나지 않고 있다. 특히 調査對象 家口가 農村의 低所得層인 점을勘案할 때 經濟活動의 주체인 家口主나 그들의 妻의 건강상태가 좋지못한 점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年齡別 分布는 <表 3-76>에서와 같이 50세이상이 전체의 67.9%로 연로할수록 지병 및 고질병으로 고생하는 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병 및 고질병의 이환율과 나이와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병 및 고질병에 罹患될 可能性이 많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老人病이라던지 또는 老衰에 따른 自然的 지병이 그 만큼 빈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年齡分布를 家口類型別로 볼 때 類型別間に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유병기간별 分布는 <表 3-77>에서와 같이 20年以上이 20.7%나 되었고 10年미만인 患者的 比率도 43.5%나 되었다. 또한 家口類型別로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分布를 보면 居宅保護對象

表 3-75 家口主와 關係別 持病 및 痘疾病 患者

單位：名， %

家口類型	區分	本 人	처	자 女	부 모	자 부	손자녀	無應答	計
居宅保護		11 (61.1)	4 (22.2)	2 (11.1)	0	0	1 (5.6)	0	18 (100.0)
自活保護		19 (38.8)	18 (36.7)	5 (10.2)	4 (8.2)	2 (4.1)	0 (2.0)	1 (100.0)	49
醫療扶助		16 (59.3)	5 (18.5)	3 (11.1)	3 (11.1)	0	0 (0.0)	0 (100.0)	27
零細農		20 (43.5)	20 (43.5)	2 (4.3)	4 (8.7)	0	0 (0.0)	0 (100.0)	46
計		66 (47.1)	47 (33.6)	12 (8.6)	11 (7.9)	2 (1.4)	1 (0.7)	1 (0.7)	140 (100.0)

表 3-76 持病 吳 瘡疾病患者의 年齡分布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	計
居宅保護	0 ( - )	1 (5.6)	2 (11.1)	1 (5.6)	3 (16.7)	3 (16.7)	5 (27.8)	3 (16.7)	18 (100.0)
自活保護	1 (2.0)	1 (2.0)	4 (8.2)	3 (6.1)	10 (20.4)	17 (34.7)	6 (12.2)	7 (14.3)	49 (100.0)
醫療扶助	0 ( - )	1 (3.7)	1 (3.7)	2 (7.4)	4 (14.8)	5 (18.5)	9 (33.3)	5 (18.5)	27 (100.0)
零細農	0 ( - )	2 (4.3)	0 ( - )	2 (4.3)	7 (15.2)	9 (19.6)	20 (43.5)	6 (13.0)	46 (100.0)
計	1 (0.7)	5 (3.6)	7 (5.0)	8 (5.7)	24 (17.1)	34 (24.3)	40 (28.6)	21 (15.0)	140 (100.0)

表 3-77 有病期間別 持病 吳 瘡疾病患者 分布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 69年	70~74	75~79	80~84	85~	無應答	計
居宅保護	7 (38.9)	1 (5.6)	2 (11.1)	3 (16.7)	0 ( - )	5 (27.8)	18 (100.0)
自活保護	8 (16.3)	1 (2.0)	3 (6.1)	14 (28.6)	18 (36.7)	5 (10.2)	49 (100.0)
醫療扶助	5 (18.5)	2 (7.4)	4 (14.8)	2 (7.4)	9 (33.3)	5 (18.5)	27 (100.0)
零細農	9 (19.6)	2 (4.3)	8 (17.4)	8 (17.4)	10 (21.7)	9 (19.6)	46 (100.0)
計	29 (20.7)	6 (4.3)	17 (12.1)	27 (19.3)	37 (26.4)	24 (17.1)	140 (100.0)

家口의 경우 20年以上의 有病者 比率이 38.9%로 餘他保護類型보다 가장 높은 반면 10年미만 有病者 比率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活動制限日數別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分布를 보면 <表 3-78>에서와 같이 비록 지병 및 고질병환자지만 年間活動日數에 制限을 받지 않는 者의 比率은 37.1%로 높게 나타난 반면 年間 6個月以上 生業에 從事하지 못하는 患者的 比率도 2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병 및 고질병 患者 1人當 平均活動制限日數도 118日이나 되었다.

病勢程度別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分布는 <表 3-79>에서와 같이 중증과 중등증이 각각 14.3%와 35.7%인데 비하여 경증은 31.4%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보면 醫療扶助對象家口에서 중증환자의 比率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 바, 이는 이러한 患者를勘案하여 醫療扶助의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을 비롯한 地域單位에서 이들 家口를 醫療扶助對象家口로 선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治療方法別 지병 및 고질병환자 分布는 <表 3-80>과 같이 39.3%가 어떤 치료도 받고 있지 않는 반면 60.7%는 치료를 받고 있었다. 치

表 3-78 年間 活動制限日數別 持病 및 痘疾病患者數

單位: 名, %

區分 家口類型	月所得額 인지여부			月 所 得 規 模								月平均 所得額 (萬 원)
	알고 있음	모름	계	15만원 이 하	15-20	20-25	25-30	30-35	35-40	40이상	계	
居宅保護	4 (20.0)	16 (80.0)	20 (100.0)		3 (75.0)	1 (25.0)					4 (100.0)	18.0
自活保護	44 (23.4)	144 (76.6)	188 (100.0)	12 (27.3)	19 (43.2)	4 (9.1)	4 (9.1)	1 (2.3)		4 (9.1)	44 (100.0)	24.9
醫療扶助	21 (15.4)	115 (84.6)	136 (100.0)	3 (14.3)	5 (23.8)	4 (19.0)	4 (19.0)			5 (23.8)	21 (100.0)	27.9
零細農	42 (14.8)	242 (85.2)	284 (100.0)	2 (4.8)	10 (23.8)	7 (16.7)	11 (26.2)	2 (4.8)	1 (2.4)	9 (21.4)	42 (100.0)	29.1
計	111 (17.7)	517 (82.3)	628 (100.0)	17 (15.3)	37 (33.3)	16 (14.4)	19 (17.1)	3 (2.7)	1 (0.9)	18 (16.2)	111 (100.0)	27.0

表 3-79 病勢程度別 持病 및 瘡疾病患者數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중증	중등증	경증	無應答	計
居宅保護	2 (11.1)	6 (33.3)	4 (22.2)	6 (33.3)	18 (100.0)
自活保護	5 (10.2)	18 (36.7)	20 (40.8)	6 (12.2)	49 (100.0)
醫療扶助	9 (33.3)	5 (18.5)	8 (29.6)	5 (18.5)	27 (100.0)
零細農	4 (8.7)	21 (45.7)	12 (26.1)	9 (19.5)	46 (100.0)
計	20 (14.3)	50 (35.7)	44 (31.4)	26 (18.6)	140 (100.0)

表 3-80 治療方法別 持病 및 瘡疾病患者數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치료방법별						参考견담	計
	정기적 통원치료	부정기적 통원치료	약국	민간요법	기타	小計		
居宅保護	5 (27.8)	1 (5.6)	3 (16.7)	0 ( - )	0 ( - )	9 (50.0)	9 (50.0)	18 (100.0)
自活保護	15 (30.6)	6 (12.2)	10 (20.4)	0 ( - )	1 (2.0)	32 (65.3)	17 (34.7)	49 (100.0)
醫療扶助	8 (29.6)	1 (3.7)	5 (18.5)	1 (3.7)	0 ( - )	15 (55.6)	12 (44.4)	27 (100.0)
零細農	3 (6.5)	4 (8.7)	21 (45.7)	1 (2.2)	0 ( - )	29 (63.0)	17 (37.0)	46 (100.0)
計	31 (22.1)	12 (8.6)	39 (27.9)	2 (1.4)	1 (0.7)	85 (60.7)	55 (39.3)	140 (100.0)

료를 받고있는 환자가운데 定期的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比率은 36.5 %인데 비하여 약국(한약방)을 利用하고 있는 比率은 45.9 %로 가장 높았고 민간요법과 其他의 治療方法을 利用하고 있는 比率은 2.1%에 지나지 않았다.

家口類型別 治療處를 보면 居宅保護 및 自活保護와 醫療扶助對象 家口에서는 定期的인 통원치료자가 많은 반면 零細農에서는 藥局利用者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農村醫療保險이 1988 年부터 施行되었지만 零細農層에게는 아직도 既存의 醫療機關의 利用慣行이 作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醫療保險이 正常的으로 運營되고 국민에게 認識되어지는 時期에 가서는 이들의 醫療需要가 病院治療를 크게 增加시키게 될것으로豫想된다.

지병 및 고질병환자의 月治療費別 分布는 <表 3-81>과 같이 51.4 %는 治療費가 들지않고 있었으나 月 10 千원以上의 治療費를 支出하고 있는 患者比率도 32.9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居宅保護對象 家口에서는 治療費가 들지 않는 患者比率이 88.9 %

表 3-81 月治療費別 持病 및 痘疾病患者數

單位：名， %

家口類型 區分	0	1~5 千원	5~10	10천원이상	計
居宅保護	16 (88.9)	0 ( - )	1 ( 5.6 )	1 ( 5.6 )	18 (100.0)
自活保護	26 (53.1)	2 ( 4.1 )	4 ( 8.2 )	17 (34.7)	49 (100.0)
醫療扶助	15 (55.6)	3 (11.1)	3 (11.1)	6 (22.2)	27 (100.0)
零細農	15 (32.6)	4 ( 8.7 )	5 (10.9 )	22 (47.8 )	46 (100.0)
計	72 (51.4)	9 ( 6.4 )	13 ( 9.3 )	46 (32.9)	140 (100.0)

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들 家口에는 醫療保護의 惠澤이 주어짐과 더불어 經濟的 事情으로 治療마저 받지 못하는 患者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다. 罹患者率 및 活動制限日數

調查對象家口 284 戶의 1,026 名을 對象으로 한 2주간의 罹患者數는 <表 3-82>에서와 같이 80 名으로 7.8 %의 罹患者率을 보이고 있었다. 家口類型別로 본 罹患者率은 自活保護對象家口가 9.3 %로 가장 높았으며 零細農은 6.7 %로 가장 낮았다.

한편 家口主와 關係別 2주간의 罹患者는 家口主 本人이 35.0 %, 家口主의 妻가 38.8 %로서 家口主부부가 접유하는 比率이 73.8 %나 되었다

이와같이 家口主 부부의 罹患者率이 높은 것은 이들이 나이도 많은데다 家口經濟의 주체로서 그 만큼 生業活動에의 從事度가 높은 데서 오는 피로로 감기등의 질환에 많이 罹患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罹患者의 병명 및 증상으로는 <表 3-83>과 같이 감기몸살이 33.8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근육통으로 16.3 %, 위장병이 12.5 %이었고 관절염, 기관지가 각각 3.8 %씩이었고 복통(3.8 %), 피부염(2.5%) 등 15개 증상으로構成된 其他가 30.0 %로 나타났다.

또한 와병일수별 罹患者比率은 <表 3-84>와 같이 와병일수가 없는 罹

表 3-82 14日間 罹患者率 및 罹患者數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家口員 數 (A)	2주간 이환자 수 (B)	이환율 (B/A ×100)	이환자와 가구주와의 관계					
				본인	처	子女	父 母	손자녀	計
居宅保護	68	6	8.8	4	2	0	0	0	6
自活保護	310	29	9.4	9	10	7	3	0	29
醫療扶助	197	15	7.6	5	6	3	0	1	15
零細農	451	30	6.7	10	13	4	0	3	30
計	1,026	80	7.8	28	31	14	3	4	80
				(35.0)	(38.8)	(17.5)	(3.8)	(5.0)	(100.0)

表 3-83 14日間 罹患者의 主要病名·症狀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감기몸살	근육통	위장병	관절염	기관지	기타	計
居宅保護	1 (16.7)	1 (16.7)	0 ( - )	0 ( - )	1 (16.7)	3 (50.0)	6 (100.0)
自活保護	9 (31.0)	3 (10.3)	6 (20.7)	0 ( - )	2 (6.9)	9 (31.0)	29 (100.0)
醫療扶助	3 (20.0)	5 (33.3)	3 (20.0)	0 ( - )	0 ( - )	4 (26.7)	15 (100.0)
零細農	14 (46.7)	4 (13.3)	1 ( 3.3)	3 (10.0)	0 ( - )	8 (26.7)	30 (100.0)
計	27 (33.8)	13 (16.3)	10 (12.5)	3 (3.8)	3 (3.8)	24 (30.0)	80 (100.0)

表 3-84 14日間 罹患者의 臥病日數 및 活動制限日數

單位：名，%

區分 家口類型	와 병 일 수 별					活動制限日數別					計
	0	1-2	3-4	5-6	7일이상	0	1-2	3-4	5-6	7일이상	
居宅保護	3 (50.0)	0 ( - )	1 (16.7)	1 (16.7)	1 (16.7)	3 (50.0)	0 ( - )	0 ( - )	0 ( - )	3 (50.0)	6 (100.0)
自活保護	14 (48.3)	2 (6.9)	3 (10.3)	0 ( - )	10 (34.5)	10 (34.5)	2 (6.9)	4 (13.8)	0 ( - )	13 (44.8)	29 (100.0)
醫療扶助	4 (26.7)	2 (13.3)	2 (13.3)	2 (13.3)	5 (33.3)	6 (40.0)	2 (13.3)	3 (20.0)	1 (6.7)	3 (20.0)	15 (100.0)
零細農	12 (40.0)	4 (13.3)	8 (26.7)	3 (10.0)	3 (10.0)	18 (60.0)	5 (16.7)	3 (10.0)	1 (3.3)	3 (10.0)	30 (100.0)
計	33 (41.3)	8 (10.0)	14 (17.5)	6 (7.5)	19 (23.8)	37 (46.3)	9 (11.3)	10 (12.5)	2 (2.5)	22 (27.5)	80 (100.0)

患者의 比率이 41.3 %이었으나 와병일수가 7日以上인 罹患者의 比率도 23.8 %나 되었다. 이러한 傾向은 活動制限日數別 患者分布에서도 나타나 活動制限日數가 없었던 罹患者比率은 46.3 %인 반면 7日以上이었던 罹

患者比率은 27.5 %나 되었다.

14 日間 罹患者들의 治療方法은 <表 3-85>와 같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治療한 比率이 37.5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병의원에서 治療한 方法으로 그 比率은 36.3 %이었다. 또한 보건소를 利用한 比率도 18.8 %나 되고 있으나, 전혀 治療를 받지 못한 罹患者의 比率도 5.0 %에 달하고 있었다.

14 日間 罹患者의 治療費別 分布는 <表 3-86>에서와 같이 33.8 % (27名)는 治療費 負擔이 전혀 없었으나 7千원以上의 治療費를 支出한 患者比率도 37.5 % (30名)나 되었다.

表 3 - 85 14日間 罹患者의 治療方法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약국	보건소	병의원	기타	없음	계
居宅保護	2	1	1	2	0	6
自活保護	6	9	12	0	2	29
醫療扶助	8	0	6	0	1	15
零細農	14	5	10	0	1	30
計	30	15	29	2	4	80
	(37.5)	(18.8)	(36.3)	(2.5)	(5.0)	(100.0)

表 3 - 86 14日間 罹患者의 治療費別 分布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治 療 費 規 模					計
	0	1~2	3~4	5~6	7千원以上	
居宅保護	2	0	1	0	3	6
自活保護	17	2	0	2	8	29
醫療扶助	3	2	3	2	5	15
零細農	5	2	5	4	14	30
計	27	6	9	8	30	80
	(33.8)	(7.5)	(11.3)	(10.0)	(37.5)	(100.0)

## 5. 子女教育과 就業

이미 本 調査資料의 分析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調査對象家口의 經濟的 基盤이 취약하고 家口主의 高齡化와 건강상태가 좋지못한 狀況에서 이들 家口가 生計安定과 나아가 地位向上을 圖謀함에 있어서는 子女의 安定的 職業從事에 의한 經濟的 活動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子女의 安定的 職業從事를 위해서는 그에 相應하는 教育履修가 수반되어져야 한다. 子女教育에는 많은 教育費가 投入되기 때문에 生計維持에도 힘든 農村低所得層의 子女教育費投資는 그 만큼 그들의 生活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勘案할 때 農村低所得層의 子女教育水準은 相對的으로 낮고 그에 따라 子女들의 經濟的 活動도 不安定한 職業從事者가 많을 것으로 期待된다. 이러한 諸般問題點을 補完하고 零細民의 장래의 生計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零細民子女에 대한 教育保護와 職業訓練 및 職業教育을 推進중에 있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調査對象家口의 子女教育履修 및 就業現況에 대한 實態와 子女教育保護와 職業訓練등 零細民 對策의 수혜狀況을 살펴보았다.

### 가. 子女教育履修

〈表 3-87〉은 調査對象家口 284 戶의 同居 및 出他子女와 結婚非同居子女 1,198 名에 대한 教育履修狀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본 子女教育履修 實態는 國卒이 27.0% (324 名)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高卒로 24.8% (297 名)이었고, 中卒이 19.1% (229 名), 大卒이 2.6% (31 名)이었다. 한편 現在 재학중인 子女의 學校水準別分布를 보면 國民學校에 재학중인 子女數가 111 名 (9.3%)이고 中學校 재학자는 87 名 (7.3%), 高等學校 재학자는 76 名 (6.3%)인 반면 大學校에 재학중인 子女數는 10 名 (0.8%)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子女教育履修 實態를 同居子女, 出他子女 및 結婚非同居子女로 區分하여 보면 國卒의 子女數 324 名 가운데 232 名 (71.6%)이 結婚非同居子女이

表 3 - 87 子女教育履修 現況

單位：名，%

家口類型 \ 區 分		無學	國文解讀	國卒	國在	中卒	中在	高卒	高在	大在	大卒	未就學	計
居宅保護	同居子女			5	10	1	4	1	4				25
	出他子女					4		2	1				7
	結婚子女	3		18		1		1			1		24
	小計	3		23	10	6	4	4	5		1		56
自活保護	同居子女	2		12	35	8	40	13	12			6	128
	出他子女			22		30		35	11				98
	結婚子女	1		44		24		15			3		87
	小計	3		78	35	62	40	63	23		3	6	313
醫療扶助	同居子女	2		10	16	8	13	10	10	1	1	4	75
	出他子女	1		16		19		34	2	1	1		74
	結婚子女	1	2	48		16		10			1		78
	小計	4	2	74	16	43	13	54	12	2	3	4	227
零細農	同居子女		1	3	50	9	30	23	24		3	9	152
	出他子女			24		41		75	12	8	6		166
	結婚子女	1		122		68		78			15		284
	小計	1	1	149	50	118	30	176	36	8	24	9	602
合計	同居子女	4	1	30	111	26	87	47	50	1	4	19	380
	出他子女	1		62		94		146	26	9	7		345
	結婚子女	6	2	232		109		104			20		473
總計		11	3	324	111	229	87	297	76	10	31	19	1,198
		(0.9)	(0.3)	(27.0)	(9.3)	(19.1)	(7.3)	(24.8)	(6.3)	(0.8)	(2.6)	(1.6)	(100.0)

었고, 62 名 ( 19.1 % ) 이 出他子女이었으며 30 名 ( 9.3 % ) 이 同居子女이다. 高等學校 教育履修 子女 297 名중에는 出他子女가 49.2 % ( 146 名 ) 이었고 結婚非同居 子女가 35.0 % ( 104 名 ) 이다. 大學校 재학중이거나 大學教育을 履修한 子女 41 名중에는 結婚非同居子女가 20 名이나 되었다.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零細農에서 高等學校以上 履修子女의 比率이 40.5 % ( 244 名 ) 로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傾向은 특히 大學教育 履修子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나. 就業實態

〈表 3-88〉은 각급학교에 在學중인 學生子女와 結婚非同居子女를 除外한 442 名의 子女에 대한 就業實態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442 名의 子女중 技能工이나 生產工程從事者로 就業하고 있는 比率이 30.8% ( 136 名 )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會社員, 公務員, 銀行員과 같은 管理職 事務從事者로서 22.9 % ( 101 名 ) 이었으며 無職者의 比率도 16.7 % ( 74 名 ) 나 되었다. 한편 同居子女와 出他子女의 就業實態를 比較하여 보면 同居子女의 경우 無職狀態에 있는 比率이 42.3 % ( 55 名 ) 로 높은 比重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技能工 및 生產工程從事者의 比率은 11.5 % ( 15 名 ) 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出他子女중 無職者의 比率은 6.1 % ( 19 名 ) 에 지나지 않은 반면 技能工내지 生產工程從事者로 就業하고 있는 比率은 38.8 % ( 121 名 ) 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同居子女중 無職者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것은 이들 家口의 耕地面積이 훨씬 커서 農業에 전념할 수도 없고 또 아직은 農村에 工場이나 農業 以外의 직장이 적어서 農外 就業機會가 적은데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家口類型別로 子女就業實態를 보면 零細農에서의 管理職, 事務從事者로의 就業比率이 높게 나타났다.

表 3-88 子女就業實態

單位：名，%

區 分 家口類型		專門職 技術職	管理職 事務從事者	技能工 生產工程 從事者	販 賣 從事者	運輸的 職 業	單 純 勞務者	農 業	써비스직 從事者	軍 人	其 他	無 職	計
居宅保護	同居子女			1								6	7
	出他子女		4	1							1		6
	小 計	0	4	2							1	6	13
自活保護	同居子女		5	7			3	6	1	1		20	43
	出他子女	1	17	46	1	1	9	1	1	5	2	5	89
	小 計	1	22	53	1	1	12	7	2	6	2	25	132
醫療扶助	同居子女		2	4	1		1	7		3	1	11	30
	出他子女	1	14	27	2	2	4		3	4	1	5	63
	小 計	1	16	31	3	2	5	7	3	7	2	16	93
零細 農	同居子女	1	7	3	1	3	4	7	1	4	1	18	50
	出他子女		52	47	12	8	4		4	16	2	9	154
	小 計	1	59	50	13	11	8	7	5	20	3	27	204
合 計	同居子女	1 (0.8)	14 (10.8)	15 (11.5)	2 (1.5)	3 (2.3)	8 (6.2)	20 (15.4)	2 (1.5)	8 (6.2)	2 (1.5)	55 (42.3)	130 (100.0)
	出他子女	2 (0.6)	87 (27.9)	121 (38.8)	15 (4.8)	11 (3.5)	17 (5.4)	1 (0.3)	8 (2.6)	25 (8.0)	6 (1.9)	19 (6.1)	312 (100.0)
總 計		3 (0.7)	101 (22.9)	136 (30.8)	17 (3.8)	14 (3.2)	25 (5.7)	21 (4.8)	10 (2.3)	33 (7.5)	8 (1.8)	74 (16.7)	442 <sup>b</sup> (100.0)

1) 학생, 미취학 및 결혼비동거자녀 제외

#### 다. 子女職業訓練履修

〈表 3-89〉는 低所得層에게 安定的인 收入源인 職業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貧困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實施하고 있는 職業訓練의 履修程度를 보여주고 있다. 上記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調查對象家口 284 戶에서 職業訓練의 履修惠澤을 받은 家口는 3.9%에 該當하는 11 戶에 지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11 家口에서 職業訓練을 받은 11 名중에서 就業이 보장된 경우는 9 名에 지나지 않았다.

表 3-89 職業訓練履修實態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職業教育·訓練 履修與否			履修後 就業與否		
	있 다	없 다	計	되었 음	안되었 음	計
居宅保護	0 ( - )	29 (100.0)	29 (100.0)	0	0	0
自活保護	3 (3.9)	73 (96.1)	76 (100.0)	3	0	3
醫療扶助	3 (5.6)	51 (94.4)	54 (100.0)	2	1	3
零細農	5 (4.0)	120 (96.0)	125 (100.0)	4	1	5
計	11 (3.9)	273 (96.1)	284 (100.0)	9	2	11

#### 라. 教育保護

低所得層은 學歷, 技術, 經歷不足등의 事由로 安定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로 인해 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勘案하여 就學年齡期에 있는 生活保護對象者에게 社會가 要求하는 최소한의 教育機會를 提供하여 줌으로써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自立, 自活할 수 있도록 學費를 지원해주고 있는 教育保護를 實施하고 있다.

이러한 教育保護의 수혜가 어느 정도 미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 <表 3-90>이다. 上記表에 의하면 調査對象 284 戶중에서 現在 子女學費를 支援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었던 家口數는 21.1% ( 60 戶) 이었다.

이와같이 수혜받은 家口比率이 낮은 것은 現在 教育保護가 주어지는 對象 즉 中學校나 또는 實業高校에 在學中인 子女가 없는 家口數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教育保護의 수혜인원을 基準으로 보면 1名이 43 戶, 2名이 10 戶, 3名이 7 戶로써 모두 84 名이 수혜를 받음으로써 戶當平均 1.4 名이었다.

教育保護의 도움정도에 있어서는 60 戶중 41 戶 ( 68.3 % ) 가 매우 도움이 되며, 나머지 19 戶 ( 31.7 % ) 도 약간도움이 된다고 應答함으로써 子女學費支援이 農村低所得層의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教育保護는 그 支援範圍의 擴大에 대한 要求가 있었는데 그 內容을 보면 인문고교는 물론 大學까지도 教育保護의 惠澤을 주어야 한다는 應答者가 60 名중 46 名 ( 76.7 % ) 이었다.

表 3 - 90 教育保護 受惠實態

單位 : 名, %

區分 家口類型	子女學費補助與否			수 혜 人 員 數				子女學費 도움與否			子女教育費 擴大範圍			
	받음	안받음	計	1名	2名	3名	計	매우 도움	약간 도움	計	현행 대로	인문고 까지	大學 까지	計
居宅保護	7 (24.1)	22 (75.9)	29 (100.0)	2	3	2	7	7	0	7	1	6	0	7
自活保護	39 (51.3)	37 (48.7)	76 (100.0)	31	3	5	39	27	12	39	10	24	5	39
醫療扶助	9 (16.6)	45 (83.4)	54 (100.0)	7	2	0	9	5	4	9	1	6	2	9
零細農	5 (4.0)	120 (96.0)	125 (100.0)	3	2	0	5	2	3	5	2	2	1	5
計	60 (21.1)	224 (78.9)	284 (100.0)	43	10	7	60	41	19	60	14	38	8	60
				(71.7)	(16.7)	(11.6)	(100.0)	(68.3)	(31.7)	(100.0)	(23.3)	(63.3)	(13.4)	(100.0)

## 6. 所得과 家計

### 가. 農家所得 標本調查

農家所得 및 支出을 짧은 시간 내에 面接調查를 통해 調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調查된다고 하더라도 調查值가 現實을 正確하게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調査의 正確性을 기하기 위해 한 農家調査에 지나치게 많은 時間을 割愛하는 것도 標本數의 確保에 問題가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調査對象 農家중에서 所得 및 支出資料를 比較的 正確하게 구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農家만을 對象으로 所得 및 家計費支出에 대한 調査를 추가로 實施하였다. 때문에 調査過程에서 農家分布에 대해 勘案하기는 하였지만 所得 및 家計費支出 分析에 利用된 農家들의 分布는 標本抽出理論과 正確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것이 이 資料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調査對象 農家の 地域別分布는 <表3-91> 과 같다. 地域別로 보면 다소 편재되어 있으나 地帶別로는 比較的 고르게 分布되었다. 한편 이들 農家の 耕地保有狀況을 보면 <表3-92>와 같다. 平均所有面積은 423坪에 불과하며 賃借面積이 824坪을 차지하고 있어 平均耕作面積은 1,176坪이다. 이것은 農家經濟調查對象 農家중 耕作面積 0.5ha 미만 階層 農家の 平均耕作面積 939坪보다도 200坪 가까이

表 3 - 91 農家所得 調査對象 農家分布

單位 : 戶

地帶 \ 地域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計
도시 근교	4	2	-	1	-	-	-	-	7
평야	3	3	-	-	5	1	-	2	14
중간	-	-	2	2	1	3	4	2	14
산간	2	1	-	-	2	1	1	2	9
計	9	6	2	3	8	5	5	6	44

表 3-92 耕地保有 狀況

單位 : 坪

所有面積	賃貸面積	賃借面積	耕作面積
423	71	824	1,176

많은 것이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 調查에서 對象으로 하고 있는 農家가 農家經濟調查對象農家보다 農業偏向의이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 나. 農家所得 및 支出

調查對象農家들의 農家所得構成을 보면 〈表3-93〉와 같다. 總農家所得은 4,674 千원이며 이중 農業所得이 43.1%, 兼業所得이 3.1%, 事業以外所得은 33.3%이고 移轉所得도 20.5%를 차지하고 있다. 總農家所得 4,674 千원은 耕作面積 0.5 ha 未滿階層農家の 農家所得 6,124 千원의 76.3%에 불과한 實情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耕地面積은 200坪 가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總農家所得이 이렇게 낮은 것은 0.5 ha 未滿階層農家の 경우 農業所得보다는 事業以外所得의 比重이 높은데 비해 本 調查의 對象農家는 農業所得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은데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즉 本 調査의 對象農家選定이 全國平均보다는 農業偏向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3-93〉와 〈表3-94〉를 比較해 보면 本 調査의 對象農家그룹이 農業所得에서만 約 400 千원정도 높을 뿐이며, 兼業所得, 事業以外所得 및 移轉所得部門에서는 0.5 ha 階層農家가 훨씬 높았다. 한편 農家所得階層別 農家分布를 보면 (表3-95), 600 만원이상

表 3-93 農家所得構成

單位 : 원, %

農業所得	兼業所得	事業以外所得	移轉所得	計
2,014,844 (43.1)	143,868 (3.1)	1,556,429 (33.3)	959,168 (20.5)	4,674,309 (100)

表 3 - 94 耕地規模別 農家所得構成

單位：원, %

耕地規模別	農業所得	兼業所得	事業以外所得	移轉所得	計
0.5ha 미만	1,697,997 (27.7)	624,860 (10.2)	2,446,924 (40.0)	1,354,724 (22.1)	6,124,505 (100)
0.5~1.0ha	3,293,158 (48.5)	339,822 (5.0)	1,792,760 (26.4)	1,366,510 (20.1)	6,792,250 (100)
1.0~1.5ha	5,370,191 (66.2)	264,540 (3.3)	1,163,893 (14.4)	1,306,584 (16.1)	8,105,208 (100)
1.5~2.0ha	7,034,870 (72.5)	288,408 (3.0)	891,457 (9.2)	1,488,197 (15.3)	9,702,932 (100)
2.0ha 이상	9,581,931 (77.7)	305,421 (2.5)	782,656 (6.4)	1,649,815 (13.4)	12,319,823 (100)
平 均	4,911,820 (60.4)	354,166 (4.4)	1,458,291 (17.9)	1,405,338 (17.3)	8,129,615 (100)

資料：農林水產部，農家經濟調查 結果報告，1989.

表 3 - 95 農家所得階層別 農家分布

單位：戶,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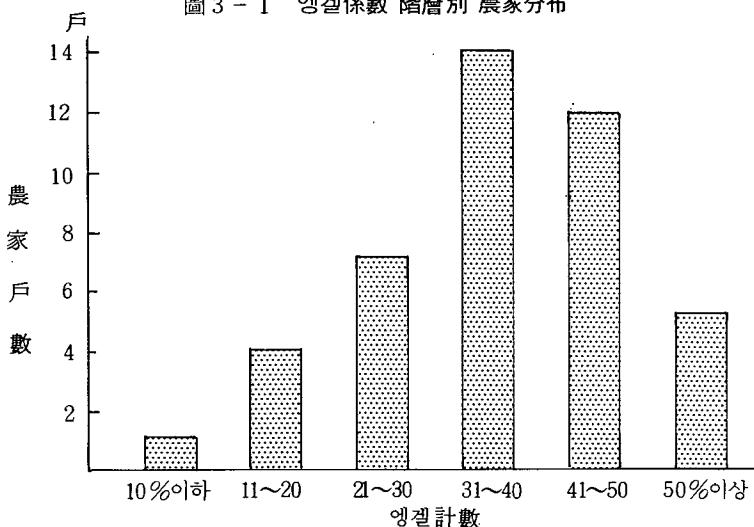
所得階層	200萬원 以下	200~ 300萬원	300~ 400萬원	400~ 500萬원	500~ 600萬원	600萬원 以上	計
農家數	2	3	10	13	6	10	44
比 率	(4.6)	(6.8)	(22.7)	(29.6)	(13.6)	(22.7)	(100)

表 3 - 96 家計費構成

單位：원, %

飲食物費	光熱費	住居費	教育費	被服費	雜 費	計
1,404,021 (32.0)	163,438 (3.7)	443,393 (10.1)	482,783 (11.0)	185,032 (4.2)	1,712,815 (39.0)	4,391,482 (100)

圖 3-1 엉겔係數 階層別 農家分布



農家가 10 戶 있지만 300 萬원 미만 農家도 3 戶나 있어 비슷한 規模의 農家間에도 所得의 偏差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調查對象 農家들의 支出內容을 보면 平均的으로 4,391 千원을 支出하고 있어 農家所得 (4,674 千원) 과 比較해 보면 農家所得家計費充足度는 106.4 %로 農家所得으로 家計費는 充當하고 있으나 거의 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家計費支出의 内容을 살펴 보면 雜費가 39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음식물비가 32.0 %를 차지하고 있다. 즉 엉겔계수가 32 %로써 이들 農家의 生活水準은 상당히 낮은 狀態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단순히 家計所得과 음식비 사이의 關係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家計支出項目과 家計所得과의 사이의 關係까지도 包含시킨 엉겔함수를 利用하여 家計의 生活水準을 把握하고 있기도 하지만 간단히 엉겔계수만을 가지고 家計의 生活水準을 본다면 매우 열악한 狀態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엉겔계수를 階層別로 살펴 보면 엉겔계수 31~40 %의 農家가 14 戶로 가장 많고 41~50 %의 農家도 12 戶나 된다. 이에 반해 11~20 %의 農家가 4 戶나 되며 심지어 10 %이하의 農家도 1 戶 있다. 이렇게 볼 때 農家所得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耕地規模下에서도 農家의 家計費支出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 7. 老齡化와 老後生活對策

零細農의 老齡화와 老後生活에 대한 對策 및 希望하는 現實的 老後生活形態를 調查해 보았다.

調查對象 選定基準이 經營規模와 所得水準이 동일한 작목별 經營者를 對象으로 그중 生活保護對象者와 零細農을 각각 1/2 쇄 選定했음에도 應答者의 年齡別 分布는 60 歲以上이 48.6 %나 된다. 그중 70 歲 以上은 16.6 %이고 젊은층인 40 歲미만은 17.4 %밖에 안된다. 이것은 現在의 農村人口 高齡化 現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특히 農業經營主의 年齡分佈를 잘 나타내고 있다.

한편 調查農家의 家族構成員까지를 包含하는 연령구성을 보면 60 歲이 상은 22.9 %이며 學齡層이 大部分인 19 歲未滿이 34.8 %나 되고 있어 별로 특이한 現狀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1988 年度 農村人口統計에 따른 60 歲이상 人口 16.9 % 보다 6 %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20 歲미만 인구 35.4 % 보다는 0.6 % 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는 1988 年度 統計調查時點과 본연구 調查時點인 1 年사이에 老齡化速度가 크게 增加했던가 아니면 零細農이 一般農家보다 老齡者 층에 속한다는 결론이다. 零細農의 大部分은 老齡者層으로 勞動能力이 不足한 경우가 大部分이며 특히 農業經營主의 老齡은 貧困의 原因에 상당한 比重을 影響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零細農들의 老後生活問題에 있어서 現在 어느정도 마음속에 決定된 의지자나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70 % 정도 되는데 그들이 老後生活을 의지하려고 하는 후손들은 大部分이 장남으로 全體 應答者の 91.5 %였다.(表 3-98).

이러한 傾向은 우리나라의 傳統的 家族制度인 장남의 호주상속과 父母 모시기 風俗을 강하게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重要한 것은 이들 零細農의 경우 장남이라고 해도 農業을 물려줄만한 근거가 없고 農地나 財產이 不足하여 農業的相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長男에게 의존하려는

表 3-97 老後生活依支者 有無

응답	응답 수	비율
있 다	165	69.9
없 다	33	14.0
미정	38	16.1
계	236 <sup>1)</sup>	100.0

1) 無應答者 48명은 제외

表 3-98 老後生活依支者와 關係

관계	빈도 수	비율
장남	151	91.5
차남이하	10	6.1
딸	1	0.6
손자녀	2	1.2
무응답	1	0.6
계	165	100.0

많은 應答者들이 내심 苦悶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려줄만한 財產이나 農土라도 있을 경우는 떳떳하지만 農業勞動이나 소작으로 生活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長男이건 차남이건 子女에게 의존하려는 자체가 무리하고 덧없음을 고민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調査結果도 總 284명중 겨우 165명만이 老後生活을 의지할 子女가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現狀을 좀더 明確하게 證明하는 것은 그들이 老後를 의지할려고 생각하는 사람(자녀들)들의 現在 職業인데 그들 職業중 農業을 하고 있는 사람은 不過 4.8%밖에 안되고 大部分이 會社員과 工員, 學生들이었다. 여기에서 회사원이 많은 것은 大部分의 工場就業者를 會社員으로 應答했기 때문이며 工員과 會社員의 區分을 明確히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表 3-99 老後依支者의 職業

직업 종류별	빈도 수	비율
농업	8	4.8
상업	6	3.6
학생	26	15.8
공무원	2	1.2
회사원	39	23.6
공원	20	12.1
교사	3	1.8
막노동	5	3.0
운전, 운수업	12	7.3
군인	10	6.1
개인사업	3	1.8
기타	11	6.7
무용답	20	12.1
계	165	100.0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工員이 會社員으로 分類된 點을 考慮한다면 大部分의 零細農들은 앞으로 勞動能力이 소실될 경우 子女들을 따라서 農村을 떠나거나 農業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應答者中 불과 4.8%만이 앞으로도 계속 세대를 거친 農業從事가 確實시되며 나머지의 全職業層이 農村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만 하는 職業이 아니므로 離農하거나 脫農하게 될 것이다(表 3-99).

또한 이들 老後生活을 의지하려고 생각하는 후손들의 現在居住地를 살펴본 결과 서울이 가장 많아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24.8%(타도농촌+도내농촌+본동네)로 結局 나머지 75.2%가 都市에 살고 있다는 結論이다. 따라서 지금 現在에도 이들 零細民은 問題가 생기거나 生業能力이 없어지게 되면 大部分 老後의지자를 찾아 都市로 나가야만 한다는 結論이 된다(表 3-100).

老後生活을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老後를 어디에

表 3-100 老後依支者의 現在居住地

현 거 주 지	빈 도 수	비 율
서 울	40	24.3
5 대 도 시	11	6.7
도 내 도 시	8	4.8
도 내 농 촌	8	4.8
타 도 도 시	14	8.5
타 도 농 촌	4	2.4
본 동 네	29	17.6
무응답, 기타	51	30.9
계	165	100.0

※ 5대도시 :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시임.

서 보낼 생각인가를 물어본結果 現居住地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70%정도이고 양노원을 가겠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와같은 경향은 이미老人이된應答者들이 시대의 흐름과 빠르고複雜한社會變化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지금의 거주지에서 계속 있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가진財產도 별로 없고勞動能力도不足하기 때문에 다른地域으로 옮긴다는 것自體가危險性을內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表 3-101).

表 3-101 老後依支者가 없는境遇 老後生活處

노후생활 근거지	응답 수	비율
양 노 원	0	-
친척, 친지와 함께	0	-
현거주지에서	23	69.7
미 정	4	12.1
기 타	0	-
무 응답	6	18.2
계	33	100.0

그런데 구체적으로 質問을 던져서 이들 農民들에게 양로원이나 老人收容施設에 收容시켜 드리도록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收容施設에 들어가는 것을 찬성하는 분이 15.1%로 앞에서의 質問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實質的으로 이들 零細農의 經營主들이 農村에 그대로 살고 싶지만 老後에 子女들에게 의지하게 될 경우 農村을 떠나지 않고는 안될 것이라는 結論을 보이고 있는 것과 同一한 傾向이며 양로원이나 양로시설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老後에 이들 施設에서 收容해 준다면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는 零細農들은 어쩔수 없이 이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農村에도 양로원이나 老人收容施設을 만들어야 할 必要성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結果는 위에서와 같지 않게 必要하다는 사람이 41.6%나 되었다. 이것은 老人們이 農村을 떠나기 싫어 하며 특히 그 地域에 老人施設이 생긴다면 그곳에 들어가 수시로 동네사람이나 이웃들을 만날 수도 있도록 할 경우

表 3 - 102 老後에 養老院 ·老人收容施設에 收容希望

구 분 별	응 답 수	비 율
찬 성	39	15.1
반 대	160	62.0
미 정	59	22.9
계	258	100.0

\* 주 : 무응답자 26 명은 제외

表 3 - 103 農村에 養老院과 老人收容施設의 必要性

구 分	응 답 수	비 율
있 다	109	41.6
없 다	48	18.3
모 르 겠 다	105	40.1
계	262	100.0

\* 무응답자 22 명은 제외

즉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老人施設에 들어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政府가 計劃하고 있는 양로원시설의 都市集中이나 大型化計劃에 정반대되는 結論이므로 農村現地中心의 小型 양로시설계획이 考慮되어야 할 점이다.

農村零細民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老後對策은 결국 어떤 方法으로 老後生計를 維持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質問에서는 역시 대부분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또는 그들에게 의지해서 살겠다는 생각이 있다 ( 52.9 % ). 그외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農事일을 계속하면서 ( 25 % ) 能力이 다할 때까지 살겠다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그래도 아직 勞動能力이 있거나 農地基盤이 있는 경우이고 아니면 의지할 子女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農事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年金을 받아 살아가겠다는 경우는 ( 2.9 % ) 特殊한 경우로서 전직 公務員이었던 사람과 工場에서 事故로 障碍年金을 받고 있는 사람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表 3 - 104 老後의 生計維持方法

방법별	응답수	비율
농사일	69	25.0
장사(상업)	6	2.2
저축과 재산처분	6	2.2
연금	8	2.9
자식들의 도움으로	146	52.9
정부 보조로	2	0.7
기타방법	39	14.2
계	276	100.0

\* 무응답자 8명은 제외

## 8. 社會參與와 社會心理

### 가. 社會的 參與

一般的으로 零細農은 村落의 公共問題에 관심이 적고 오직 自己家族의 生活걱정만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과의 協同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要因이 自然的으로 마을사람들로부터 社會的 고립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본 調查對象의 零細農家口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本調查의 對象者 284名중에 마을내 組織 및 團體에 參與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40.1%나 되고 있고 마을의 組織 및 團體에 참여하고 있는 者의 比率은 同窓會가 6.0%, 종친회가 23.2%에 지나지 않았다(表 3-105).

이러한 경향은 韓國農村에서 社會的 協同의 매개가 되는 각종 계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위친계의 加入率은 14.4%, 친목계는 16.2%로 그래도 加入者가 있는 편이나 혼계 및 식리계의 加入率은 2.5%와 0.4%로 극히 저조하였다(表 3-106).

表 3-105 組織 및 團體加入 有無

단위 : 명, %

구 분	마을내조직	마을밖 조직 및 단체		
		동 칭 회	종 친 회	농민단체
없 다	114 (40.1)	267 (94.0)	218 (76.8)	281 (98.9)
	170 (59.9)	17 (6.0)	66 (23.2)	3 (1.1)
계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表 3 - 106 各種契 加入與否

구 분	위친계	친목계	혼인계	식리계	단위 : 명, %
					기타계
非加入	243 (85.6)	238 (83.8)	277 (97.5)	283 (99.6)	252 (88.7)
	41 (14.4)	46 (16.2)	7 (2.5)	1 (0.4)	32 (11.3)
計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284 (100.0)

表 3 - 107 친한 친구 有無

구 분	빈 도	구 성 비
있 다	81	28.5
없 다	203	71.5
계	284	100.0

친한 사람끼리 모여 인보적 상부상조와 협동을 유지하는 계활동의 저조는 자연히 친한 친구를 가질 수 없는 要因이 되고 있어 零細農中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어려운 일을 의논하는 등 社會的 유대를 緊密히 할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의 比率도 71.5%나 되었다(表3-107)

#### 나. 職業移動에 대한 热望

調査對象家口가 農村地域에 거주하는 低所得層이라는 점을勘案하여 그들의 職業移動에 대한 热望度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職業移動에 대한 研究는 研究對象者에게 주어지는 就業機會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점과 研究對象者들이 職業을 移動할 의사가 있느냐

表 3 - 108 職業熱望水準

단위 : %

조사문항	가구유형	거 택 보 호			자 환 노 호			의 교 부 조			영 세 농			합 계		
		하겠다	미 정	안 함	하겠다	미 :	안 함	하겠다	미 정	안 함	하겠다	미 정	안 함	겠다	미 정	안 함
지급보다 2배로	정치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일인 경우	27.3	40.9	31.8	48.0	9.6	42.4	40.4	13.5	46.1	37.4	8.1	54.5	40.0	12.2	47.8
더 많 수 있는 인	종교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일인 경우	27.3	45.5	27.2	52.1	8.2	39.7	44.2	13.5	42.3	39.8	6.5	53.7	43.0	11.5	45.6
이 있 지 만 그 인의	가족들이 마음에서 밀리 떠나야 하는 일인 경우	27.3	45.5	27.2	50.7	6.9	42.4	46.2	11.5	42.3	32.5	9.8	57.7	39.6	12.2	48.2
	밖에만 일을 해야하는 일인 경우	22.7	45.5	31.8	46.6	8.2	45.2	48.1	11.5	40.4	27.6	8.9	63.4	36.3	12.2	51.5
	여가만 가질 수 없는 일인 경우	27.3	40.9	31.8	50.7	8.2	41.1	51.9	9.6	38.5	34.1	7.3	58.6	41.5	10.7	47.8
	자녀교육에 지장이 있는 일인 경우	13.6	40.9	45.5	16.4	6.9	76.7	15.4	17.3	67.3	8.1	11.4	80.5	12.2	13.7	74.1
	지급보다 더 고되게 일을 해야 하는 일인 경우	31.8	45.5	22.7	57.5	6.9	35.6	57.7	9.6	32.7	36.6	8.9	54.5	45.9	11.5	46.6

하는 두가지 側面에서 규명되어져야 하지만 本 調査에서는 農村居住 低所得層의 家口主가 그들의 社會的・經濟的 地位를 改善하기 위한 手段으로 職業移動을 어느 정도 热望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쳤으며 그 結果들은 다음과 같다 (表 3-108) .

① “지금보다 2배로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政治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에 從事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質問하였다. 이에 대한 應答結果는 하겠다고 肯定的 反應을 보인 應答比率은 40.0%인데 比하여 하지 않겠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應答比率은 47.8%로서 7.8%나 더 높게 나타났다.

家口類型別로 應答結果를 比較하여 보면 自活保護對象家口에서 肯定的 應答比率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 水準은 5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거액보호대상가구의 경우 肯定的 應答比率은 2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應答結果는 政治社會的 분위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低所得層이란 점을勘案할 때 의외라고 볼 수 있다.

② “지금보다 2배로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종교에 대해서 아무말도 못하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에 從事할 생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質問하였다. 이에 대한 應答結果는 從事하겠다고 肯定的 應答을 한 比率은 43.0%인데 比하여 從事하지 않겠다고 否定的 반응을 보인 比率이 45.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應答結果를 家口類型別로 比較하여 보면 自活保護對象家口에서의 肯定的 應答比率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거액보호대상 가구의 응답비율은 27.3%로 가장 낮았으며, 의료부조대상 및 零細農의 應答比率은 각각 44.2%와 39.8%로 중간적 범위에 속하였다.

이와같은 應答結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家口主中에 宗教生活을 하지 않는 자의 比率이 74.3%나 되고 있다는 점을勘案할 때 宗教的 구속이 직업이동의 热望水準에 크게 作用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나 실제 應答結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지금보다 2배로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할 경우 家

族들이 마을에서 멀리 떠나야한다고 할 경우” 그 일에 종사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質問하였다. 이에 대한 應答結果는 종사하겠다고 肯定的 應答을 한 比率은 39.6%인데 비하여 종사하지 않겠다고 부정적 反應을 보인 比率은 48.2%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應答結果를 가구유형별로 比較하여 보면 自活保護對象家口에서만 肯定的 應答比率이 50.7%로써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을 뿐이고 거액보호대상가구의 應答比率은 가장 낮은 27.3%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應答結果는 비록 現在보다 收入은 2배로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資產의 보유액이 극히 적어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生活을 위한 住宅의 確保 등에 自信을 갖지 못한데서 연유된 結果로 보여진다.

(4) “지금보다 2배로 더 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밤에만 하는 일일 경우” 그 일에 從事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質問하였다. 이에 대한 應答結果는 從事하겠다고 肯定的 應答을 한 比率은 36.3%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從事하지 않겠다고 否定的 反應을 보인 應答比率은 51.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應答內容을 家口類型別로 살펴보면 의료부조대상가구에서 肯定的 應答比率이 48.1%로 가장 높았지만 그 水準은 50%에 未達하였고,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의 肯定的 應答比率은 2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零細農과 自活保護對象家口의 肯定的 應答比率은 각각 27.6%와 46.6%로서 零細農은 居宅保護對象家口에 그리고 自活保護對象家口는 醫療扶助對象家口에 편향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應答結果는 家口主들의 平均年齡이 57.9 歲인 것처럼 現實의 으로 밤에 일할 수 있는 身體的 條件이 결여된데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금보다 2배로 더 별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여가를 가질 수 없는 일일 경우” 그 일에 종사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應答結果는 다음과 같다. 즉 餘暇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배의 收入만 올릴 수 있다면 그 일에 從事하겠다고 肯定的 반응을 한 應答比率은 41.5%

%인 반면 하지 않겠다고 否定的 반응을 보인 應答比率은 47.8 %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家口類型別로 比較하면 醫療扶助對象家口와 自活保護對象家口의 應答比率은 각각 51.9 %와 50.7 %로 50 %水準을 넘고 있으나 居宅保護對象家口의 應答比率은 27.3 %로 가장 낮았고, 零細農의 경우에도 肯定的 應答比率은 거택보호대상가구보다는 높았으나 의료 및 自活保護對象家口보다는 훨씬 낮은 34.1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應答結果는 밤에만 일을 해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應答者들이 연로한데다 健康이 좋지 못한 사람이 많아 休息과 餘暇가 없는 일에의 現實的 從事가 어렵다고 생각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⑥ “지금보다 2배로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子女教育에 支障이 있다고 할 경우” 그 일에 從事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應答結果는 다음과 같다. 즉 子女教育에 支障이 있더라도 收入만 2배로 벌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겠다고 肯定的 反應을 보인 應答比率은 12.2 %에 不過한 반면 74.1 %가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를 家口類型別로 比較하면 否定的 반응을 보인 應答比率은 零細農이 80.5 %로 거택보호대상가구의 45.5 %보다도 越等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否定的 應答比率은 自活保護 및 醫療扶助對象家口에서도 比較의 높은 76.7 %와 67.3 %이었다.

이러한 應答結果는 低所得層에서도 子女教育을 重要視하고 있으며, 우선의 經濟的 所得의 向上보다도 子女education을 통한 社會・經濟的 地位 向上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서 연유된 결과로 보여진다.

⑦ “지금보다 2배로 더 벌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지금보다 더 고되게 일을 해야하는 일이라고 할 경우” 그 일에 從事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應答結果는 다음과 같다. 즉 收入만 2배가 된다면 더 고된 일이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肯定的 反應을 보인 應答比率은 45.9 %로 부정적 應答比率 (46.6 %)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를 家口類型別로 비교하면 醫療扶助와 自活保護對象家口에서는 肯定的 應答比率이 각각 57.7 %와 57.5 %로 비슷한 水準을 보이고 있으나

零細農과 居宅保護對象家口의 肯定的 應答比率은 각각 36.6%와 31.8%의 水準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應答結果는 위에서 살펴본 다른 문항보다는 肯定的 應答比率이 높은 편이지만 역시 50%水準을 넘지 못한다. 또한 더 고되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不拘하고 肯定的 應答比率이 높은 것은 이들 低所得層이 肉體的 勞動을 주로 하는 農業從事者가 많아 고된 일을 擔當할 내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調查對象家口들이 수입과 生活程度가 낮은 農村低所得層이라는 점을考慮할 때 이들이 보여준 職業移動에 대한 热望水準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現狀은 이들 零細農家口中에는 高齡者와 健康狀態가 나쁜 자들이 많아 職業轉換을 한다는 것 자체가 現實的으로 어려운데다가 現在의 所得水準이 相對的으로 너무 낮기 때문에 설사 2배의 收入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못사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의욕상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다. 農村工場에의 就業意思

農村 低所得 家口主를 對象으로 앞으로 農外所得增大를 위해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農村工場에의 就業意思에 대한 反應은 <表 3-109>와

表 3-109 農村工場就業意思

單位 : 명, %

區分 家口類型	겠다	미 정	안겠다	計
居宅保護	8 (27.5)	0 (0)	21 (72.4)	29 (100.0)
自活保護	41 (53.9)	1 (1.3)	34 (44.7)	76 (100.0)
醫療扶助	26 (48.1)	2 (3.7)	26 (48.2)	54 (100.0)
零細農	62 (49.6)	6 (4.8)	57 (45.6)	125 (100.0)
計	137 (48.2)	9 (3.2)	138 (48.6)	284 (100.0)

같이 하겠다와 하지 않겠다가 각각 48.2 %에서 48.6 %로 비슷하였다. 이들 應答者들의 經濟的 地位를 고려할 때 農村工場에의 就業意思를 보인比率이 50 %수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이들 중에는 高齡者와 신병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편 家口類型別로 農村工場就業意思를 보면 自活保護對象 家口에서만 53.9 %가 취업의사를 보여 가장 높은 應答率을 보인데 비해 居宅保護對象家口에서는 27.5 %만이 취업의사를 보여 가장 낮았는데 이는 居宅保護對象家口主의 경우 高齡·廢疾등으로 인한 生活無能力者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農村工場就業意思가 있는 137명을 대상으로 農村工場에의 就業可能部門에 대한 應答結果는 <表 3-110>과 같이 76.0 %가 單純勞務職과 경비직에, 14.6 %는 기술·기능직종에, 나머지 2.6 %는 事務職에의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應答結果를 볼 때 農村工場에의 農村低所得 家口主의 雇傭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就業可能職種(部門)에 대한 편향성으로 農村工場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63.5 %가 농사일을 계속하면서 工場就業을 하겠다는 反應

表 3 - 110 農村工場就業時 就業可能部門

單位 : 명, %

區分 家口類型	단순노무직	기술· 기능직	경비	사무직	기타	計
居宅保護	6 (75.0)	2 (25.0)	0 (-)	0 (-)	0 (-)	8 (100.0)
自活保護	25 (61.0)	6 (14.6)	8 (19.5)	2 (4.9)	0 (-)	41 (100.0)
醫療扶助	12 (46.2)	6 (23.1)	7 (26.9)	0 (-)	1 (3.8)	26 (100.0)
零細農	39 (62.9)	6 (9.7)	7 (11.3)	2 (3.2)	8 (12.9)	62 (100.0)
計	82 (59.9)	20 (14.6)	22 (16.1)	4 (2.9)	9 (6.6)	137 (100.0)

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29.9%만이 농사일을 중단하고 공장에 본격취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應答推移는 農地規模가 적은 부류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3-111 農村工場就業時 農事與否

單位：명, %

區分 家口類型	농사일 중단 공장본격취업	농사일 주로 하며 부분적 공장취업	공장취업을 주로하며 부 분적 농사일	기 타	計
居宅保護	3 (37.5)	3 (37.5)	1 (12.5)	1 (12.5)	8 (100.0)
自活保護	18 (43.9)	5 (12.2)	15 (36.6)	3 (7.3)	41 (100.0)
醫療扶助	9 (34.6)	7 (26.9)	9 (34.6)	1 (3.9)	26 (100.0)
零細農	11 (17.7)	12 (19.4)	35 (56.5)	4 (6.5)	62 (100.0)
計	41 (29.9)	27 (19.7)	60 (43.8)	9 (6.6)	137 (100.0)

表 3-112 農外就業에 必要한 職業訓練 履修與否

單位：명, %

區分 家口類型	무조건이수 이 수	시간있으면 이 수	비 이 수	미 정	計
居宅保護	4 (50.0)	2 (25.0)	1 (12.5)	1 (12.5)	8 (100.0)
自活保護	26 (63.4)	8 (19.5)	6 (14.6)	1 (2.4)	41 (100.0)
醫療扶助	16 (61.5)	5 (19.2)	3 (11.5)	2 (7.7)	26 (100.0)
零細農	20 (32.3)	7 (11.3)	32 (51.6)	3 (4.8)	62 (100.0)
計	66 (48.2)	22 (16.1)	42 (30.7)	7 (5.1)	137 (100.0)

表 3 - 113 지금 당장 農村工場就業時 當面問題

單位 : 명, %

	취업기회 부 족	저임금	무기술	체면	노령	무학식	기타	계
居宅保護	5 (62.5)	0 (-)	0 (-)	0 (-)	3 (37.5)	0 (-)	0 (-)	8 (100.0)
自活保護	11 (26.8)	1 (2.4)	2 (4.9)	0 (-)	19 (46.3)	4 (9.8)	4 (9.8)	41 (100.0)
醫療扶助	14 (53.8)	1 (3.8)	2 (7.7)	0 (-)	7 (26.9)	0 (-)	2 (7.7)	26 (100.0)
零細農	25 (40.0)	4 (6.5)	7 (11.3)	1 (1.6)	22 (35.5)	2 (3.2)	1 (1.6)	62 (100.0)
計	55 (40.1)	6 (4.4)	11 (8.0)	1 (0.7)	51 (37.2)	6 (4.4)	7 (5.1)	137 (100.0)

끝으로 農村低所得 家口主들이 지금 당장 農村工場에 취업한다고 할 때 어떠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나에 대한 반응은 취업기회 부족 (40.1%) 과 高齡化 (37.2%) 의 문제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農村低所得層의 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한 雇傭機會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들 家口主의 老齡화와 無技術·低學歷으로 이들을 공장노동자로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農外就業을 위한 職業訓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참여 의사를 보인 응답比率은 64.3%인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30.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같이 職業訓練의 비이수 의사비율이 높은 것은 그들의 취업 가능부분이 전문적인 職業訓練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單純勞務職이나 경비직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라. 아노미와 疏外意識

農業與件이 급변하게 변천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農村現實에서 대인관계에서의 불신감, 사회현상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社會規範 또는 道德律에 대한 회의가 많은 社會問題의 원인이 되

고 있다. 이와같은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農村 低所得層 住民들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把握하고, 이들 住民의 생활관 내지 사회관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低所得層 住民의 無規範性

農村 低所得層 住民들의 아노미적 상태, 즉 無規範性을 把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기로 한다(表3-114). 분석결과에 의하면 農村低所得層 住民들의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과 道德律에 대한 혼돈이 매우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低所得 住民들 중 85% 정도가 연줄이나 배경없이는 아무리 재주가 있고 노력하여도 출세하기 힘들다고 믿고 있는 것은 社會的 規範에 대한 강한 불신과 회의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農村 低所得層 住民들의 人間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低所得層 住民들의 73.4%가 요즘 세상에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表 3 - 114 零細農의 無規範性

質問事項	肯定的 應答比率 (%)				
	居宅保護	自活保護	醫療扶助	零細農	合計
○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연줄이나 배경없이는 출세하기 힘들다	75.0	83.6	86.8	87.2	85.3
○ 요즘 세상에 출세하려면 정직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일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35.0	52.1	47.2	39.2	43.9
○ 요즘 세상에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다	65.0	71.2	71.2	78.2	73.4
調査應答者 數 (名)	20	73	53	125	271 <sup>b</sup>

1) 無應答者 13명 제외

그러나 요즈음 세상에 출세 하려면 정직하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에 肯定的 反應 즉 無規範的 反應을 보인 比率은 43.9%로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법천지라도 자신들의 처세나 행동에 관한 한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해서는 안된다는 農村 住民들의 생활관 내지 사회관의 반영과 더불어 아직도 農村住民들에게는 보다 확고한 道德觀念이 殘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② 疏外意識

農村住民 특히 低所得層 住民들중 88.2%가 살다보면 하기 쉽운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71.3%는 세상일이란 돈이나 권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행위가 個人的 社會的 保障이 생기도록 통제할 수 있는데 대한 낮은 기대감, 즉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들이 農村 低所得層임에도 서민들의 운이나 형편이 더욱 더 나빠질 것이라는에 대한 肯定的 應答比率이 53.5%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지난 20여년간의 農村經濟의 호전과 이러한 成長推移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農村 低所得層 住民들의 51.7%밖에 公務員들이 一般住民의 문제해결보다 자기의 責任을 면하는데 더욱 신경을 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肯定的 應答比率이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응답자들 중 生活保護 및 醫療扶助 對象者도 많아 子女教育費支援 등 政府惠澤을 受惠하고 있는데서 연유된 결과로 보여진다.

응답자중 85.3%가 세상돌아가는 일이 너무 複雜하여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또한 80.5%가 신문이나 放送에서 하는 얘기들이 내 生活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음으로써 장래의 결과에 대한 만족할 만한 예측이 내려질 수 있다는 데 대한 낮은 기대감, 즉 무의미성과 社會的 適應力의 결여에서 연유되는 社會의 文化로부터 소외된 즉 文化的 疏外意識은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表 3-115).

表 3-115 零細農의 疏外意識

質問事項	肯定的 應答比率(%)				
	居宅保護	自活保護	醫療扶助	零細農	計
○ 공무원들은 일반서민이 가진 문제들 보다는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데 더 신경을 쓴다.	35.0	57.3	50.0	51.2	51.7
○ 누가 뭐라해도 우리같은 서민들은 운이나 형편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35.0	48.0	49.1	62.1	53.5
○ 세상일이란 돈이나 권세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같은 사람의 뜻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50.0	67.1	62.3	81.6	71.3
○ 살다보면 하기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다.	70.0	87.7	86.8	92.8	88.2
○ 세상돌아가는 일이 너무 복잡하여 종잡을 수 없을 때도 많다.	75.0	83.6	86.8	87.2	85.3
○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이 내 생활과 거리가 먼 얘기일 때가 많다.	75.0	74.0	77.4	87.2	80.5

### ③ 地域社會에 대한 滿足

아노미와 소외의식의 분석자료에 의하여 農村住民 특히 低所得 農村住民은 社會全體에 대한 信賴度가 낮고, 규범과 倫理體系에 비교적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農村 低所得層 住民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社會的統合度는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먼저 <表 3-116>을 통해 地域社會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5%에 지나지 않았다. 42.4%는 동네를 떠나고 싶을 때도 가끔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58.1%는 동네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놓고 볼 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원문누락

원문누락

家口主들이 高齡化와 低學歷, 無技術, 不健康으로 離農地(他鄉)에서의 적응에 자신이 없는데다 資產規模도 적어 移住地域에서의 住居空間의 확보에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農村居住時에는 최소한 현재와 같은 扶助와 自給을 통한 생활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第 4 章

### 零細農의 創出과 脱避可能性

#### 1. 零細農의 發生原因

##### 가. 貧困의 原因

第 2 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貧困이란 概念은 어느 側面 어떤 基準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아직 完全한 合議點에 이르지는 못한듯 하다. 그렇지만 貧困의 定義가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도 貧困을 零細農의 가장 큰 特徵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sup>1)</sup> 零細農을 個人的으로 보나 또는 零細農 全體를 하나의 階層으로 보나 貧困이란 것을 떼어 놓고 把握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오히려 貧困은 零細農을 把握하는 核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零細農의 發生原因은 구명하는 것은 零細農이 貧困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된다.

貧困의 原因은 매우 다양하다. 가족전체를 부양하던 家口主가 死亡하는 경우라든가 家族의 疾病으로 인한 過多한 醫療費支出, 낮은 教育水

1) 김일철·정영일, 「韓國零細農에 관한 社會經濟的 研究」, 서울대 社會科學研究報告 1, 1977.

準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제한 또는 낮은 보수의 職種에 就業할 수 밖에 없는 등 貧困의 原因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同一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부차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論議를 보면 論者마다 그 内容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貧困의 原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 높은 失業率
- 不健康
- 不具
- 정서적 결합
- 過多한 醫療費
- 일콜중독
- 마약중독
- 대 가족
- 機械化로 인한 失職
- 就業에 필요한 技術 不足
- 낮은 教育水準
- 女性家口主
- 所得의 固定으로 인한 生計費 不變
- 人種差別
- 犯罪者 낙인
- 就業機會가 없는 地域에 居住
- 異婚, 유기 또는 배우자의 死亡
- 도박
- 豊算上의 問題 및 資源의 管理 疏忽

---

2) Charles Zastrow, .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s, - Social problems, Services and Current Issues,* The Dorsey Press, 1978, p.38.

- 性差別
- 犯罪의 犠牲者
- 反勞動的 價值觀
- 잠재실업
- 낮은 보수의 職業
- 지능의 미 발달
- 高齡

이러한 貧困의 原因들 중 알콜중독, 마약중독, 도박 등과 같이 전적으로 개인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家口主의 死亡이나 疾病, 낮은 教育 水準 등과 같이 個人的인 原因이기는 하지만 個人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非自發的 原因들도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社會的・歷史的 原因에 연유하는 것들도 있다. 金一鐵・鄭英一(1977)은 貧困의 原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또한 瓢山京(1980)은 個人的 原因의 責任이 個人自身에게 있다는 점에서 內的 原因으로, 社會的・歷史的 原因은 個人的 責任 밖에 있다고 보아 外的 原因으로 区分하기도 하나 그 내용은 이것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貧困의 歷史的 原因으로 ① 양반관료층에 의한 農民搾取(朝鮮時代), ② 植民地搾取經濟政策(日帝下), ③ 귀환동포의 월남난민발생(解放後), ④ 난민발생(6·25戰爭中), ⑤ 零細離農民에 의한 都市貧困層 形成(1960年代 以後)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20~30年前까지만 해도 貧困은 우리나라의 支配的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貧困의 社會的 原因으로 ① 零細農出身 都市移入者의 就業機會制限과 不安全性, ② 農村에 있어서의 경작규모의 零細性, ③ 社會保障制度의 未發達, ④ 貧困의 세습화—低所得層 子女의 教育機會 制限을 들고 있는데, 최근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결과로 國民經濟 全體의 으로는 括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貧富隔差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社會保障制度의 未發達外에 國民經濟의 分配構造 貧困의 社會的 原因의 하나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貧困이 전적으로 분배의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가 크든 작든 貧困의 문제가 분배의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 나. 貧困의 具體化

이상의 貧困의 原因들이 存在한다고 해서 반드시 貧困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건이 갖추어지면 貧困하지 않을 수도 있다. 篠山京은 貧困의 原因이 存在하더라도 賴蓄 또는 資產이 있거나 家族勞動力이 충분히 있는 경우, 출타가족의 送金援助가 있다든가 적당한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또는 社會保障制度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貧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4)</sup>

貧困의 具體化 = 貧困의 原因 + 다음의 條件

	貧困하지 않음	貧困하게 됨
(1) 賴蓄 · 資產	+	-
(2) 家族의 稼動力	+	-
(3) 家族의 送金援助	+	-
(4) 勞動條件의 保障	+	-
(5) 社會保障制度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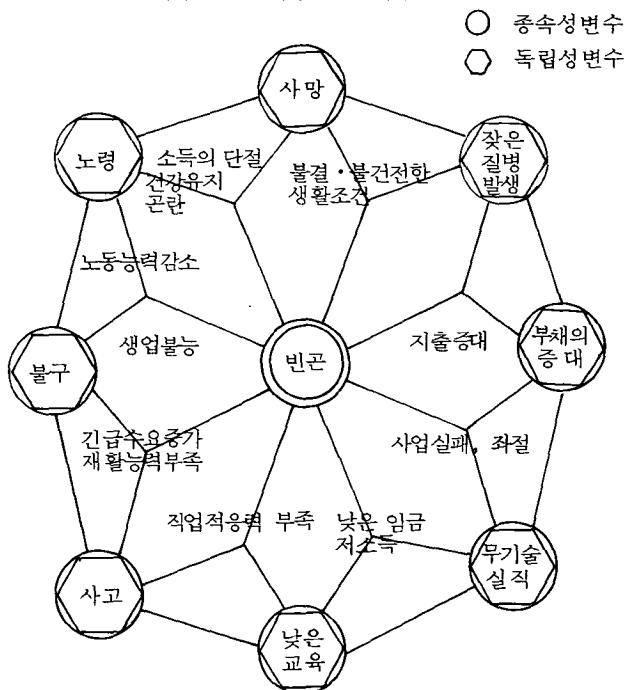
더욱이 貧困하게 되는 데에는 어느 한 원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

3) 李俊求, 「所得分配의 理論과 現實」, 茶山出版社, 1989, p.240.

4) 篠山京, 「戦後日本における貧困層の創出過程」, 東京大出版會, 1980.

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原因이 複合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個人的 動機不足 또는 不適應 등이 전적으로 個人自身에게만 責任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社會構造의 원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질병이나 低教育水準 등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社會全體의 支援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와 같이 貧困의 原因을 個人的의 原因, 社會의 原因등으로 구분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貧困은 이들 原因들이 複合的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날 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원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把握하기조차 어렵다. 貧困의 原因의 複合性은 〈圖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圖 4-1 貧困의 原因



5) 鄭明采 外, 「農漁民年金 및 社會保障制度 研究」, KREI 研究報告 159, 1987.12, p.11.

貧困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原因의複合的인結果이기 때문에零細農들이貧困하게 된 원인을明快하게把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零細農의貧困原因으로 지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원인이 커다란影響을끼쳤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다. 零細農의 貧困原因 調査分析

調查對象零細農家를對象으로現在와같이 어렵게生活하게된原因是면접조사를통해把握해본결과第1原因으로는遺產이없어서(102名, 35.9%)가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이疾病(45名, 15.9%)과家口主死亡(29名, 10.2%)의순으로나타났다. 또한第2原因으로는遺產이

表 4 - 1 零細農의 貧困原因

單位: 家口, %

貧困原因	第1原因	第2原因	第3原因	計
家口主死亡	29(10.2)	9( 3.2)	1( 0.3)	39( 4.6)
疾 病	45(15.9)	21( 7.4)	6( 2.1)	72( 8.5)
不具・폐질	8( 2.8)	5( 1.8)	2( 0.7)	15( 1.8)
高 齡	14( 4.9)	6( 2.1)	2( 0.7)	22( 2.6)
各種事故	6( 2.1)	6( 2.1)	3( 1.0)	15( 1.8)
事業失敗	11( 3.9)	8( 2.8)	1( 0.3)	20( 2.3)
負 債	1( 0.3)	12( 4.2)	5( 1.8)	18( 2.1)
失 職	-	1( 0.3)	-	1( 0.1)
無職・無技術	12( 4.2)	26( 9.2)	11( 3.9)	49( 5.7)
식구가 없어서	19( 6.7)	26( 9.2)	6( 2.1)	51( 6.0)
자식이 없어서	-	7( 2.5)	2( 0.7)	9( 1.0)
유산이 없어서	102(35.9)	36(12.7)	32(11.3)	170(20.0)
복이 없어서	10( 3.6)	20( 7.0)	19( 6.7)	49( 5.7)
노름・술때문에	3( 1.1)	-	5( 1.8)	8( 0.9)
게을러서	1( 0.3)	2( 0.7)	2( 0.7)	5( 0.6)
其 他	17( 6.0)	33(11.6)	17( 6.0)	67( 7.9)
無應答	6( 2.1)	66(23.2)	170(59.4)	242(28.4)
計	284(100)	284(100)	284(100)	852(100)

없어서 (12.7%), 無職・無技術 (9.2%), 식구가 많아서 (9.2%), 疾病 (7.4%)의 순으로 나타났고, 第 3 的 原因으로는 遺產이 없어서 (11.3%), 福이 없어서 (6.7%), 無職・無技術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유산이 없어서, 질병, 식구가 많아서, 무직・무기술, 복이 없어서, 가구주의 사망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個人的 原因과 社會的 原因의 결합의 결과이겠지만 유산이 없는 것, 즉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零細農이 284 명중 170 명 (59.5%)이나 되어 여기에 복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49 명)도 함께 고려해 넣는다면 零細農의 경우 대다수가 가난을 先代로부터 물려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貧困의 責任所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신의 責任이라고 대답하고 전적으로 社會에 責任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8 名 (6.3%)에 불과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責任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6 名 (12.7%)이었다. 이렇게 볼 때 零細農家 대부분이 가난을 물려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現在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自身의 責任이 큰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疾病이 貧困의 커다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先代로부터 가난을 물려 받기는 하였지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집안의 우환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5%나 되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醫療費支出은 家計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 과거와 같이 醫療保險制度도 실시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零細農의 경우 빠듯하게 가계를 꾸려 나가다가 집안에 큰 우환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그대로 負債로 남게 되고 결국에는 가난을 脱避하는데 決定的인 障碍要因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식구가 많은 것도 貧困하게 되는 큰 원인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扶養者는 1 ~ 2 명에 불과한데 被扶

表 4 - 2 貧困의 責任所在

單位 : 人, %

自身의 責任	社會 責任	個人과 社會責任	모르겠다	計
207(72.9)	18(6.3)	36(12.7)	23(8.1)	284(100)

養者가 適正水準을 초과할 경우에는 家族扶養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子女들을 教育시킬만한 여력이 없어 子女들을 일찌기 취업 전선으로 내보내지만 낮은 教育 水準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낮은 報酬의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낮은 教育 水準과 관련되는 것으로 無職・無技術도 貧困의 커다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家口主의 死亡을 들 수 있다. 家族 全體가 의지하고 있던家長이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死亡하게 되는 경우 家族 勞動力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구원에게 주는 物質的 精神的 충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家口主가 疾病으로 死亡하는 경우 家產을 상당히 감소시키거나 많은 負債를 남겨 놓기 때문에 家口主의 死亡과 함께 家勢는 급격히 기울게 된다. 게다가 여자가 가구주가 되면 눈에 띠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社會活動이나 經濟活動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는 더욱 어렵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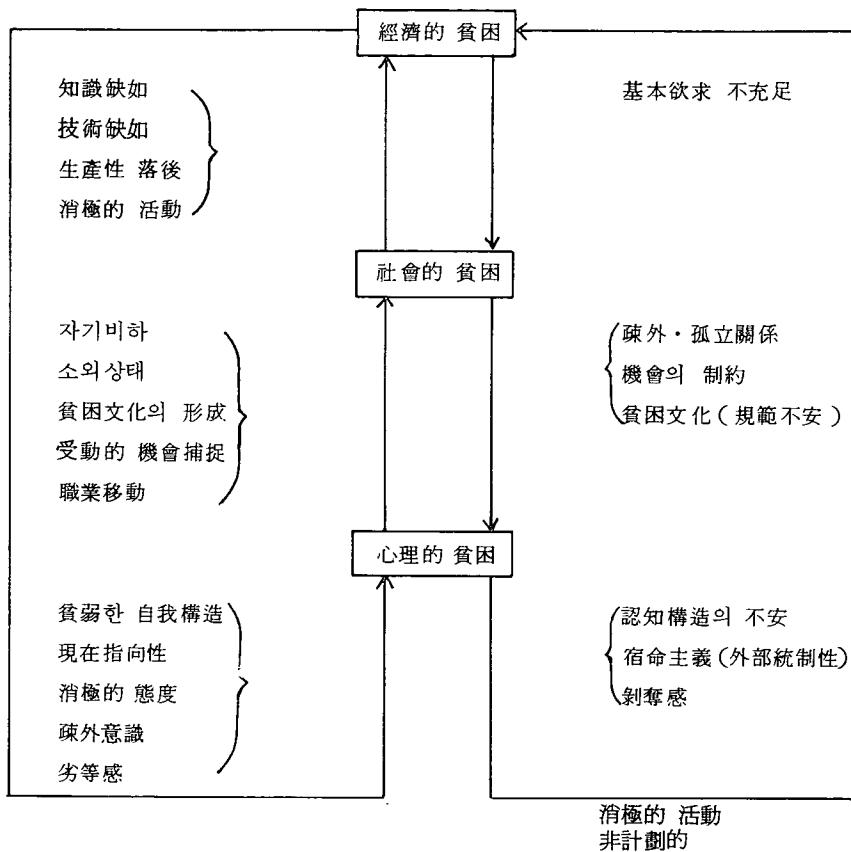
지금까지 貧困의 原因의 重要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지만 이것들은 個人的 原因이기는 하지만 個人的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요인들이며, 전적으로 개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박, 과음, 낙태 등을 貧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農家는 극소수임을 볼 때 零細農家の 貧困의 責任은 개인들에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개인의 責任限界를 벗어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 貧困의 惡循環

### 가. 貧困의 循環的 因果關係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貧困은 여러 가지 원인이 複合的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원인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經濟的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되기도 하고 計劃的인 장래를 지향하기보다는 現在生活을 營爲해 나가는

圖 4 - 2 貧困의 循環的 因果關係



대 급급하여 現在指向的으로 되는 등 심리적인 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 형성되게 된다. 나아가서는 이것이 더욱 보편화되어 社會全體的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疏外・孤立되고 자기비하에 빠지는 등 貧困文化 (Culture of Poverty)를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經濟的 與件이 개선되더라도 오랜동안 社會에 남아 있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貧困은 經濟的 側面 以外에 社會的・心理的 특성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소외감이라든가 정서적 불안정 등을 貧困의 測定指標로 삼는 데에는 分析上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經濟的 變數 특히 所得의 높고 낮음에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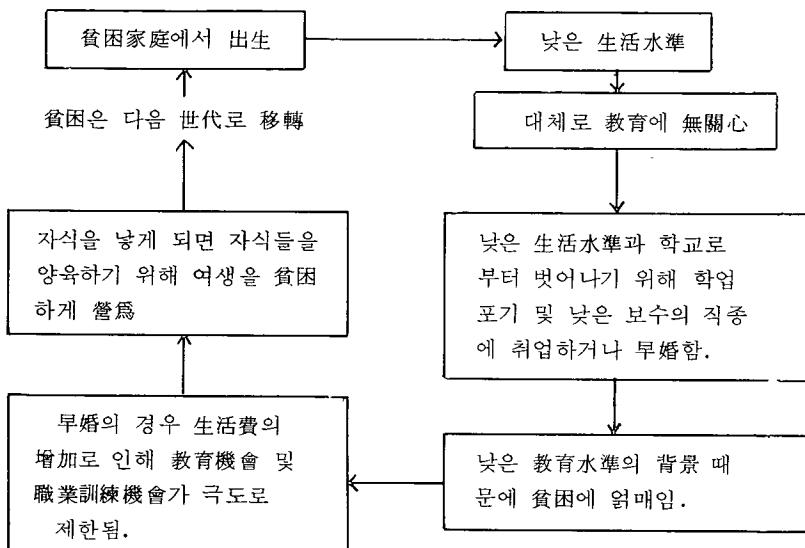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sup>6)</sup> 그러나 貧困에 있어서 經濟的 원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經濟的 貧困, 社會的 貧困, 心理的 貧困은 因果關係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圖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때로는 原因이 되기도 하고 結果가 되기도 한다. 즉, 일방적인 因果關係가 아닌 相互間의 循環關係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貧困의 원인이 同時代의으로 循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世代間에서도 貧困의 因果關係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世代間 貧困移轉은 個人的 原因과 社會的 原因들의 複合的인 結果라고 할 수 있는데, 父母의 과다한 負債를 물려 받는다든가,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렵게 꾸려 나온 가계를 물려 받는다든가 가족을 부양하던 세대주의 死亡으로 갑자기 나머지 家族들을 扶養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부모가 가난하고 형제는 많아 教育을 많이 못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낮은 報酬의 職場에 就業할 수 밖에 없고 景氣침체나 機械自動化로 인한 人員減縮時에는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 Charles Zastrow는 가난이 世代間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에 移轉되는 것을 <圖 4-3>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生活水準이 낮은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부모들은 하루하루의 生活을 營爲하기에 餘力이 없기 때문에 子女教育에 관심을 가질만한 經濟的, 時間的인 여유가 없다. 이러한 環境에서 자라는 아이는 학교에 가는 것 보다는 보다 좋은 음식, 보다 좋은 生活用品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취학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 또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려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집안형편상 곧바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報酬水準이 매우 낮기 때문에 最低水準의 生活을 해야 한다. 더 나은 직업에 종사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教育을 적게 받은 것이 장해요인이 되어 용이하지 않으

---

6) 李俊求, 「前揭書」, pp.240 ~ 241.

圖 4 - 3 貧困의 循環



資料 : C. Zastrow (1978),

며, 이러한 상태에서 結婚을 하게 되면 生活費增加로 인해 생활은 더 여유가 없어져서 教育機會는 물론 職業訓練機會마저도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아이까지 낳게 되면 아이들의 養育費負擔으로 평생을 가난한 生活로 지내야 하며 그 아이들은 또 이러한 貧困의 惡循環의 굴레에 들어서게 된다. 물론 Charles Zastrow의 이러한 설명이 모든 경우에一律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說得力 있는 주장이며, 現實의으로도 이러한 예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貧困의 惡循環에서 脫避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國家社會的인 支援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즉, 貧困이 전적으로 개인적 원인에 의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社會的 原因과 결부되어 있고 貧困의 被害는 完全히 個人的인 일로 되므로 貧困解消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아울러 社會的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零細農의 世襲化

貧困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移轉되었다고 충분히 짐작되지만 貧困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 어느 정도가 世代間의 移轉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指標를 구하는 것은 現實의 으로 貧困의 原因을 區分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調査資料를 기초로 零細農家들의 耕地相續規模 및 출생서열, 그들의 父代 및 祖父代의 생활정도를 비교함으로써 零細農의 世代間移轉을 살펴 보았다.

먼저 先代로부터의 耕地相續規模를 보면 〈表 4-3〉과 같이 相續을 전혀 받지 못한 農家가 192戶(67.6%)나 되며, 상속을 받았어도 대부분이 1,500평 미만이고, 1,500평 이상 상속받은 農家는 5.6%에 불과

表 4-3 出生序列別 耕地相續 規模別 農家分布

單位：戶，%

출생 서열	상속 규모	무상속	300평 以下	301 ~ 600	601 ~ 900	901 ~ 1,200	1,201 ~ 1,500	1,501 ~ 1,800	1,801 ~ 2,100	2,101 ~ 2,400	2,401 평이상	計
長 男	85 (63.0)	4 (3.0)	12 (8.9)	9 (6.7)	5 (3.7)	8 (5.9)	2 (1.4)	4 (3.0)	1 (0.7)	5 (3.7)	135 (100)	
次 男	56 (69.2)	3 (3.7)	8 (9.9)	1 (1.2)	8 (9.9)	3 (3.7)	-	1 (1.2)	-	1 (1.2)	81 (100)	
三 男	27 (73.0)	-	5 (13.5)	2 (5.4)	1 (2.7)	1 (2.7)	-	1 (2.7)	-	-	37 (100)	
四 男	9 (69.2)	1 (7.7)	1 (7.7)	-	1 (7.7)	1 (7.7)	-	1 (7.7)	-	-	13 (100)	
五 男	6 (75.0)	-	-	-	1 (12.5)	1 (12.5)	-	1 (12.5)	-	-	8 (100)	
六 男	1	-	-	-	-	-	-	-	-	-	1	
七 男	-	-	1	-	-	-	-	-	-	-	1	
無應答	8	-	-	-	-	-	-	-	-	-	8	
計	192 (67.6)	8 (2.8)	27 (9.5)	12 (4.2)	16 (5.7)	13 (4.6)	2 (0.7)	7 (2.5)	1 (0.3)	6 (2.1)	284 (100)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零細農이 매우 零細한 營農規模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營農의 零細性을 물려받았다고 단정하기는 困難하다. 왜냐하면 父母代에는 營農規模가 中大農에 해당했다고 하더라도 형제들이 많아 형제간에 分配相續하게 되면規模는 영세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營農規模가 零細해진 경우도 과거에는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零細農들의 출생서열을 함께 살펴 보았다. <表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調查對象 零細農중 135 명 (47.5%)이 장남이었으며, 차남은 28.5%로서 장·차남이 76.0%나 되었다. 과거의 재산상속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장·차남 우선순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제들이 많아 상속과정에서 형제들간에 영세하게 배분된 것 보다는 營農規模 自體가 零細한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農家가 더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零細農家들의 父母代와 祖父母代의 생활정도를 비교해 본 結果 <表 4-4>와 같이 나타났다. 調查對象總農家의 51.4%에 해당하는 147 戶가 조부모대와 부모대의 생활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 戶 (5.6%)는 생활수준이 낮아졌고, 19 戶 (6.7%)는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特徵의인 것은 조부모대보다 부모대에 생활수준이 낮아진 16 戶 중 13 戶 (□부분)는 非零細農에서 零細農으로 전락한 반면 부모대에 생활수준이 향상된 19 戶 중 11 戸 (□부분)는 零細農에서 非零細農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無應答者중의 상당수는 早失父母 등으로 부모대의 생활상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또 일부는 부모대의 일을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의 부모대는 거의 零細農階層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70 戶가 부모대에는 非零細農이었으나 本人은 零細農이고, 나머지 216 戶는 부모대에도 零細農이었고 본인대에도 零細農인 農家라고 할 수 있다(自小作以下를 零細農으로 보았음). 특히, 이 중에서 110 戶 정도는 3 代에 걸쳐 零細農이었음을 알 수 있다.(□부분) 이를 보다 간단히 보기 위하여 調查對象農家の 家系圖 調査資料를

表 4-4 祖父·父의 生活水準

單位：家口，%

祖父 父	地主	地主兼 自作	自 作	自小作	小自作	小 作	農 業 勞動者	其 他	無應答	計
地 主					1				1	2 (0.7)
地主兼 自作	11					1		4		16 (5.7)
自 作	3	38	1		1	1	6	1	1	52 (18.3)
自小作		2	7			1				10 (3.6)
小自作		1	1		21	5			1	29 (10.2)
小 作	1	3	3			40	2	1		50 (17.6)
農 業 勞動者		2					30	1	2	35 (12.3)
其 他				1		1		3		5 (1.7)
無應答						1			84	85 (29.9)
計		15 (5.2)	46 (16.1)	13 (4.5)	23 (8.0)	50 (17.5)	38 (13.3)	10 (3.5)	89 (31.9)	284 (100)

토대로 〈表 4-5〉와 같이 零細農을 세 가지 類型으로 구분해 보았다.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모대에는 零細農이었지만 본인대에 와서 非零細農階層으로 되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 다시 零細農으로 전락한 유형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 유형에 속하는 農家도 5 戶에 불과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零細農은 대부분 세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本 研究의 調查對象이 零細農家만을 對象으로 했기 때문에 零細農이 세습되고 있는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可能性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零細農이 상당한 정도 世襲되고 있

表 4-5 零細農의 類型區分

單位 : %

類 型	父 母 代	本 人 代	農 家 比 率
第 I 型	零 細 農	零 細 農	209(73.6)
第 II 型	零 細 農	非零細農	5( 1.8)
第 III 型	非 零 細 農	零 細 農	70(24.6)
計			28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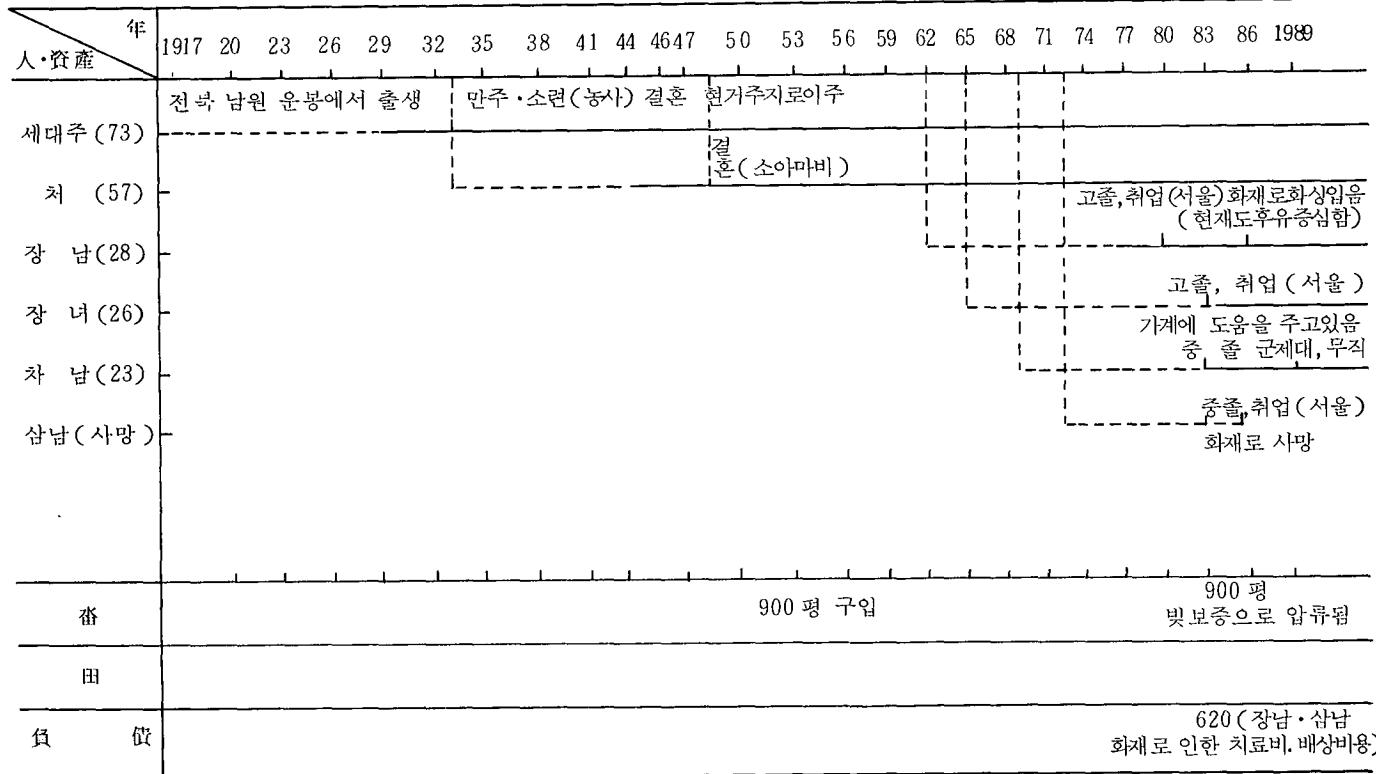
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零細農 類型別 事例農家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 ■ 제 I 형 : ㄱ씨 (全北 ○郡, 73세)

ㄱ씨는 全北 南原의 한 農村에서 零細小作農의 두 아들중 차남으로 출생했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서 일을 해 주며 지내다가 22세에 이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정주했던 것은 아니고 만주와 소련 등지를 돌며 농사일을 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年에 현거주지로 혼자 이주해 왔다. 現居住地에서 30세가 되는 해에 현재의 처와 結婚하여 3男1女를 두었다. 처는 한쪽 발이 소아마비로 보행하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으나 활동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다. 물려 받은 農土도 없고 만주나 소련 등지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빈 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現居住地로 이주하여 몇년 동안은 남의 농사일을 주로 하였지만 부부가 열심히 일한 결과 곧 900坪 정도의 논을 구입할 수 있었다. 논을 구입한 이후로는 자기 논 900坪과 남의 土地도 얻어 경작하면서 長男과 長女는 高等學校를 卒業시켰고, 次男과 三男은 中學校를 卒業시켰다. 장남과 장녀는 고교졸업후 바로 상경하여 취업하였다. 그러나 차남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1984년에 당시 관공서의 기관장으로 있던 사람의 보증을 서 주었다가 보증을 서 준 사람이 파산하게 되어 保證을 선 責任으로 債權者들에게 논 900평이 압류되면서 어렵게 꾸려 오던 家計는 급격히 기울게 되었고 차남과 삼남의 진학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차남은 집에서 2~3년 있

圖 4-4 家系圖 I (丁氏: 全北 O 郡, 73 歲) (第 I 型)

單位: 耕地 - 坪, 金額 - 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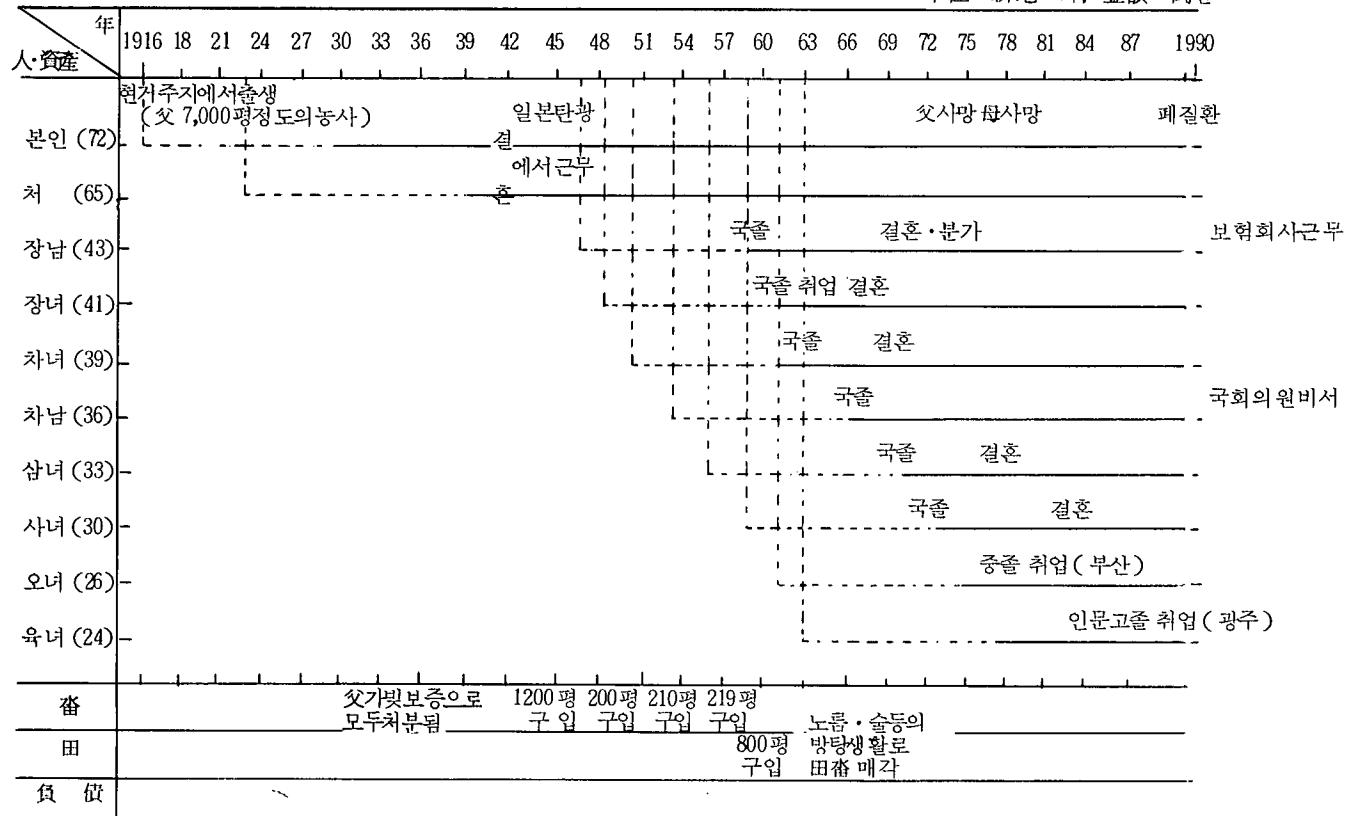
다가 軍에 입대하였고 삼남은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상경하여 취업하고 장남과 함께 지하방 하나를 전세로 살고 있던 중 설상가상으로 火器取扱不注意로 화재를 당했다. 이 때 장남과 삼남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주인집의 많은 가재도구가 불에 타 배상해 주어야 했다. 이 때 입은 화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삼남은 사망하였고, 장남은 치료를 받고退院은 하였으나 現在도 그 후유증이 심해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의 火災로 인한 損失이 大略 1,000 만원 정도였는데 이로 인한 負債가 現在도 600 만원 정도 남아 있다. 현재 본인과 처는 勞動力도 거의 없고 老齡이기 때문에 품팔이나 마 별로 기회가 없고 장남은 정상적인 勞動活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차남은 올 봄에 제대하고 현재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써 현재의 생활은 본인과 처의 노동을 통해 얻는 所得과 서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장녀의 送金으로 꾸려가고 있다. 政府의 支援惠澤은 現在 自活保護對象者로 指定되어 病院診療費 및 약값 정도 惠澤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형편이기 때문에 엄청난 負債를 갚을 엄두를 못내고 있다. 장남의 정상적인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차남이 職業訓練의 과정을 거쳐 安定的인 職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國家的으로도 社會福祉次元에서의 支援이 병행되어야 생활형편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제Ⅱ형 : ㄱ씨 (全南 郡, 72 세)

ㄱ씨는 1916年 現居住地에서 大農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자랐으나 부친이 빚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어 7,000여평의 耕地를 賣却處分하게 되고 부터 家勢는 급격히 기울게 되어 분가할 당시에는 물려 받은 것이 없었다. 24세에 結婚하였으나 마땅한 돈 벌이가 없어 단신으로 日本으로 건너가 炭礦에서 3年 정도 종사하다가 해방이 되자 歸國했다. 이 때 광산에서 모은 돈으로 1,200평의 논을 구입했고, 이후 열심히 농사를 지어 2~3년마다 農地를 조금씩 구입해 1950年代 末에는 3,000평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1960年代 初부터 술

圖 4-5 家系圖 II (ワ氏: 全南郡, 72歳) (第Ⅱ型)

単位: 耕地 - 坪, 金額 - 萬圓



과 노름 등의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어 1970년까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農地 3,000여평을 모두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農地를 가져 보지 못했다. 따라서 五女, 六女를 제외한 6남매는 国民학교밖에 못 나왔으며, 장녀와 차녀는 早婚하였고, 다른 자녀들의 結婚費用도 장남이 부담하는 실정이었다.

그씨의 경우 결혼직전 부친의 빚보증 잘못으로 인한 耕地賣却과 1960년대 자신의 방탕한 생활만 아니라면 現在보다는 훨씬 나은 여건이 될수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 장남이 保險會社에 勤務하면서 중간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씨 부부의 노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장남에게 의지해야 하고, 또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農家는 正常的인 農家로 育成되기 보다는 머지 않아 脫農할 農家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제Ⅲ형 : 그씨 (경기도 고군, 64세)

그씨는 1925年 全北 정읍에서 자작농의 4형제중 세째로 태어났다. 부모가 7,000여평의 農事を 지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大農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형제들이 출가하면서 네 형제에게 고르게 분배해 주어 그씨도 2,000여평의 논을 상속받았다. 2,000여평의 農事로 生活 및 子女教育을 꾸려 나가기에는 벅찼고, 따라서 負債는 점증하였다. 돈을 벌어 農地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씨는 子女教育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子女education을 위해 고향을 떠나 定着한 곳이 現居住地이다. 고향의 논 2,000여평을 팔아 현거주지로 이주해서 生活費 및 教育費 등으로 소비하고 農地는 전혀 구입하지 못했다. 3남 4녀 중 장녀, 차녀와 장남은 결혼했고, 차남과 삼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차남은 출판사에서, 삼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 또 4녀는 고등학교, 3남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씨도 앞 (제Ⅱ형)의 그씨와 비슷한 여건으로 현재 1,500평의 논을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老齡으로 勞動力이 거의 없기 때문에 農家로 育成될 수는 없고 조만간 脱農이 예상되는 農家이다. 또 老後準備가 전혀 되어 있지

圖 4 - 6 家系圖 Ⅲ(刀氏: 京畿道 立郡, 64歳)(第Ⅲ型)

單位: 耕地 - 坪, 金額 - 萬원

年 人・資産	1921	24	29	30	33	36	39	42	45	48	51	54	57	60	63	66	69	72	75	78	81	84	87	1989		
본인(64)	전북 정읍에서 출생					국출																				
처(59)													결											허리통		
장녀(38)											혼						고출	결혼(?)								
차녀(31)																			고출 결혼(300)					(300)		
장남(30)																			고출	결혼	출판사(서울)					
차남(26)																								고출 취업(서울)	출판사	
삼녀(22)																								고출 취업(서울)	유치원교사	
사녀(19)																								高2		
삼남(16)																								中3		
畠																									2,000평상속	
田																									2,000평판매(교육비 및 생활비)	
負債																									190(생활비)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상은 類型別로 한 農家의 事例로 살펴 본 것으로써 調査對象農家들도 개별적으로는 모두 상이한 사정을 가지고 있지만 대강의 줄거리는 이러한 類型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3. 零細農의 世襲化 및 脱避可能性

#### 가. 零細農의 社會·經濟的 適應努力

零細農은 貧困한 가운데서도 貧困을 脱避해 보려고 可能한 方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박이나 음주 등 개인적인 방탕 생활로 인해 貧困을 자초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것에 불과하며, 零細農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뿐리치기 어렵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調査對象 零細農家の 經濟活動 특히 職業變動形態, 居住地移轉回數 및 形態와 農外就業狀況 등을 살펴 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社會에 適應하려고 하는가를 부분적으로나마 把握해 보려고 한다. 먼저 零細農의 職業變動을 <表 4-6>과 같이 몇 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처음부터 農事を 지어 온 農家가 142 戶(50.0%)로 가장 많았다. 즉,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零細農들은 농사만을 계속 지어왔으며 농사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농사를 짓다가 외지로 나가 막노동도 해 보았으나 벌이가 별로여서 다시 農村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있으나 전파 마찬가지로 農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農家가 59 戶(20.8%)나 되었다. 이밖에도 농사를 짓다가 다른 職業에 종사했던 농가들도 있으나 이들이 종사했던 직종은 工場勞動이나 鎳山, 미장 등 단순한 肉體勞動이 대부분이고 自營業이나 기타 非農業分野에 종사한 경우도 대부분 劣惡한 條件이었기 때문

表 4-6 職業의 變動

單位：戶，%

職業變動類型		農家比率
農業	農業	142(50.0)
農業	工場勞動	22( 7.7)
農業	礦山	15( 5.3)
農業	막노동	59(20.8)
農業	미장	8( 2.8)
公務員·會社員	農業	4( 1.4)
農業	自營業 또는 非農業就業	8( 2.8)
農業	商業(自營業)	17( 6.0)
農業	無職	9( 3.2)
計		284(100)

에 다시 歸農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零細農들이 지금 당장 非農業部門에 就業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報酬의 職種이나 肉體的인 단순노동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農村에서 어렵게 생활해 나가면서도 異農하려는 의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表 4-6) .

또한 零細農家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녔다. 현거주지에서 계속 정주해 온 農家가 127戶로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農家는 1회 이상 거주지를 옮겨 다녔으며, 가장 많은 경우 13회까지 이동하였다(表 4-7). 都市에서의 居住地移轉이 주로 住宅問題나 教育問題라면 零細農家들의 거주지이전은 대부분 職業上의 問題라고 볼 때 이들의 經濟活動이 그만큼 不安定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表 4-8)

表 4-7 居住地 移轉回數

單位：戶，%

移轉回數	定住	1回	2回	3回	4回	5回	6回以上*	計
家口數比 率	125 (44.0)	73 (25.7)	59 (20.8)	16 (5.6)	4 (1.4)	4 (1.4)	3 (1.1)	284 (100)

\* 最多移轉回數 : 13회 (經營主 年齡 70세)

表 4 - 8 居住地 移動理由

單位：戶， %

移轉理由	就業	職業轉換	돈벌이	부모따라	子女教育	歸鄉	出家	其他	計
家口數 比 率	49 (23.1)	12 (6.7)	69 (26.9)	21 (7.7)	3 (1.0)	24 (8.7)	20 (8.4)	43 (17.5)	241 (100.0)

表 4 - 9 移住形態

單位：戶， %

移住形態	본인만	세대일부	세대전부	其他	計
農家數(比率)	74(28.9)	9(3.5)	172(67.2)	1(0.4)	256(100.0)

을 보면 就業이나 職業轉換 또는 돈벌이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긴 農家가 130 戶로 전체의 45.5 %를 나타내고 있는데, 歸鄉이나 부모를 따라 이주했던 것들도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거주지이전은 대부분 職業上의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부가해야 할 것은 거주지 이전형태가 주로 세대전부의 이동이었지만 일자리를 찾아 본인 혼자 옮겨 다닌 것도 30 %에 가깝다는 점이다(表 4-9). 이렇게 볼 때 이들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세대전부를 안정적으로 부양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짐작된다. 한편 이들이 거주한 지역

表 4 - 10 居住地의 變動

單位：%

移動類型	農家比率
現居住地	現居住地
現居住地 都市	現居住地
現居住地 其他農村	現居住地
其他農村	現居住地
其他農村 都市	現居住地
其他農村 其他農村	現居住地
都市	現居住地
都市 其他農村	現居住地
計	284(100.0)

을 보면 (表 4-10) 대부분 農村地域에서 定住했거나 移住했으며, 都市地域에서 거주했던 農家는 45 戶 (15.8%) 정도였다. 都市에 移住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은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점을 보면 이들의 취업상태는 전체적으로 低賃水準이었고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零細農들의 農外就業狀況을 보면 (表 3-57), 75명의 家口員 (總家口員 1,038명의 7.2%)이 農外就業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근 工場이나 公사판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經營主는 주로 공사판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처와 딸 등 여자들은 주로 마을내 또는 인근지역의 공장에 취업하고 있다. 經營主는 不定期的으로 공사판노동일에 종사하는데 비해 여자들이 종사하는 공장일은 계속적인데 이는 경영주는 농사일을 하면서 수시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비해 여자들은 농사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農外就業에만 전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간 農外收入은 經營主보다는 家口員들의 收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農外就業場所는 마을내 또는 隣近部落 및 가까운 都市가 대부분으로 出退勤距離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農外就業機會도 大都市周邊地域에서는 可能하지만 都市와 멀리 떨어진 農村地域에서는 그나마의 기회 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 마을내에서 농사일 등의 품을 팔기도 하지만 營農機械化의 진전으로 인해 품을 팔 수 있는 농사일거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을내에서의 농사일 보다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都市로 나가 非農業部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 大衆交通手段이 比較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農外就業時의 距離는 큰 障碍要因이 되지 못한다. 이밖에 自營業을 하고 있는 農家도 몇 農家 있었으나 마을내에서의 구멍가게 운영등이 대부분으로 都市地域에서의 가게운영과는 달리 散在해 있는 소수의 農家를 對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零細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零細農들의 社會經濟的 適應努力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 보았지만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가난을 벗어나는데에는 개별적인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國家社會的인 次元에서의

積極的인 支援方案이 多角的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零細農의 脱避可能性

零細農이 貧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營農規模를大幅擴大하거나 家口員의 農外就業이 可能하며, 또 子女들의 教育機會 및 나아가서 安定的인 職業을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可能性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社會保障制度의 충분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零細農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거의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外部的인 支援이 없으면 지금의 貧困한 상태를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먼저 農地規模擴大側面을 보면 현재 政府에서는 營農規模의擴大를 支援하기 위해 農地購入資金을 支援하고 있기는 하나 수혜자가 적고 支援對象도 原則的으로는 1.0 ha 以下の 農家는 모두 對象이 되기는 하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零細農들에게는 차례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營農할 意思와 能力이 있는 零細農에게는 구입농지를 담보로 하 고라도 農地購入資金을 支援할 必要가 있다. 다음에는 潛在失業狀態에 있는 家口員들의 勞動力を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農工地區造成 등을 통해 많은 工場이 農村地域에 入住하고 있으나 雇傭人力의 대부분은 外地(주로 인근의 都市)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현지주민들의 參與機會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入住工場의 입장에서 보면 미숙련 또는 저학력노동이기 때문에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國家的인 職業訓練教育 및 就業斡旋事業이 體系的이고 持續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이러한 事業이 推進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實效性 있는 事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本研究를 위해 零細農을 對象으로 調査해 본 결과 國家의 職業訓練事業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國家職業訓練時의 각종 支援內容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職業訓練에 대한 積極的인 弘報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零細農은 子女教育에 대해 관심은 갖고 있으나 經濟的인 能力 때문에

많은 教育을 시키지 못하고 일찌기 子女들을 취업전선에 내보내게 되거나 子女教育을 시키게 되면 모든 가족이 어려운 生活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農村教育에 대한 支援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零細農子女들의 教育機會確保與否는 貧困의 脱避問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零細農들 자신은 현재 貧困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子女들이 成長 就業하여 安定的인 生活을 營爲해 갈 수 있다면 零細農들은 老後를 의지할 수 있다. 노후의지자들의 生活能力을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職業을 살펴 볼 必要가 있다. 노후의지자들의 현재의 職業分布를 보면 아직 상당수가 노후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應答者中에서는 會社員, 學生, 工員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會社員이라고 應答한 경우도 실제로는 工場就業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工場에 취업하고 있으며, 그들의 收入도 많지 않아 노후를 의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태이다. 그 외의 의지자들의 직업이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사정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農村에서의 定規教育過程 및 職業訓練에 대한 지원정도는 零細農들의 노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勞動力이 없어 더 이상 營農의 規模를 擴大하기도 어렵고, 農外就業도 불가능하며, 노후를 의지할 만한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國家社會政策의 次元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도 여러 가지 社會政策事業이 실시되고 있으나 農村貧困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현재 保健社會部에서 生活保護對象者를 선정하여 정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상세한 것은 제 5장 참조). 居宅保護對象者(1종)에게는 生活費 일체가 지원되고 있으며, 自活保護對象者(2종)에게는 教育費 및 醫療費만 지원되고, 醫療扶助對象者(3종)에게는 醫療費惠澤만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零細農의 생활정도는 대부분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여 지원할 성격이 못된다. 다만 政府의 財政形便上選別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장기적인 農業政策次元에서 더 나

表 4 - 11 老後依支者の職業

單位：戶，%

의지자의 직업	農業	商業	學生	公務員	會社員	工員	木工	教師
農家數 比率	8 (2.8)	9 (3.2)	26 (9.2)	2 (0.7)	38 (13.4)	19 (6.7)	2 (0.7)	3 (1.0)
의지자의 직업	막노동	운전수	의지자無	軍人	船員	無職	無應答	計
農家數 比率	5 (1.8)	10 (3.5)	26 (9.2)	10 (3.5)	1 (0.3)	7 (2.5)	118 (41.5)	284 (100.0)

表 4 - 12 農家發展類型別 零細農家區分

農家類型 △ 區分基準	家族勞動力		農外就業者		依 支 者		農家比率(%)
	有	無	有	無	有	無	
I 農業的 育成	○			○	○		43(15.1)
	○			○		○	
II 兼業的 育成	○		○		○		97(34.2)
	○		○			○	
III 社會保障對象		○		○		○	44(15.5)
		○		○			
IV 隱退誘導對象		○	○	○	○		100(35.2)
		○		○		○	
計							284(100)

아가서는 國家의 經濟政策의 次元에서 이러한 支援規模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零細農들은 스스로 모든 努力を 기울인다고 해도 현재의 貧困狀態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外部的인 支援 특히 國家次元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대부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國家的인 次元에서의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零細農家를 農業的 育成農家, 兼業的 育成農家, 社會保障對象農家 및

隱退誘導對象農家 등 네 가지 類型<sup>7)</sup>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隱退誘導對象農家가 100 戶 (35.2%)로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해서 零細農의 상당수가 高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자적인 힘으로는 전혀 生計維持가 困難한 農家도 44 戶나 되어 與件만 造成되면 脫農해야 할 農家가 144 戶 (50.7%)나 되는데 비해 전업농으로 育成可能한 農家는 43 戶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政府 또는 外部에서 어떠한 自活對策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零細農家는 獨自的인 生計維持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自立農家로 育成될 可能性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零細農들이 營農能力이나 就業能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농의사가 없는 것은 (表 4-12) 현재의 거주지를 떠나 낯선 農村地域이나 都市地域에서 適應할 可能性은 더욱 희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零細農의 子女들이 대부분 都市에서 취업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하고 生活形便이 어렵기 때문에 都市로 나아가 자녀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보다는 현거주지에서 어려운 生活을 꾸려가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都市의 자녀를 쫓아서 또는 農村生活에 適應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세대전부가 都市로 移住하게 되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都市貧困層을 형성하게 되어 都市貧困問題 및 住宅問題 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零細農의 問題는 단순히 農業上의 問題가 아니라 全體國民經濟的 次元에서 把握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는 社會政策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

7) 崔洋夫·朴成在·吳乃元, 「農家經濟의 類型과 性格分析」, KREI 研究報告, 1983.

## 第5章

### 零細農을 위한 福祉行政支援과 問題點

零細農을 위한 行政支援施策으로는 保健社會部에서 실시하는 生活保護 醫療保護 支援과 農林水產部의 零細農을 위한 農業政策을 들 수 있다. 本 5章에서의 福祉行政支援 施策의 現況과 施行結果를 分析하기 위해서 필요 한 자료는 주로 保社部가 집계하고 있는 生活保護對象者 現況分析資料와 本 研究팀이 조사한 農村調查資料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福祉行政支援의 전반적인 政策 속에서 農村地域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 토록 하는데는 전국적 경향과 조사지역인 農村의 경향을 비교함이 유리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農林水產政策當局이 최근에 와서 관심 을 보이기 시작한 零細農의 福祉施策 또한 그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 1. 地域別 生活保護者 및 醫療保護者의 人口分析

##### 가. 生活保護 및 醴療保護者の 範圍 및 策定基準

生活保護者の 범위는 生活保護法에 의해 居宅保護者, 施設保護者, 自活 保護者가 있으며 醴療保護자는 1種, 2種, 3種이 있다. 각 對象者別策 定要件은 〈表 5-1〉과 같다.

生活保護對象者中 居宅保護者は 65세 미만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

表 5-1 生活保護 및 醫療保護 策定要件(對象)

區 分	策定要件(對象)	備 考
生活保護對象者	居宅保護者 ① 65세 以上의 노쇠자 ② 18세 未滿의 兒童 ③ 妊娠婦 ④ 疾病 또는 心身 障碍로 인하여 勤勞能力이 없는 자.	로 구성된 세대 또는 이들과 50세 以上의 婦女子만 으로構成된 世帶에 속하는 자
	施設保護者 育兒施設, 養老施設 등 各種 社會福祉施設에 收容된 者	
	自活保護者 勤勞能力이 있으나 所得水準이 낮아 生計維持가 困難하여 國家의 保護를 필요로 하는 者	매년 策定基準이 1 인당所得, 世帶當財產額에 의하여 策定
醫療保護者	1 種 居宅保護對象者 施設收容者 人間文化財, 越南歸順者 援護對象者 罹財民, 其他	
	2 種 自活保護者	
	3 種 自活保護類似者	매년基準 設定

資料：保健社會部，「保健社會」，1989。

동, 임신부, 질병 또는 心身障礙로 인하여 勤勞能力이 없는 者,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를 나타낸다。施設保護者は 育兒施設, 養老施設 등 각종 社會福祉施設에 收容된 者를 指稱하고, 自活保護者は 근로능력이 있으나 所得水準이 낮아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國家의 保護를 필요로 하는 者를 의미한다。

醫療保護者 1 種에는 居宅保護者와 施設保護者 등이 해당되고, 2 種은

自活保護者, 3種은 自活保護類似者를 나타낸다.

自活保護者와 醫療保護 3種(醫療扶助라고도 하며 自活保護類似者)의 策定基準은 政府에서 매년 1인당 所得額, 世帶當 財產額등에 의하여 책정하게 되어 있다. 年度別로 地域別 生活保護와 醫療扶助의 策定基準은 <表 5-2>와 같다.

지난 1977年 까지는 都市와 農村 모두가 家口의 動產을 인정하였으나 (1977년의 경우 가구당 動產이 도시 40만원, 農村 30만원이었음), 1978년부터는 제외하였다. 田畠의 경우는 都市는 1980년까지 3단보까지의 田畠을 인정하였으나 1981년부터는 農村에서만 田畠을 인정하여왔으나 1987년부터 農村에서도 家口當 耕作地의 조건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재는 自活保護者와 醫療扶助者 모두가 1인당 月所得과 家口當 財產額만을 그 策定基準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家口員 1人當 月所得과 世帶當 財產額의 基準에 있어서는 지난 1986

表 5 - 2 生活保護와 醫療扶助의 策定基準의 變化

區 分	生活保護(自活保護) <sup>1)</sup>						醫療扶助 <sup>2)</sup>		
	1人當月所得(千원)			財產額(萬원)			1人當月所得(千원)		
	大都市	都 市	農 村	大都市	都 市	農 村	大都市	都 市	農 村
1982	26	23	20	200	175	150	-	-	-
1983	35	31	27	210	185	160	-	-	-
1984	36	32	28	230	200	180	-	-	-
1985	38	34	30	290	260	230	-	-	-
1986	42	38	34	320	290	260	50	46	42
1987	43	43	43	320	320	320	54	54	54
1988	44	44	44	320	340	340	54	54	54
1989	46	46	46	340	340	340	54	54	54

1) 1986年까지 세대당 경작지를 3단보미만까지 가지고 있는자를 農漁村에 국한하여 自活保護者로 인정하였으나 1987年부터 除外함.

2) 醫療扶助는 1986年 1月부터 도입되었음. 그 基準에 世帶當 財產額을 540萬원까지, 침세, 월세 생활자는 600만원 미만인 者로 함.

資料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 各年度.

년까지는 大都市, 中小都市, 農漁村으로 地域을 區分하여 各地域別로 策定基準을 달리하였으나 1987年부터 지역 구분없이 일원화하였다. 保健社會部에서는 農村地域의 月平均 家計費 支出額이 都市 水準에 이르고 있음을 뿐만 아니라, 都市·農村間 通用基準의 隔差로 低所得層의 都市集中化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農村의 經濟與件이 都市와 차이가 나고 農村에는 現金化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農村과 都市의 生活保護 策定基準을 같이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 나. 地域別 生活保護者 및 醫療保護者의 人口分析

전국의 生活保護者와 醫療扶助者は 總人口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연도별로 보면 <表 5-3>과 같이 居宅保護者와 施設保護者は 증가추세에 있으며 반면 自活保護者は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全體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보면 1989년의 경우 居宅保護 0.8%, 施設保護 0.2%, 自活保護 4.3%, 醫療扶助 4.0%, 計 9.3%이다. 지난 1986年과 1987年이 9.9%, 1988年 9.6%, 1989年 9.3%로 점차

表 5-3 生活保護 및 醫療扶助對象者數의 變化(全國)

單位 : 千名(%)

區 分	總人口 <sup>1)</sup>	居宅保護	施設保護 <sup>2)</sup>	自活保護	醫療扶助	計
1986	41,184	284 (0.7)	70.0 (0.2)	1,819.0 (4.4)	1,924 (4.7)	4,097.0 (9.9)
1987	41,575	295 (0.7)	74.7 (0.2)	1,984.0 (4.7)	1,752 (4.2)	4,105.7 (9.9)
1988	41,975	318 (0.8)	65.0 (0.2)	1,916.8 (4.6)	1,725 (4.1)	4,024.8 (9.6)
1989	42,800	323 (0.8)	79.0 (0.2)	1,844.0 (4.3)	1,725 (4.0)	3,971.0 (9.3)

1) 연장추계인구

2) 施設保護에 國公立施設은 除外

資料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1989.

감소되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生活保護, 醫療扶助의 각 對象範圍別 總人口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크게 變化가 없는 것 같았다.

전국적인 통계가 위와 같다면, 郡單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表 5-4>는 調查對象 16 個郡, 2 個市에 있어서 生活保護者와 醫療扶助者가 전체 가구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農村은 全體 家口의 20.8%, 全體 人口의 20.1%나 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分析한 全國 資料인 9.3%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반면 都市는 全體 家口의 10.2%, 全體 人口의 8.9%를 차지하여 農村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全國의 生活保護 및 醫療扶助者가 地域的으로 차지하는 比率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表 5-5>는 地域別 人口 및 居宅保護 및 自活保護者의 比率 變化를 나타낸 것이다.

常住人口로 보면 大都市, 農村, 都市의 순으로 大都市의 人口가 가장 많았으나 居宅保護者나 自活保護者の 人口는 農村, 大都市, 都市의 順으로 農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全體 居宅保護者の 60 ~ 70 %가량이 農村(즉 1987年 71.6%, 1988年 70.9%, 1989年 68.7%)인 것을 보면, 또 自活保護者の 60 ~ 70 %가 農村(1987年 60.7%, 1988年 59.9

表 5-4 調查地域의 全體人口, 家口중 生活保護, 醫療保護의 比率(1989)

區 分		全 體	居宅保護	施設保護	自活保護	小 計	醫療扶助	計
農村	家口	345,181	12,930 (3.7)	260 (0.1)	36,568 (10.6)	49,758 (14.4)	22,052 (6.4)	71,810 (20.8)
	人口	1,445,903	27,457 (1.9)	2,073 (0.1)	160,631 (11.1)	190,161 (13.2)	100,821 (7.0)	290,982 (20.1)
都市	家口	49,108	944 (1.9)	4 (0.0)	1,930 (3.9)	2,878 (5.9)	2,135 (4.3)	5,013 (10.2)
	人口	212,529	1,685 (0.8)	475 (0.2)	8,196 (3.9)	10,356 (4.9)	8,597 (4.0)	18,953 (8.9)

\* 調査地域 : 16 個郡으로 中原郡, 平澤郡, 提原郡, 尚州郡, 平昌郡, 密陽郡, 成陽郡, 金陵郡, 寅州郡, 論山郡, 錦山郡, 羅州郡, 沃溝郡, 金堤郡, 南原郡, 光陽郡임.  
調査地域 2 個市는 江陵市와 南原市임.

表 5-5 地域別 人口 및 居宅保護, 自活保護者의 比率

單位 : ( ) 内는 %

區 分	大都市	都 市	農 村	全 國
1986.11 常住人口比率	42.9 %	24.5	33.6	100.0
1987年 居宅保護者 (A)	40,148名 (13.9)	41,987 (14.5)	206,596 (71.6)	288,731 (100.0)
1987年 自活保護者 (B)	442,526名 (23.7)	292,092 (15.6)	1,133,260 (60.7)	1,867,878 (100.0)
小 計 ( A + B )	482,674名 (22.4)	334,079 (15.5)	1,339,856 (62.1)	2,156,609 (100.0)
1986.10 常住人口의 家口	4,701,358戶 (47.7)	2,085,737 (21.2)	3,071,971 (31.2)	9,859,066 (100.0)
1987年 居宅保護家口 (C)	25,326戶 (17.2)	22,947 (15.6)	98,937 (67.2)	147,210 (100.0)
1987年 自活保護家口 (D)	109,671戶 (25.4)	66,772 (15.5)	254,901 (59.1)	431,344 (100.0)
小 計 ( C + D )	134,997戶 (23.3)	89,719 (15.5)	353,838 (61.2)	578,554 (100.0)
1987.11 常住人口比率	43.8 %	25.2	31.0	100.0
1988年 居宅保護者 (E)	45,817名 (14.8)	43,991 (14.2)	219,145 (70.9)	308,953 (100.0)
1988年 自活保護者 (F)	456,729名 (24.3)	297,718 (15.8)	1,128,453 (59.9)	1,882,900 (100.0)
小 計 ( E + F )	502,546名 (22.9)	341,709 (15.6)	1,347,598 (61.5)	2,191,853 (100.0)
1988年 居宅保護家口 (G)	29,025戶 (18.2)	24,831 (15.6)	105,827 (66.3)	159,683 (100.0)
1988年 自活保護家口 (H)	114,472戶 (26.0)	68,982 (15.7)	256,823 (58.3)	440,277 (100.0)
小 計 ( G + H )	143,497戶 (23.9)	93,818 (15.6)	362,650 (60.4)	599,960 (100.0)
1988.11.1 常住人口	20.2 千名 (47.2)	8.9 千名 (20.8)	13.7 千名 (31.9)	42.8 千名 (100.0)
1989年 居宅保護者 (I)	52,082名 (16.5)	46,815 (14.8)	217,144 (68.7)	316,041 (100.0)
1989年 自活保護者 (J)	437,406名 (24.2)	301,314 (16.7)	1,068,711 (59.1)	1,807,431 (100.0)
小 計 ( I + J )	489,488名 (23.1)	348,129 (16.4)	1,285,855 (60.6)	2,123,472 (100.0)
1989年 居宅保護家口 (K)	33,010戶 (20.1)	26,318 (16.6)	105,112 (63.9)	164,440 (100.0)
1989年 自活保護家口 (L)	109,853戶 (25.6)	71,432 (16.6)	248,190 (57.8)	429,475 (100.0)
小 計 ( K + L )	142,863戶 (24.1)	97,750 (16.5)	353,302 (59.5)	593,915 (100.0)

資料 : 保健社會部, 生活保護對象者 現況分析, 1987, 1988, 1989.

各 年度別 常住人口는 內務部가 매년 11月 1日을 基準으로 實施하는 常住人口 調查資料를 國土開發研究院 國土利用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引用함.

表 5-6 農家와 非農家間 生活保護對象 比較(調查地域)

區 分		郡全體	居宅保護	施設保護	自活保護	醫療扶助	單位 : %
家 口	農 家	52.0	15.8	0.0	70.8	73.6	58.6
	非農家	48.0	84.2	100.0	29.2	26.4	41.4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人 口	農 家	71.8	16.7	0.0	70.0	74.7	64.3
	非農家	28.2	83.3	100.0	30.0	25.3	35.7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調査地域 : 平昌郡, 平澤郡, 提原郡, 尚州郡, 中原郡

%, 1989年 59.1%)인 것을 보면 保健社會部의 生活保護對象의 主對象은 農村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零細民 對策은 자연히 農村爲主의 生活保護施策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農村의 生活保護와 醫療保護 對象人口 가운데 農家가 차지하는 比率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表 5-6>은 調査對象 5個郡의 郡全體 人口와 각 범위별 生活保護, 醫療保護 對象者의 農家, 非農家間 區分을 나타낸 것이다. 施設保護와 居宅保護家口는 거의 대부분 非農家이며, 自活保護對象家口와 醫療扶助對象家口의 70%가량이 農家였다. 이것은 農村의 居宅保護者家口主와 家口員의 未就業으로 인하여 農業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郡全體 家口와 人口의 農家 比率에 비교하여 居宅保護와 施設保護 家口는 農家比率이 낮으며, 自活保護와 醫療扶助家口는 農家比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地域別 生活保護對象者の 諸特性分析

### 가. 家口主 및 家口員의 一般的 特性

#### ① 年齡別

地域別로 生活保護對象 家口主와 家口員의 年齡別 分布는 <表 5-7>

表 5 - 7 年齡階層別、地域別 生活保護對象 分布(1989)

單位 : %

區 分		0 ~ 5	6 ~ 17	18 ~ 20	21 ~ 29	30 ~ 39	40 ~ 49	50 ~ 59	60 ~ 64	65 才以上	計
居住保護家口主	農 村	0.0	5.6	1.9	2.2	6.1	11.3	11.2	12.0	49.6	100.0
	都 市	0.0	8.2	0.5	1.4	5.2	10.8	8.3	8.4	57.3	100.0
	大都市	0.4	6.2	0.9	1.5	5.8	7.8	7.6	7.2	63.1	100.0
	全 國	0.1	5.8	0.9	1.4	5.5	9.3	10.3	10.7	55.9	100.0
居住保護家口員	農 村	0.3	19.6	4.3	4.5	5.7	7.9	10.5	10.0	34.4	100.0
	都 市	2.1	26.4	1.9	3.2	5.3	8.4	7.6	6.1	39.0	100.0
	大都市	1.5	19.8	2.5	2.6	5.9	6.7	7.2	6.6	47.1	100.0
	全 國	2.6	21.7	3.2	3.1	5.5	7.7	8.3	9.1	39.0	100.0
自活保護家口主	農 村	0.0	0.3	0.7	3.0	12.2	23.7	27.5	17.3	15.3	100.0
	都 市	0.0	1.7	1.5	3.3	13.9	29.9	26.4	10.3	13.0	100.0
	大都市	0.0	0.6	0.7	2.6	11.6	35.8	24.5	12.9	11.3	100.0
	全 國	0.0	0.4	0.7	2.8	11.7	29.0	27.1	14.1	14.2	100.0
自活保護家口員	農 村	0.0	21.2	9.7	9.4	10.4	12.9	13.6	9.0	8.8	100.0
	都 市	4.2	28.6	7.4	6.9	8.8	14.6	15.3	6.9	7.3	100.0
	大都市	3.1	27.4	9.5	8.4	9.0	15.2	14.0	6.7	6.4	100.0
	全 國	4.4	30.2	9.6	10.1	10.4	16.0	1.6	8.8	8.9	100.0

과 같다. 居宅保護 家口主와 家口員의 年齡 中 65세이상 年齡層이 차지하는 比率이 가장 높았다. 地域別로는 大都市가 都市나 農村보다 65세 이상 年齡을 가진 居宅保護家口主와 家口員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農村이 大都市보다 65세이상 人口를 더 많이 부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自活保護家口主의 年齡을 地域別로 보면 農村은 50代가 가장 많아 다른 地域이 40代가 많은 것과는 대조가 되었다. 農村人口의 老齡化 현상과 脈을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自活保護家口員에 있어서도 農村이 다른 地域보다 高齡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② 家口員數別

地域別로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家口員數를 나타낸 것은 <表5-8>과 같다. 居宅保護 家口는 家口員이 1명인 경우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다. 地域別로는 家口員이 1명인 居宅保護 家口가 大都市 71.2%, 都市 62.9%, 農村이 51.4%로 대도시 지역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農村地域일수록 居宅保護家口의 家口員數가 많은 편이다. 반면 自活保護家口의 家口員數는 居宅保護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家口員數가 4명인 自活保護家口가 22.0%로 가장 높았다. 地域別

表 5 - 8 家口員數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單位 : %

區 分		1名	2	3	4	5	6名以上	計
居宅保護	農 村	51.4	20.7	10.2	8.0	4.9	4.7	100.0
	都 市	62.9	16.3	8.4	6.4	4.2	1.8	100.0
	大都市	71.2	13.7	7.0	4.6	2.2	1.3	100.0
	全 國	58.0	17.9	10.0	7.1	4.2	2.9	100.0
自活保護	農 村	7.2	10.6	13.6	21.2	23.0	24.4	100.0
	都 市	8.3	8.4	19.3	23.1	20.8	20.1	100.0
	大都市	9.4	11.5	18.6	24.6	20.2	15.7	100.0
	全 國	8.1	10.6	15.6	22.0	21.8	21.9	100.0

로는 農村의 경우 6명이 상이 24.4%, 5명이 23.0%로 農村 自活保護 家口의 家口員數가 많음을 알 수 있다. 大都市地域은 가구원수가 都市나 農村에 비하여는 적은 편이었다.

### ③ 教育水準別

地域別 生活保護對象 家口主와 家口員의 教育水準은 <表 5-9>와 같다. 居宅保護 家口主와 家口員의 경우 地域에 관계없이 無學이 가장 많았다. 全國的으로 居宅保護 家口主의 60.1%, 家口員의 45.1%가 無學으로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農村地域일수록 居宅保護 家口主와 家口員의 學歷이 낮은 편이었다. 自活保護 家口主의 學歷은 地域에 관계없이 國卒이 가장 많아 居宅保護者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全國 資料를 보면 自活

表 5-9 教育水準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單位 : %

區 分		未就學	無 學	國 卒	中 卒	高 卒	初大卒	大卒以上	計
居宅保護 家口主	農 村	0.9	63.9	28.4	4.6	2.1	0.0	0.6	100.0
	都 市	0.0	63.9	24.4	8.8	2.7	0.0	0.2	100.0
	大都市	2.5	51.6	32.5	10.1	3.0	0.1	0.2	100.0
	全 國	1.3	60.1	28.1	8.0	2.5	0.1	0.1	100.0
居宅保護 家口員	農 村	6.2	46.3	34.1	9.9	3.3	0.0	0.1	100.0
	都 市	5.1	47.9	28.3	11.3	6.0	0.0	1.5	100.0
	大都市	3.8	42.4	28.3	20.9	4.3	0.1	0.2	100.0
	全 國	5.3	45.1	31.0	14.0	4.4	0.1	0.1	100.0
自活保護 家口主	農 村	0.2	37.4	44.5	14.0	3.8	0.1	0.0	100.0
	都 市	0.0	28.3	45.5	19.1	7.0	0.1	0.1	100.0
	大都市	1.3	20.9	42.4	26.2	8.6	0.3	0.2	100.0
	全 國	0.8	29.2	44.4	19.0	6.2	0.2	0.1	100.0
自活保護 家口員	農 村	7.4	20.4	42.5	19.6	9.8	0.1	0.1	100.0
	都 市	11.0	13.7	30.9	28.1	15.9	0.0	0.2	100.0
	大都市	4.9	13.9	37.3	32.2	11.0	0.5	0.3	100.0
	全 國	6.5	18.5	39.1	25.2	10.4	0.3	0.1	100.0

\* 在學中인 者는 該當學校의 卒業에 包含.

保護 家口主의 44.4%, 家口員의 39.1%가 國卒의 學歷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高卒 以上의 學歷을 가진 居宅保護家口主와 自活保護家口主의 比率도 약간 있었다(전국적으로 居宅保護家口主의 2.7%, 自活保護家口主의 6.5%가 高卒 以上임). 自活保護家口主와 家口員의 學歷에 있어서도 農村地域일수록 낮은 편이었다.

#### ④ 健康狀態別

地域別 生活保護對象家口主와 家口員의 健康狀態는 <表 5-10>과 같다. 居宅保護 家口主의 50%, 家口員의 47.0%, 自活保護家口主의 35.6%, 家口員의 24.9%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健康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으로는 障碍者가 居宅保護 家口主의 20.7%, 家口員의 18.6%, 自活保護 家口主의 11.2%, 家口員의 7.0%로 나타

表 5-10 健康狀態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單位 : %

區 分		健 康	障礙者	廢 疾	其 他	計	
居宅保護	家口主	農 村	50.7	22.1	15.2	12.0	100.0
		都 市	59.9	17.3	19.1	3.7	100.0
		大都市	35.5	16.0	16.2	32.4	100.0
		全 國	50.0	20.7	17.7	11.7	100.0
	家口員	農 村	49.8	20.2	14.3	15.7	100.0
		都 市	54.2	14.6	26.2	5.1	100.0
		大都市	43.6	13.8	14.9	27.7	100.0
		全 國	53.0	18.6	18.0	10.4	100.0
自活保護	家口主	農 村	70.5	10.4	11.4	7.7	100.0
		都 市	68.3	9.9	5.3	16.4	100.0
		大都市	47.5	11.5	10.5	30.5	100.0
		全 國	64.4	11.2	10.3	14.1	100.0
	家口員	農 村	76.6	7.1	9.5	6.8	100.0
		都 市	81.4	4.8	2.4	11.4	100.0
		大都市	57.9	9.0	6.4	26.6	100.0
		全 國	75.1	7.0	6.9	11.0	100.0

나 居宅保護가 自活保護보다 더 많았다. 瘦疾의 경우 居宅保護 家口主의 17.7%, 家口員의 18.0%, 自活保護 家口主의 10.3%, 家口員의 6.3% 가 이에 해당된다. 地域別로는 居宅保護家口主와 家口員 가운데 障碍者 가 차지하는 比率에서 農村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瘦疾者는 都市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自活保護 家口主와 家口員 가운데 瘦疾者의 比率에서 農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나. 就業 및 經濟活動

〈表 5-11〉은 地域別로 就業狀態別 生活保護對象 家口主와 家口員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居宅保護 家口主와 家口員의 70% 가량이 非經濟活動人口 (0 ~ 13, 65 세 이상)로 나타나 매우 높은 比率을 나타내었다. 반면 自活保護 家口主의 21.0%, 家口員의 29.8%만이 非經濟活動人口로 居宅保護者 家口主와 家口員의 경우와 비교가 되었다. 또 經濟活動 年齡層 (14 ~ 65세)에 속하는 未就業者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 전체 대상중 취업합계는 居宅保護 家口主 15.9%, 家口員 18.2%, 自活保護 家口主 68.6%, 家口員의 56.6%에 불과하여 상당히 높은 失業率을 기록하고 있다. 地域別로는 大都市의 居宅保護 家口主, 自活保護 家口主가 다른 地域보다 未就業率이 높았다. 就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臨時雇傭과 一日雇傭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大都市나 都市の 경우 매우 높음) 農村에는 零細農水產業에 종사하는 비율이 自活保護 家口主와 家口員에서 높았으며 居宅保護의 경우는 낮았다.

#### 다. 住宅保有別

〈表 5-12〉는 地域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住宅保有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自家를 소유한 家口의 比率이 居宅保護 39.1%, 自活保護 47.4%이다. 나머지는 전세집, 전세방, 월세집, 월세방 또는 심지어 움막, 루평등에 거거하는 경우가 된다. 地域別로는 農村이 都市나 大都市에 비하여 住居環境이 매우 좋았다. 즉 農村은 居宅保護의 59.2%, 自活保護의 75.7%가 自家를 소유하고 있으나 도시나 대도시는 自家所有比率이 크

表 5-11 就業狀態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單位 : %

區 分			零 細 自營業	零 細 農水產業	當時雇傭	臨時雇傭	一日雇傭	就業合計	未就業	非 經 濟 活動人口	計
居住保護	家口主	農 村	0.6	6.3	0.1	0.8	6.3	14.5	9.6	75.9	100.0
		都 市	0.2	10.6	0.1	2.2	4.2	17.3	4.0	78.7	100.0
		大都市	1.1	0.5	0.6	1.6	5.2	8.9	12.0	79.1	100.0
		全 國	0.9	5.5	0.4	1.7	7.3	15.9	9.1	75.1	100.0
	家口員	農 村	0.7	8.1	0.2	0.9	6.9	17.3	11.4	71.3	100.0
		都 市	0.2	13.1	1.3	3.2	5.2	22.9	6.1	71.0	100.0
		大都市	-	-	-	-	-	-	-	-	-
		全 國	1.0	6.6	0.5	2.1	8.0	18.2	10.9	70.9	100.0
自活保護	家口主	農 村	4.1	39.1	1.7	4.7	21.3	71.5	8.2	20.2	100.0
		都 市	11.0	12.1	5.4	12.5	34.2	75.4	6.8	17.8	100.0
		大都市	7.0	2.5	8.4	14.4	33.7	65.9	14.2	19.9	100.0
		全 國	5.5	25.4	4.2	9.0	24.4	68.6	10.4	21.0	100.0
	家口員	農 村	3.7	35.3	1.9	5.2	18.3	64.8	11.5	23.7	100.0
		都 市	6.7	8.1	7.1	9.4	31.7	63.0	8.3	28.7	100.0
		大都市	-	-	-	-	-	-	-	-	-
		全 國	4.2	22.4	3.9	8.0	18.2	56.6	13.6	29.8	100.0

表 5-12 住宅所有 形態別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分布

單位 : %

區 分		自 家	傳 貰	月 貰	無料賃貸	其 他	計
居宅保護	農 村	59.2	1.9	10.3	26.2	2.0	100.0
	都 市	26.5	5.9	37.4	28.7	1.4	100.0
	大都市	3.8	17.3	39.6	36.3	3.0	100.0
	全 國	39.1	7.7	21.3	30.0	1.7	100.0
自活保護	農 村	75.7	5.4	9.2	9.3	0.4	100.0
	都 市	25.2	20.2	42.6	11.8	0.2	100.0
	大都市	5.0	33.6	53.6	7.1	0.8	100.0
	全 國	47.4	16.2	27.0	8.3	0.5	100.0

계 떨어지고 있다.

#### 라. 生活保護對象者가 된 原因과 自活可能性

##### ① 繼續保護年數

'89年現在 전국의 生活保護對象者 家口의 保護指定年度는 <表 5-13>과 같다. 전체적으로 地域에 관계없이 1984년 이전에 지정된 家口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全國의 居宅保護와 自活保護 家口는 5년 이상의 보호지정연수를 갖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農村地域이 다른 地域에 비하여 居宅保護와 自活保護 家口中 5년 이상의 보호연수를 갖는 가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만큼 農村의 居宅保護家口와 自活保護家口가 다른 地域에 비하여 自活이 어려운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에 신규로 지정된 비율은 農村이 가장 낮고 大都市일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 ② 生活保護對象者가 된 原因

우선 1989년에 신규로 生活保護對象者가 된 家口의 家口主와 家口員의原因是 <表 5-14>와 같다. 居宅保護와 自活保護의 家口主, 家口員 모두가 地域에 관계없이 세대내 정상적 勤勞能力者가 없어서 生活保護對

表 5-13 '89 生活保護對象者 家口의 保護指定年度

單位 : %

區 分		1989 年策定	1988	1987	1986	1985	1984 年以前	計
居宅保護	大都市	12.7	13.6	15.0	15.1	13.3	30.3	100.0
	都 市	10.3	11.9	13.1	13.5	13.2	38.0	100.0
	農 村	8.9	11.0	10.3	11.0	11.6	47.2	100.0
	全 國	9.7	11.5	11.6	13.3	12.1	41.8	100.0
自活保護	大都市	14.3	15.5	17.3	16.7	14.6	21.6	100.0
	都 市	11.7	13.5	14.5	15.4	13.9	31.0	100.0
	農 村	9.2	11.2	13.3	12.8	12.5	41.0	100.0
	全 國	10.9	12.7	14.5	14.2	13.3	34.4	100.0

\* 1989 年 全國의 生活保護對象者(居宅保護 164,440 家口, 自活保護 429,475 家口)의 資料임.

表 5-14 新規保護對象者 發生의 原因

單位 : %

區 分		世帶內正常的 勤勞能力缺音	失 職, 事業失敗	保 護 變 動	轉 入	其 他	計	
居宅保護	家口主	農 村	72.0	1.5	16.2	8.0	2.2	100.0
		都 市	83.1	3.4	3.4	10.2	0.0	100.0
		大都市	77.3	0.8	6.6	12.4	2.9	100.0
		全 國	69.8	1.7	13.6	12.9	1.9	100.0
	家口員	農 村	68.7	1.7	19.7	7.0	2.7	100.0
		都 市	84.2	2.0	6.9	6.9	0.0	100.0
		大都市	-	-	-	-	-	-
		全 國	65.9	2.0	17.6	12.0	2.6	100.0
自活保護	家口主	農 村	56.3	13.1	16.2	10.1	4.3	100.0
		都 市	51.7	24.2	1.9	22.3	0.0	100.0
		大都市	54.3	20.7	8.5	10.1	6.3	100.0
		全 國	52.9	17.3	10.9	14.0	5.0	100.0
	家口員	農 村	55.5	13.9	16.3	9.5	4.8	100.0
		都 市	53.6	24.1	1.6	20.6	0.0	100.0
		大都市	-	-	-	-	-	-
		全 國	52.7	18.0	10.2	14.4	4.8	100.0

象者가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地域別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農村은 保護變動이, 都市는 失職이나 事業失敗가, 大都市는 轉入에의 하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地域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表 5-15 貧困의 원인 및 自活方向

單位 : %

贫困의 원인	自活方向	居宅保護				自活保護				
		農村	都市	大都市	全國	農村	都市	大都市	全國	
家口內 正常의 勤勞能力 없음 ( 老齡, 年少, 廢疾, 障碍, 母 子家口 )	子女가 就業成長하면 自活可能	22.0	13.6	13.4	18.3	7.6	12.5	37.8	12.0	
	疾病者가 完治하면 就業하면 自活可能	11.3	2.2	7.0	11.2	1.5	3.9	14.4	4.4	
	老齡, 廢疾, 疾病 등으로 完全自活 不可能	53.9	72.0	68.9	57.3	3.7	2.2	10.3	3.2	
	自活意慾등이 없어 自活展望 없음	10.4	7.6	6.3	12.3	1.9	0.6	3.9	1.7	
小計		97.6	95.4	95.7	99.1	14.7	19.2	66.4	21.3	
일 할 사 람 있 음	學歷, 經 歷이나 技術이 없음	就業 또는 職業訓 練을 받으면 自活 可能	0.8	1.3	1.9	0.5	24.4	33.4	15.2	27.9
		生業資金金融資 등 支援받으면 自活 可能	0.4	0.3	0.9	0.2	17.9	14.8	6.4	16.5
		零細民地方移住, 其他 支援받으면 自活可能	0.3	0.4	0.3	0.1	15.7	8.3	2.1	9.2
		自活意慾등이 없어 自活展望 없음	0.8	0.2	0.5	0.1	7.9	8.7	3.3	8.2
小計		2.3	2.2	3.6	0.9	65.9	65.2	27.0	61.8	
技術이 있음	就業을 하면 自活 可能	0.0	0.1	0.3	0.1	8.2	8.0	4.0	8.3	
	生業資金 등 支援 을 받으면 自活 可能	0.0	0.3	0.1	0.0	5.9	3.5	1.4	4.7	
	零細民地方移住, 其他 支援받으면 自活可能	0.0	0.3	0.0	0.0	4.1	2.3	0.4	2.1	
	自活意慾등이 없어 自活展望 없음	0.0	1.6	0.6	0.1	1.3	1.8	0.9	1.8	
小計		0.0	2.3	1.0	0.2	19.5	15.6	6.7	16.9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居宅保護者中 自活不可能이 農村 65.1%, 都市 81.4%, 大都市 76.3%, 全國 69.8%이며 自活保護者中 自活不可能이 農村 14.8%, 都市 13.3%, 大都市 18.4%, 全國 16.9%이다. (自活不可能은 自活展望 없음과 完全 自活不可能을 합친 것임)

1989 年에 신규로 生活保護對象者 가 된 家口를 包含한 全體 生活保護對象者의 貧困의 原因에 관하여 살펴보면 〈表 5-15〉와 같다. 居宅保護家口의 貧困原因은 家口內 正常的 勤勞能力이 없기 때문에가 99.1%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家口內에 老齡, 年少, 廢疾, 障碍, 母子家口로 인하여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가 가장 큰 貧困의 原因으로 나타났다. 반면 自活保護 家口는 일할 사람은 있으나 經歷이나 技術이 없어서가 61.8% 技術이 없어서가 16.9%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 78.7%는 일할 사람이 있기는 있으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地域別로 보면 居宅保護家口의 貧困原因은 거의 비슷하나, 自活保護 家口의 경우 大都市만이 家口內 正常的 勤勞能力者가 없는 원인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다른 地域과 차이가 나고 있었다.

### ③ 自活可能性

앞의 〈表 5-15〉에는 自活可能性과 그 方向 또한 調査가 되어 있는데 居宅保護者中 自活不可能이 農村 65.1%, 都市 81.4%, 大都市 76.3%, 全國 69.8%로 매우 높으며, 반면 自活保護者中 自活不可能이 農村 14.8%, 都市 13.3%, 大都市 18.4%, 全國 16.9%로 각각 나타났다. 自活方法으로는 ① 子女가 성장취업함이 居宅保護家口의 18.3%, 自活保護家口의 12.0%이며, ② 疾病者가 完治하여 취업함이 居宅保護家口의 11.2%, 自活保護家口의 4.4%이며, ③ 就業 또는 職業訓練을 받음이 居宅保護家口의 2.2%, 自活保護家口의 36.2%, ④ 生業資金融資 등 支援받음이 居宅保護 0.2%, 自活保護 21.2%, ⑤ 零細民地方移住, 其他 支援받음이 居宅保護 0.3%, 自活保護 11.3%로 나타났다. 실제로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生活保護對象 脫避者 가운데 居宅保護 家口主의 19.6%, 家口員의 21.5%, 自活保護 家口主의 60.2%, 家口員의 59.7%가 自立을 통하여 自活保護를 벗어났다. 상대적으로 居宅保護는 支援으로 自立이, 自活保護는 自力에 의한 自立이 높았다. 地域別로는 大都市는 支援에 의한 자립이, 都市는 自力에 의한 自立이 높았다. 地域別 生活保護對象 脫避者의 脫避事由는 〈表 5-16〉과 같다.

表 5-16 自活自立 등 保護對象脫避者의 脱避事由

單位 : %

區 分		支援으로 자 立	家口員 變 動	轉出	自力으로 자 立	保護 變更	其他	計
居宅保護	家口主	農 村	12.8	35.8	26.9	5.4	18.6	0.5 100.0
		都 市	9.9	47.9	18.3	16.9	7.0	0.0 100.0
		大都市	16.7	24.0	42.4	9.3	6.4	1.1 100.0
	全 國	11.7	36.9	30.3	7.9	12.0	1.2	100.0
	家口員	農 村	11.0	29.0	30.4	5.6	23.3	0.8 100.0
		都 市	10.4	39.6	22.6	14.2	13.2	0.0 100.0
		大都市	-	-	-	-	-	-
	全 國	12.8	30.7	30.7	8.7	16.0	1.0	100.0
自活保護	家口主	農 村	26.0	13.3	22.3	30.8	7.1	0.5 100.0
		都 市	22.7	1.4	10.8	64.6	0.5	0.0 100.0
		大都市	33.4	6.9	30.9	24.6	2.1	2.1 100.0
		全 國	29.1	7.8	25.2	31.1	4.2	2.6 100.0
	家口員	農 村	24.0	11.3	28.9	30.6	4.8	0.5 100.0
		都 市	20.3	0.5	11.2	67.5	0.4	0.0 100.0
		大都市	-	-	-	-	-	-
		全 國	28.0	7.7	26.6	31.7	2.9	3.2 100.0

### 3. 農漁村 住民 및 公務員들의 生活 保護 및 醫療保護事業에 대한 評價

#### 가. 生活保護對象者 策定過程

零細農民을 對象으로 生活保護對象者의 基準이 適合한가에 대하여 물어본 바 <表 5-17>과 같이 전체적으로 肯定的으로 보고 있었다. 또 67명의 郡, 呂, 面의 生活保護擔當 公務員들이 生活保護對象者 策定過程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所得을 正確하게 算出하기가 어렵다. 農業은 所得算定이 어려우며 더구나 個人別 所得算出은 더욱 어렵다. 18세 이상 労動能力者가 無

表 5 - 17 自活保護對象者 基準이 適當하다는 應答者 比率<sup>1)</sup>  
單位 : %

區 分	居宅保護者	自活保護者	醫療扶助者	一般農民
1人當月所得 46,000 원	92.3	65.7	66.7	85.0
世帶當財產額 340 萬원	76.9	68.8	61.5	71.4
田畠 未包含	100.0	87.0	70.0	94.4

1) 1989년 기준임.

職인 경우 이들의所得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1일 취업의 경우도所得推計가 곤란하다.

둘째, 財產課表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당한 財產을 가진 자도 課標에 누락되어 (기록이 안되어) 生保者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課標가 맞지 않아 生保者 선정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재산과 관련하여 전화기, TV, 냉장고, 자동차 등에 대한 財產評價基準이 없다.

세째, 陰性財產과 陰性所得調査가 어렵다. 外地에 나가있는 가족의 財產, 은행 및 金融機關의 貯蓄狀況등이 반영 안되고 있다.

네째, 調査過程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策定調查期間이 매년 9.5 ~ 9.20의 15 일간으로 너무 짧으며 邑面擔當者の業務過重으로 정확하게 測定이 불가능하다. 자연히 里長의 의견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문제는 調査細部指針이 없어 里洞間 不均衡의 (마을의 친인척, 지역관계로) 문제가 있다.

다섯째, 調査基準에 의하여 調査되더라도豫算關係로 脫落되는 경우가 많다. 中央에서 연간 대상인원이 내려오므로 (基準이 農村實情에서는 높음) 調査만 하였지 生活保護對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戶籍上 扶養義務者가 있으나 행방불명 혹은 기타 다른 이유로 부양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경우 生保者에서 제외되고 있다. 邑面長, 警察官署, 里長등의 사실확인으로 처리하여 生保者로 지정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곱째, 한번 책정된 자가 계속策定받으려 한다. 일단 生保者로 지정되어 子女成長, 기타 이유로 自立을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저항이 심하여除外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여덟째, 財產額은 초과하나 所得源이 없고 勤勞能力이 없는 경우등 각個人의 生活을 고려한 선정이 되어야겠다. 즉 個個人의 負債關係, 子女教育關係등이 고려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의견으로 耕地面積을 고려하여야겠다는 것도 있었다.

#### 나. 生活保護 및 醫療保護의 支援概要

生活保護對象者는 居宅保護, 施設保護, 自活保護로 나누어 保護內容을 달리 하고 있다. 居宅保護와 施設保護對象者에게는 生計保護, 自活保護, 教育保護, 解產保護, 葬祭保護, 醫療保護가 주어지고 自活保護者에게는 醫療保護, 自活保護, 教育保護가 지원되고 있다.

1989年 現在 지원되고 있는 生活保護水準을 보면 月 1人當 居宅保護者는 35,643 원, 施設保護者는 46,000 원을 지원하고 있다. 居宅保護者의 지원수준에는 生計費, 醫療費, 教育費를 포함한 것이고 施設保護者는 生計費, 醫療費, 教育費, 난방비, 수용비를 포함한다. 연도별 生計費 支援額은 <表 5-18>과 같다.

각종 保護支援에 대하여 調査對象者들은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경향이었다. 즉 居宅保護者의 83.3%, 自活保護者의 94.1%, 醫療扶助者의 87.5%, 一般農民의 85.7%, 全體 調査者의 88.8%가 만족하고 있었다.

현재 生活保護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農村公務員들의 현행 生活保護支援水準에 대한 의견은 <表 5-19>와 같다.

表 5-18 年度別 生計費 支援價額(1人當 月平均 支援額)

單位 : 원

區 分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居 宅 <sup>1)</sup>	12,504	12,990	13,615	16,395	22,423	27,300	29,900	35,643
施 設 <sup>2)</sup>	21,958	22,909	24,097	31,380	36,744	40,300	44,000	46,000

1) 生計費, 醫療費, 教育費 包含.

2) 生計費, 醫療費, 教育費, 暖房費, 收容費 包含.

資料 : 保健社會部

表 5-19 農村公務員들의 現行 生活保護 支援水準에 대한 意見

單位 : %

區 分		過多하다	充分하다	適當하다	不足하다	計
生 計	양곡(백미)	0.0	8.2	57.1	34.7	100.0
	" (정맥)	0.0	6.5	63.0	30.4	100.0
保 護	부 식 비	0.0	0.0	34.7	65.3	100.0
	연 료 비	0.0	2.1	47.9	50.0	100.0
教育	중 학 교	0.0	10.6	85.1	4.3	100.0
保護	고 등 학 교	0.0	10.9	78.3	10.9	100.0
醫 療 保 護		0.0	12.2	73.2	14.6	100.0
移 住 支 援		3.3	6.7	60.0	30.0	100.0
葬 祭 保 護		0.0	2.4	53.7	43.9	100.0
生 業 資 金 融 資		0.0	2.6	46.2	51.3	100.0
就 勞 事 業		2.4	2.4	51.2	43.9	100.0

#### 다. 生計保護

年度別 生計保護 内容은 〈表 5-20〉과 같다. 1989年의 경우 施設保護者에게는 1人 / 1日에 白米 456 g, 精麥 114 g, 副食費 450 원, 燃料費 50 원을 지급하고 1人 / 1年에 被服費 42,500 원을 지급한다. 居宅保護者에게는 1인 / 1일에 白米 341 g, 精麥 85 g, 副食費는 45 원을, 세대당 / 1日에 副食費 400 원, 燃料費 410 원을 지급한다.

먼저 農村의 生活保護 擔當公務員들의 의견을 살펴보자. 〈表 5-19〉에서와 같이 糧穀(白米, 精麥 모두)에 대하여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副食費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燃料費는 적당하다와 부족하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農村擔當公務員들의 生計保護支援의 改善方向을 보면 먼저 糧穀(白米)支援에 대하여는 13.4%가 양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현재 1人1日當 341 g에서 350 g으로 늘려주는 것을 希望한 公務員이 1.5%, 400 g으로 늘리는 것이 3.0%, 450 g으로 늘리는 것이 3.0%, 500 g으로 늘리는 것이 1.5%로 나타났으며, 現在 月 1人當 10kg

表 5-20 年度別 生計保護 内容

區分	年度	1975	1978	1981	1984	1987	1988	1989
居宅保護	白米(人/日)		101 g	288 g	288 g	341 g	左同	左同
	精麥(人/日)		412 g	138 g	138 g	85 g	-	-
	小麥粉	350 g	350 g	-	-	세대주/日 280 원	320 원	400 원
	副食費			세대/月 3,000 원	세대/月 3,569 원	세대원/日 30 원	40 원	45 원
施設保護	燃料費			"	세대/月 4,056 원	세대/日 370 원	392 원	410 원
	白米(人/日)	216 g	288 g	432 g	432 g	456 g	左同	左同
	精麥(人/日)	207 g	276 g	138 g	138 g	114 g	-	-
	副食費(人/日)	54 원	서울 170 원 지방 50 원	265 원	315.8 원	400 원	430 원	450 원
	燃料費(人/日)		13.7 원	8.2 원	27.04 원	38 원	45 원	50 원
	被服費(人/年)		13,400 원	26,000 원	39,600 원	39,600 원	左同	42,500 원

資料：保健社會部

수준에서 15 kg (1.5%), 20 kg (1.5%) 수준으로 증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4.5%가 米質의 向上을 (生產年度 1年前分으로 支給해 주기를 希望한 公務員이 1.5%, 政府糧穀이 아닌 一般米로 支給希望이 1.5%), 3.0%는 現金支給을 바라고 있었다.

糧穀(精麥)에 대하여는 10.4%가 양의 증대를 (현재 1日 1人 85 g에서 90 g이 1.5%, 95 g 1.5%, 100 g 3.0%, 150 g이 1.5%, 1人當 5 kg이상은 되어야가 1.5%로 각각 증대를 바라고 있음), 4.5%가 質의 向上을 (生產年度 1年前分 支給이 1.5%, 精麥을 米穀으로가 1.5%임), 1.5%는 현금지급을 바라고 있었다.

副食費도 25.4%가 支援額 增大를 바라고 있었다. 그 지원정도로는 현재 1세대에 1일 400 원을 500 원으로 1.5%, 600 원으로 3.0%, 700 원으로 1.5%이고, 家口員 1人當 1日 45 원을 60 원이 1.5%, 100 원이 3.0%로 나타났으며 1인가족(세대) 시 월 12,000 원인 현 水準이

25,000 ~ 30,000 원 水準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세대원의 부식비가 낮은 것이 문제로 되고 있었다.

燃料費도 물가상승등을 고려하여 인상이 요구되는데 현재 세대당 1일 410 원을 600 원 ~ 900 원 수준, 동절기에는 연탄 3 장 값의 수준으로 향상을 바라고 있어 1인세대의 월 25,000 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世帶別로 支給되고 있는 것을 世帶員數에 따라 支給해야 한다는 의견도 3.0 %이었다.

또 居宅保護者에 대한 葬祭保護에 있어서 葬祭費用이 현재 1家口當 13 만원인데 25.4 %가 이 額數가 너무 낮으므로 20 ~ 30 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居宅保護對象者를 對象으로 한 調査 結果 生計保護 支援의 適當性에 대하여 47.6 %가 적당하다고 應答하였다. 쌀, 보리가 무거워 居宅保護者들이 직접 수령 운반하기에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쌀, 보리를 직접 수령하는데 대하여 83.3 %가 찬성하고 있으나 앞의 우려 때문에 일부 郡에서는 쌀, 보리를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예는 앞으로 居宅保護者の 대부분이 高齡이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임을 고려하여야만 할 현상으로 보인다.

#### 라. 教育保護

生活保護對象者 家口의 中學生 및 實業系 高等學生을 對象으로 學費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中學生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全額을 支援하여 왔으나, 中學校 卒業만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87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全地域 居宅保護者와 面以下 居住 自活保護者에 대하여 實業系 高校生까지 확대하여 학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88년에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읍이상 自活保護對象者에게도 實業系 高校生 학비의 50 %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89년에는 醫療扶助 對象者에게까지 확대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중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지원기준(급지별), 人員, 支援額을 나타낸 것은 <表 5-21>과 같다.

農村公務員들의 대부분이 教育保護에 대하여 충분하다와 적당하다로 應

表 5-21 分期別 授業料와 育成會費 (1989)

區	分	中 學 校	高 等 學 校
수업료	1 급지	53,550 원	
	2 급지	30,750 원	
육 성 회 비 <sup>1)</sup>		13,080 원	16,860 원

1) 수업료만 지급이 되고 육성회비는 지원이 안되어 부담이 됨.

資料：保健社會部

答을 하고 있었다. 全體 生活保護 支援內容 가운데 가장 肯定的인 評價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教育保護에서도 制度改善에 대한 公務員들의 바램은 있었다. 먼저 中學校에 대하여는 全額免除 및 지원확대를 4.5 %가 바라고 있었다. 즉 육성회비도 지원하고 학용품과 교통비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高等學校에 대하여는 현재 實業系高等學校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人文高校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10.4 %가 나왔으며, 醫療扶助對象者는 현재 1학년 1학기 반액만 지원하고 있는데 전학년 지급을 바라고 있으며, 居宅保護者의 경우 육성회비도 지원해줄 것을 希望하고 있었다.

調查對象 生活保護者の 71.4 %가 子女의 教育支援을 받고 있다. 支援對象으로는 아들 26.2 %, 딸 59.5 %, 기타(여기에는 형제등이 포함)가 14.3 %였다. 學校水準으로는 中學校가 78.3 %, 高等學校가 10.9 %, 中學校+高等學校가 10.9 %였다. 受惠人員은 1명이 76.9 %, 2명이 13.5 %, 3명이 9.6 %였다. 도움정도에 대한 판단으로는 매우 도움이 크다고 應答한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매우 도움 65.6 %, 약간 도움 34.4 %) 教育保護가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地域에 實業系高校가 없고 人文系高校만이 있는 경우 惠澤을 못받게 되며 全體 應答者의 11.4 %가 이런 經驗을 하였다고 應答하였다.

앞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人文系高校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72.0 %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과 같이 실업계고교까지가 16.9 %, 大學까지 支援이 9.0 %로 나타났다.

## 마. 職業訓練

政府에서는 職業訓練者에 대하여 각종 支援 方法을 강구해 놓고 있다. 職業訓練者 1人에 대하여 每月 訓練手當 20,000 원, 食費 25,000 원, 家族生計費 30,000 원을 支給하고 職業訓練者마다 訓練準備金 20,000 원, 就業準備金 50,000 원을 지급한다.

調查對象者中 職業訓練에 대하여 각종 지원이 따르는 것을 아는 자가 31.3 %였으며 全體 零細民家口中 4.2 %의 家口員만이 職業訓練을 받고 있었다. 自活保護家口의 4.3 %, 醫療扶助家口의 5.9 %가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居宅保護者중에는 전혀 없었다. 職業訓練對象者는 모두 아들이었으며 職業訓練後 80 %가 취업을 하고 있어 訓練의 効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바. 生業資金 融資

政府에서는 資金管理特別會計에서 50億원을 확보하여 農協과 國民銀行를 통하여 低所得層에게 200萬원 한도로 年利 10 %, 2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生業資金을 融資支援하였으나, 1988年에는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서 200億원의 자금으로 300만원 한도로 年利 8 %, 5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1989년에는 融資限度額을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年利 6 %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生業資金融資에 대하여 擔當公務員들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당하다는 의견에 비하여 약간 높았다(表 5-19 참조). 그 制度改善內容은 첫째, 融資金額 및 對象者를 확대하라는 것이다(13.4 %가 應答함). 둘째, 融資節次에서의 改善이 있어야겠다. 현재 400만원의 融資를 받으려면 財產稅 15,000원 이상인 보증인을 내세워야 하므로 保證人을 세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6.0 % 應答). 保證人制度에서의 改善(예: 信用保證保險)이 있어야겠다. 세째, 中長期低利로 完全 自活때까지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償還ability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完全 自立時까지 中長期低利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自活保護對象者 標本 가운데 18.3 %만이 生業資金融資를 받고 있었다. 生業資金融資에 대한 평가를 보면 支援額과 支援對象數에 대하여는 否定的 인 의견이 많았으며 償還期間(支援期間)에 대하여는 대개 만족하고 있었다.

#### 사. 就勞事業

政府에서는 1989年 180億원의 事業費로 1,661천명에 대하여 就勞事業을 실시하여 그 勞賃(日當)으로는 男女 공히 日當 現金 6,500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農村擔當公務員들의 의견을 보면 이 金額水準이 부족하다는 의견보다는 적당하다, 충분하다는 의견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農村公務員들이 就勞事業의 改善方向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勞賃單價의 引上이다. 현재 男女 구별없이 6,500원인데 男女 구별을 두어 남자 8,000원, 여자 6,000원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6,500원을 8,000 ~ 12,000원의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20.9 %가 一般勞賃과 격차가 심하므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연간 就勞事業費를 年初 地方豫算에 편성,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운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선정,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과 就勞事業 대신 숙원사업 및 새마을사업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勞賃單價에서는 취로사업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 이에 취로사업을 폐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自活保護家口中 59.7 %, 醫療扶助家口中 31.9 %가 就勞事業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를 보면 본인이 72.6 %, 배우자가 23.3 %, 기타가 4.1 %이다. 새마을 就勞事業 參與者에게는 1988년까지 糧穀이 지급되었는데 糧穀支給量의 적당성에 대하여 71.4 %가 만족하고 있었으나 취로사업의 인원에 대하여는 만족하는 사람이 42.0 %, 보통이다 14.5 %, 부족하다 43.4 %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욱 많았다. 과거의 예지만 糧穀을 며칠 분을 함께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령한 사람이 82.9 %임), 그 결과 목돈을 만들기 위해 糧穀을 現場에서

싼 값으로 파는 경우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本調查에서 는 4.3%만이 그런 經驗이 있다고 應答하였다.

### 아. 大都市 低所得層 地方移住

政府에서는 서울, 부산에 居住하는 生活保護對象者 中 自活保護者가 農·漁村으로 移住를 希望할 경우 '87年까지는 移住費 80만원을 支援하였으나 '88年부터는 이를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轉出地 特別支援金 50만원과 300만원 한도의 生業資金 融資 및 6개월~1년까지의 居宅保護水準의 生計保護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農村 生活保護擔當公務員들은 支援水準은 적당하다고 보면서도 이 制度가 實効가 적다고 주장하며 폐지하기를 많이 주장하고 있다. 즉 大都市에서 移住해 온 零細民의 대부분이 自活意欲이 부족하고 農·畜產業에 經驗이 不足하여 自活能力이나 收支가 없을 뿐 아니라 事業의 失敗 등으로 定着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移住費 20만원과 生活準備金 100만원을 補助支給하고 있으며 生業資金이나 生活安定基金도 融資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部落民과의 유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保證人을 구할 수 없어 融資를 얻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 移住民의 生活 및 文化水準(예: TV, 냉장고, 가전제품등)이 현지의 零細民들보다는 높은데도 12개월간의 特別生計救護(居宅保護基準)를 特惠措置함으로써 주민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을 조사하여 생활실태를 심사한 후 선별지급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 轉出地域 및 居住年度 制限으로 事業失敗와 地域與件의 不適合등으로 부득이 다른 地域으로 再轉出할 경우 轉出地에서 보조금 상환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移住地에서 상환치 않을 경우 轉出制限을 둠으로써 무단전출, 행방불명 등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農村擔當公務員들은 현행대로의 移住支援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지원이 필요없을 정도의 定着에 필요한 金額을 1,500만원정도로 이주금을 현실화하여 永久的인 生活基盤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할 것

을 바라고 있다.

### 자. 醫療保護

醫療保護의 種類別 外來 및 入院時 醫療保護診療費 負擔方法은 〈表 5-22〉와 같다. 1種保護對象者는 外來, 入院診療 구분없이 全額을 政府에서 負擔하며, 2種保護對象者는 外來診療費의 全額을 政府가 부담하고 入院診療費의 경우는 政府와 本人이 分擔하되, 生計維持가 困難한 生活保護對象者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은 政府에서 代拂하여준 후 無利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도록 하고 있다. 醫療扶助對象者는 生計維持는 가능하나 질병에 이환되면 醫療費의 全額負擔이 어려운 階層이므로 一定比率을 정하여 政府에서 醫療費를 扶助하고 있다.

醫療保護支援水準에 대하여 農村擔當公務員들의 의견은 肯定的인 편이었다. 農村醫療保護事業의 改善方案은 첫째, 2種對象者도 外來診療時 全額無料로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診療圈 制限을 緩和해 달라는 것이다. 세째, 醫療扶助者의 診療費 過重問題 解決이다. 현재 醫療扶助者는 外來時 2/3를, 入院時 40%를 본인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地域醫療保險患者가 20% 혹은 定額制로 診療費 2,000 원을 내는 것에 비하여 매우 높으므로 본인부담이 감소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네째, 國庫補助金의 補助가

表 5-22 醫療保護診療費 負擔方法

區分	外　來	入　院	備　考
1種	○ 全額無料 (基金負擔)	○ 全額無料(基金負擔)	○ 診療內容은 醫療保險과 同一
2種	// ~	○ 一部 本人負擔 · 大都市 : 40% (6만원초과시대불) · 其他地域 : 20% (4만원초과시 대불)	○ 6個月 紿與 制限 없음.
醫療扶助	○ 1/3基本負擔 2/3本人負擔	○ 一部 本人負擔 · 大都市 : 50% · 其他地域 : 40%	○ 醫療扶助에는 代拂制度 없음

資料：保健社會部

表 5-23 醫療保護에 대한 調查對象者の 滿足程度

單位 : %

區 分	1 種	2 種	3 種	全 體
醫療保護 選定基準	93.3	95.1	90.0	93.1
" 對象者策定	93.3	95.1	87.2	92.2
" 診療費負擔	93.3	87.0	81.0	85.6
" 診療節次	80.0	80.0	68.3	75.9
" 酬價	80.0	89.7	61.0	78.1

遲延되어 病院側의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改善이 되어야겠다.

農村住民들을 對象으로 한 農村醫療保護에 대한 調査結果는 〈表 5-23〉과 같은데 전체적으로 醫療保護 전반에 滿足度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醫療保護 診療節次와 醫療保護 수가에 대하여 不滿足程度가 높은 편이었다.

#### 4. 零細農을 위한 農業政策

政府의 農業政策中 零細農을 위한 政策으로는 農漁家 負債 경감(1987) 農地購入資金 支援, 農漁村 發展綜合對策(1989) 등이 있다.

##### 가. 農漁家 負債輕減 對策

政府는 農漁家 負債輕減對策을 1987年 3月에 발표하면서 0.5 ha 以下零細農漁家중 長期 政策資金을 차입한 農家에 대하여 既存 金利인 5~12%를 3%로 인하하고 남은 債還期間이 10年 未滿인 資金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기하였다.

이 對策에 대하여 零細農民들 중 全體 調査 對象者の 22.7%가 惠澤을 받았다고 應答하였으며 惠澤을 받은 사람들의 46.4%는 큰 도움이 되었다, 46.4%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應答하여 全體的으로 92.8%

도움이 되었다고 應答을 하였다.

#### 나. 農地購入 資金支援

農村에 定着意志가 있고 營農規模를 확대하려고 하여도 기본여력이 없는 1.5 ha 以下의 農家에 대하여 金利 5%, 2년 거치 18年 償還으로 農地購入資金을 支援하고 있다.

그러나 全體 應答者 零細農民中 블과 3.4%만이 農地購入資金을 支援 받고 있었다.

農地購入資金을 어떤 階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農業構造調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零細農民을 對象으로 調査한 결과 零細農層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가 84.4%, 中農에게 우선지원해야 한다가 8.0%, 大農에게 우선지원해야 한다가 0.5%, 全階層에 고르게 지원해야 한다가 5.4%로 나타나 零細農에 대하여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零細農民만을 위한 調査結果로 中·大農層의 調査와는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零細農에게 우선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는 零細農의 生計維持 및 安定이 54.6%로 가장 높았고, 富의 均衡分配 機會提供이 26.3%, 營農規模 擴大가 10.1% 등으로 나타났다.

#### 다. 農漁村發展綜合對策

1989年 5月 17日 발표된 農漁村發展綜合對策中 零細農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零細農 (0.5 ha 未滿)에 대하여 農水產業構造調整基金으로 農地에 대한 長期貸獎勵金을 支給한다.

둘째, 1ha미만 零細農家로서 5년이 상 營農에 종사한 自耕農民들끼리 農業生產을 目的으로 出資하여 營農組合을 設立토록 支援한다.

세째, 農漁家既存負債特別措置를 실시한다. 그 내용은 0.5 ha미만은 無利子로 0.5 ha~1 ha는 5%의 支援金利로 戶當 200 만원 (相互金融 100 만원, 中長期資金 100 만원) 까지 2년거치 5년 償還으로 支援한다.

네째, 1ha미만 農漁家 子女(面地域 所在 中學校와 實業系高校 在學生)에 대하여 學資金을 면제해 준다.

이들 조치에 대하여 零細農民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1989년 7~8월의 調查時期는 農漁家 既存負債에 대한 特別措置에 대하여 農民들이 잘 모르고 있었으며 應答者の 74.4%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應答하였다. 또 共同營農組織 設立에 대하여는 불과 15.4%만이 共同營農組織을 設立하겠다고 하였으며 31.7%는 모르겠다, 52.9%는 만들지 않겠다고 應答하였다. 이와같은 경향은 零細農들이 農政의 새로운 施策에 관심이나 接觸機會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가 協業農이나 共同營農組織을 구성할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실제로 營農資金이나 農地購入資金의 대출이 危險할 수 있으며 生計費로 소진될 경우는 長期性, 惡性負債化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權彝赫外 5人, 「都市零細民에 관한 研究」, 서울대保健大學院, 1967.
- 金東一·沈載雄·庾喆仁, 「韓國農村住民의 삶의 質」,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叢書 8, 1982.
- 金相現, “生活保護事業의 現況과 課題,” 峨山社會福祉財團 創立 10周年 紀念 福祉社會 심포지움(第 9 回)結果報告書, 「韓國의 社會福祉: 現在와 未來」, 1987, pp.648 ~ 662.
- 金世坤, 「韓國의 都市貧民政策에 關한 研究」, 全南大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 \_\_\_\_\_, “生活保護事業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社會政策研究」第 8 輯, 韓國福祉政策研究所, 1986.8, pp.78 ~ 112.
- \_\_\_\_\_, “貧困,” 「現代社會問題論」, 韓國社會福祉政策研究所.
- \_\_\_\_\_, 外 2人, “韓國貧困政策에 관한 研究,” 「社會政策研究」第 1 輯, 1982.
- 김영석, 「都市貧民論」, 아침, 1985.
- 김요실, “韓國都市貧困의 性格에 關한 研究,” 서울大人類學研究會, 「人類學論集」7, 1984.
- 김유순, “零細民 自活策으로서의 職業訓練의 意義와 訓練員을 通해서 貧困解消效果에 대한 調查研究,” 梨花女大 碩士學位論文, 1982.
- 金一鐵·鄭英一, “韓國零細農에 關한 社會經濟的 研究,” 서울大「社會科學研究報告」1, 1977.
- 金在洪, “農村貧困層의 生活實態와 福祉對策,” 「21C 農政發展方向構想을 위한 基礎研究Ⅱ」,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 金鍾基, “우리나라 零細民의 地域別 分布 特性과 要因, 「韓國開發研究」 제 3 권 제 4 호, KDI, 1981, pp.85 ~ 99.

- 金俊輔, “金融資本主義下의 零細農의 性格,” 서울大「論文集」, 第5輯  
김자은, “韓國公的扶助事業의 傳達體系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  
學位論文, 1982.
- 盧昌燮, “都市 슬럼地域의 社會的 特性,”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1967.
- 大韓商工會議所, 「所得分配構造와 政策方向」, 1988.
- 박영숙, “都心地 貧民 어떻게 살아가는가?”, 「韓國社會研究」2, 한  
길사, 198.
- 박용태, 「零細民 生計保障基金의 運營과 改善方案」, 大邱大, 1984.
- 朴玄採, 「韓國資本主義와 都市貧民의 問題」, 韓國經濟構造論, 일월서각,  
1986.
- \_\_\_\_\_, 「韓國農業의 構想」, 한길사, 1981.
- 배숙희, “都市 슬럼의 生態學的研究,” 廣北大 碩士學位論文, 1982.
- 邊衡尹, 「分配의 經濟學」, 한길사, 1984.
- 保健社會部, 「低所得層의 恒久的 生活安定對策에 관한 研究」, 1975.
- \_\_\_\_\_, “零細民 實態調查 結果 報告書,” 各年度
- 徐相穆, “公的扶助事業의 現況과 改善方向,” 「韓國開發研究」, 1980 年  
겨울호, KDI, 1980.
- \_\_\_\_\_, “우리나라 貧困의 決定要因,” 「韓國開發研究」, 1979.
- \_\_\_\_\_外 2人,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活用方案」, KDI,  
1988.
- 서채완, 「低所得層 女性的 職業開發에 관한 事例研究」, 송전대, 1983.
- 손의섭, “우리나라 生活保護對象者の 地域的 分布에 관한 研究,” 서울  
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 신혜령, “都市貧民女性의 諸問題의 解決方案의 考察,” 梨花女大, 1979.
- 신혜수, “貧困社會學에 관한 研究,” 梨大碩士學位論文, 1976.
- 안국수, “都市零細民의 實態와 그 對策에 관한 研究,” 東國大 行政大  
學院 碩士論文, 1976.
- 안원실, “貧困家庭을 위한 社會서비스開發에 관한 研究,” 송전대, 1984.

- 安彰洙, 「社會福祉增進을 위한 最低生計費 計測調查 中間報告書」,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안해균, 「低所得市民의 生活實態에 관한 基礎調查와 政策方向에 관한 研究」, 韓國社會福祉研究所, 1979.
- 양종희, “서울市 下層住民의 政治能力에 관한 研究,” 「韓國社會學」 8집, 1973.
- 元夷朝, “零細民 對象 選定過程에서의 問題點,” 「社會福祉」 90호,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986, pp.25 ~ 46.
- 원철희, “韓國貧困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1983.
- 유시중, “韓國都市家族의 貧困類型,” 성곡學術財團, 「성곡논총」 3집, 1972.
- 俞君의, 「零細民實態調查와 政策方向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調查研究所, 1982.
- 尹錫範, 「都市貧困層에 대한 對策에 관한 研究(中間報告)」, 1981.
- 이승양, 「都市貧困兒童의 福祉에 관한 研究」, 숙대, 1982.
- 李英基, “1960年代以後의 農民層分解에 관한 研究,” 서울大 碩士論文 1982.
- 李永蓮, “우리나라 公的扶助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社會保障研究」 제 3권, 韓國社會保障學會, 1987, pp.165 ~ 200.
- 李貞煥,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原因과 農地流動化 戰略,” 「農村經濟」 第 6 卷 3 號, 1983.9, pp.1 ~ 11.
- 이종열, “우리나라의 公的扶助制度에 관한 研究,” 서울大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李俊求, 「所得分配의 理論과 實際」, 다산출판사, 1989.
- 이효재 · 허석렬, 「第 3 世界의 都市化와 貧困」, 한길사,
- 임경숙, “서울시 貧民地域 住民의 生活實態 및 限界的 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1986.
- 임희섭, “韓國에 있어서의 貧困問題,” 「韓國社會開發研究」 I, 1979.

- \_\_\_\_\_, “貧困에 대한 社會學的 접근,” 「韓國社會學」12집, 1978.
- 전명성, “都市貧困層의 意識構造와 社會的 行態에 관한 實證的研究,”  
서울大 環境大學院, 1985.
- 韓國開發研究院, 「所得 및 富의 公正分配를 위한 政策協議會」, 1989.
- 石渡貞雄, 「小農經濟學」, 亞紀書房, 1970.
- 御園喜博, 「現代農業經濟論」, 東京大 出版會, 1975.
- 龍山京, 「日本における 貧困層の 創出過程」, 東京大 出版會, 1980.
- 小沿正, 「貧困そんの測定と生活保護」, 東京大 出版會, 1981, p.391.
- 龍山京, “貧困の測定尺度としての最低生活費,” 小沿正 編, 「社會福祉の  
課題と展望」, 川島書店,
- Ahn, In Chan, “Low Income Household in Rural Korea : A  
Case Study in Songmyon Area of Choong Cheong Buk  
Do”, 忠北大學校, 「農學年報」, 5:1(1987), pp.121 ~ 135.
- Budd, E.C.(ed), *Inequality and Poverty*, W.W. Norton and  
Company, 1967.
- Galbraith, J.K., *The Nature of Mass Poverty*, 閔丙一 譯, 「大  
衆貧困의 本質」, 태창문화사.
- Gilder, G., *Wealth and Poverty*, 유동길譯, 「富와 貧困」, 우아  
당, 1982.
- Hayter, T., *The Creation of World Poverty*, 李有植 譯, 「貧困  
의 政治經濟學」, 比峰出版社,
- Shiller, R.B.,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3rd edition,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N.J. 1980.
- Beatrice Knerr : Mindesteinkommenssicherung und Soziallfe  
für die Landwirtschaftliche Bevölkerung, Kiel, 1981.
- Frank Klanberg : Armut und Ökonomische Ungleichh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ampus-Verlag,  
Frankfurt/Main, 1978.

Johannes Frerich : Sozialpolitik, R. Oldenberg Verlag,  
München, 1987.

W. Wangler : Soziale Hilfen und Sicherungen für die Land-  
wirtschaftliche Bevölkerung, Hiltrup GmbH.,  
Münster, 1966.

빈

면

研究報告 203  
零細農의 生活과 福祉實態

---

1989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鎮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 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式會社 文 范 社

電話 739-3911~5

---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